

물



# 서울대학교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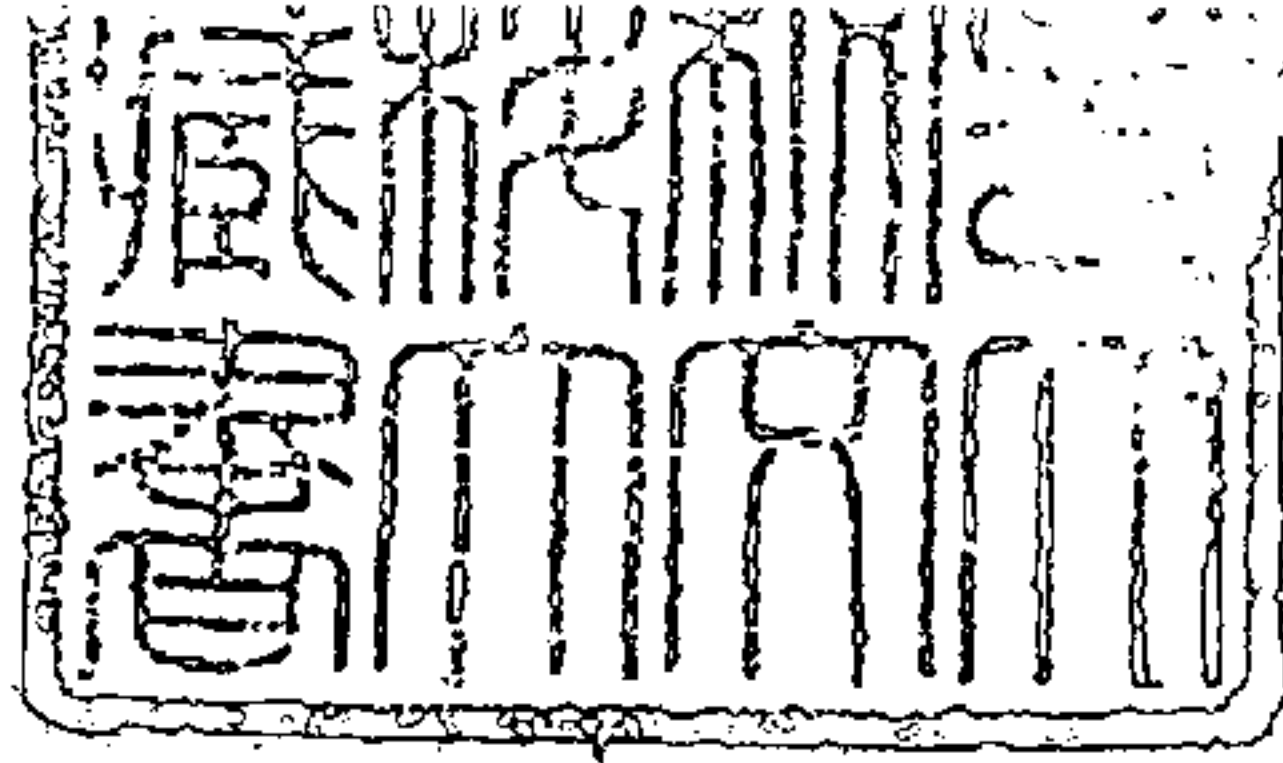
P  
378.51  
Se67Gy  
1973/1974  
서울大

1973-1974

# 서울대학교 요람



1973—1974



西歐의 長點과 經驗을 배우고 받아들이되 우리의 傳統的인 價値를 創造的으로 啓發하여 그 土壤위에 近代化가 뿌리박히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갈고 닦는다는 것과 「남의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一見 矛盾되는것 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絶對로 矛盾되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相互補完的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知性人들이 해야할 課業은 國力培養과 祖國의 近代化를 促進할 수 있는 高度의 科學과 技術을 배우고 익히는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固有의 傳統的 價値觀을 合理的으로 體系化해서 近代化의 精神的支柱를 確立하는데 또한 積極寄與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知性人들의 苦悶어린 愛國心도 바로 이러한 次元에서 創造的으로 發揮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민은 값진 것이 될 수 있으며 祖國과 民族을 위한 眞正한 愛國心의 發露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1973.2.26.

—서울대학교 제27회 졸업식  
대통령치사에서—

15200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로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1973학년도 학사력

73. 3. 1 (목) 3.1절  
 3. 2 (금) 입학식  
 3. 1 (목)  
 3. 7 (수) 제1학기 수강 신청  
 3. 2 (금)  
 3. 5 (월) 제1학기 재학생 등록  
 3. 5 (월) 대학 개강  
 3. 12 (월) 대학원 개강  
 4. 6 (금) 수업일수 1/4선  
 7. 9 (월)  
 7. 14 (토) 제1학기말시험  
 7. 21 (토)  
 8. 31 (금) 하기휴가  
 8. 25 (토)  
 8. 31 (금) 제2학기 수강 신청  
 8. 28 (화)  
 8. 31 (금) 제2학기 등록  
 8. 30 (목) 후기졸업식  
 9. 1 (토) 제2학기 개강  
 9. 28 (금) 수업일수 1/4선  
 10. 15 (월) 개교기념일  
 12. 17 (월)  
 12. 22 (토) 제2학기말시험  
 12. 24 (월)  
 2. 28 (목) 동기휴가
74. 2. 26 (화) 졸업식  
 2. 21 (목)  
 2. 22 (금) 신입생등록

# 차 례

## I. 연 혁

- 1. 연 혁 .....13
- 2. 역대 총장.....21

## II. 기 구

- 1. 평의원회 .....25
- 2. 학장회 .....25
- 3. 인사위원회 .....25
- 4. 대학교본부 .....26
- 5. 대학과 대학원.....27
- 6. 부설기관 .....31
- 7. 기관장명단 .....36
- 8. 교직원명단 .....38

## III. 학칙 및 설치령

- 1. 서울대학교 학칙.....77
- 2. 대학원 학칙.....99
- 3. 경영대학원 학칙 .....108
- 4. 교육대학원 학칙 .....113
- 5. 보건대학원 학칙 .....118
- 6. 신문대학원 학칙 .....124
- 7. 행정대학원 학칙 .....129
- 8. 환경대학원 학칙 .....134
- 9.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칙 .....138
- 10. 서울대학교 설치령 .....146

#### IV. 학 위

|                       |     |
|-----------------------|-----|
| 1.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 157 |
| 2. 경영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 166 |
| 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 167 |
| 4. 보건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 168 |
| 5. 신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 169 |
| 6. 행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 170 |

#### V. 교과과정.....별책

#### VI. 연 구

|               |     |
|---------------|-----|
| 1. 학술연구.....  | 175 |
| 2. 연구위원회..... | 176 |
| 3. 연구비.....   | 177 |
| 4. 학회활동.....  | 178 |
| 5. 해외연수.....  | 178 |
| 6. 연구소.....   | 179 |

#### VII. 장 학

|              |     |
|--------------|-----|
| 1. 장학제도..... | 191 |
| 2. 학생보건..... | 193 |
| 3. 학생후생..... | 195 |
| 4. 해외유학..... | 197 |

#### VIII. 학생지도 및 생활

|              |     |
|--------------|-----|
| 1. 학생지도..... | 201 |
| 2. 학생회.....  | 202 |
| 3. 학생상담..... | 203 |
| 4. 학생포상..... | 2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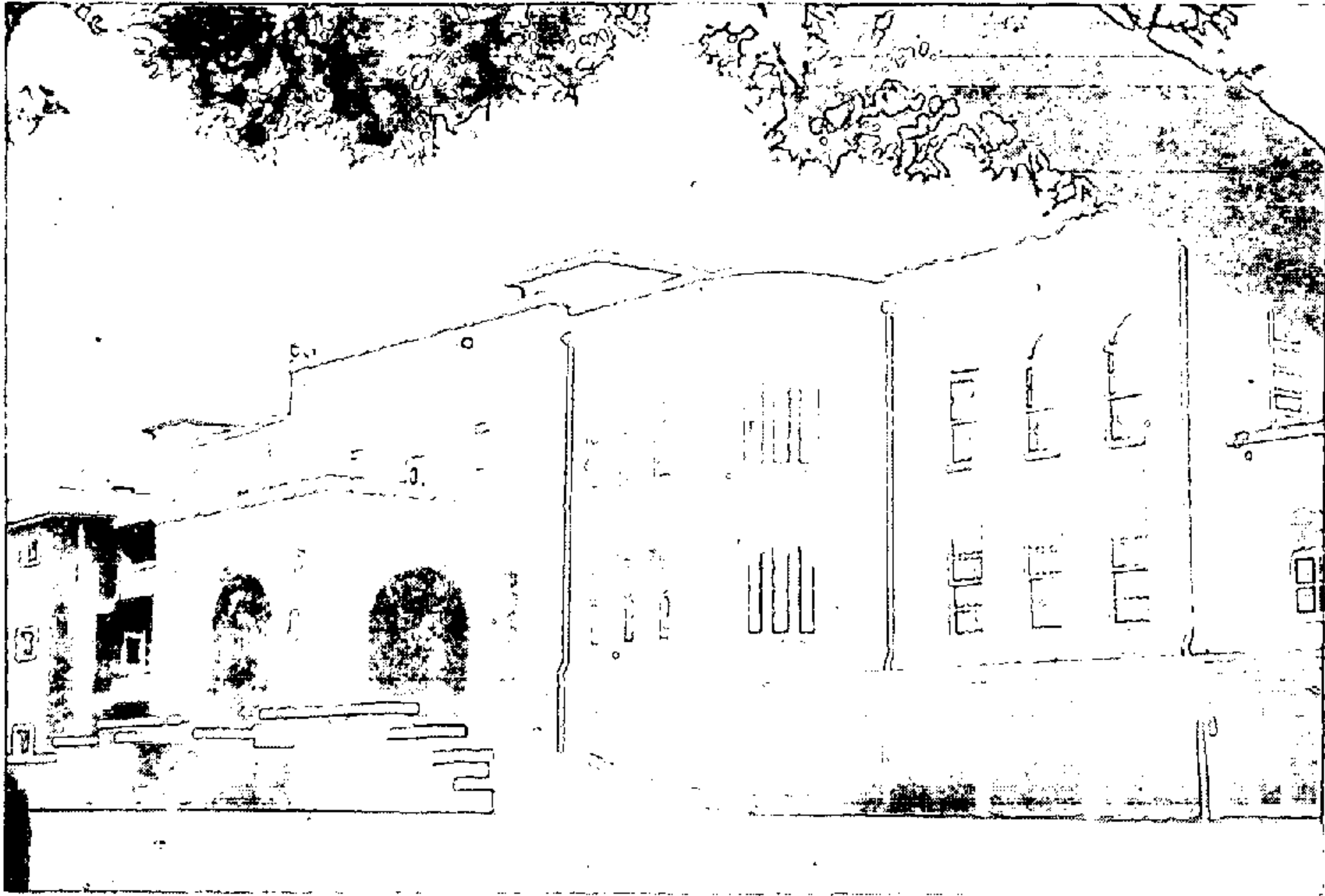
|                                 |            |
|---------------------------------|------------|
| 5. 학생병사.....                    | 205        |
| 6. 군사교육.....                    | 206        |
| 7. 체육활동.....                    | 209        |
| 8. 간행물.....                     | 209        |
| 9. 대학신문.....                    | 210        |
| <b>Ⅸ. 시 설</b>                   |            |
| 1. 위 치.....                     | 215        |
| 2. 소유토지와 건물 .....               | 216        |
| 3. 실습장과 연습림 .....               | 216        |
| 4. 연구 및 실험실습 기계기구 .....         | 217        |
| 5. 도서관.....                     | 217        |
| 6. 박물관.....                     | 218        |
| 7. 부속병원.....                    | 219        |
| <b>X. 서울대학교 종합건설 기본계획 .....</b> | <b>223</b> |
| <b>Ⅹ. 부 표</b>                   |            |
| 1. 기구표.....                     | 237        |
| 2. 서울대학교 개요 .....               | 241        |
| 3. 기관현황.....                    | 243        |
| 4. 학생정원표(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 247        |
| 5. 입학상황표(대학, 대학원).....          | 249        |
| 6. 재학생통계표(대학, 대학원).....         | 250        |
| 7. 학위 수여자 통계표.....              | 251        |
| 8. 장학금 급여 상황표.....              | 258        |
| 9. 학생병사관계 통계표 .....             | 259        |
| 10. 현역군인 재학생 통계표.....           | 260        |
| 11. R.O.T.C.현황 .....            | 2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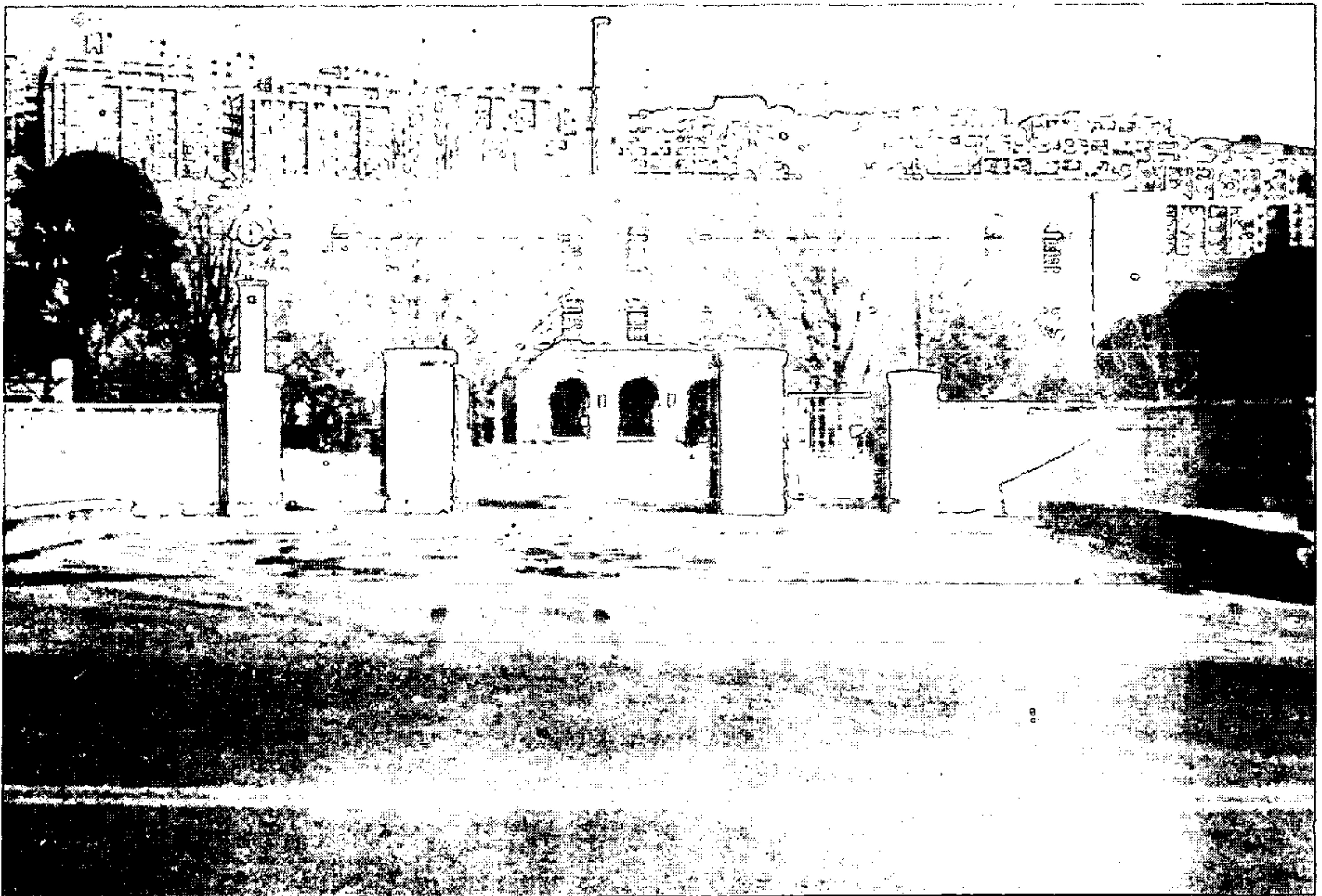
여 백



총 장



서울대학교 본부



서울대학교 정문

# I. 연 표

여 백

# 1. 연 혁

1. 1945년 8·15 해방의 역사적 전환기를 계기로하여 새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주의적 제반개혁과 아울러 기존 교육시설의 개편 및 그 확충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최고학부인 대학교육의 제도 및 그 운영에 있어서도 질적향상과 양적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대적 일대 종합대학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1946년 8월 22일자로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되고 이에 의하여 본교는 대학원 외에 다음과 같은 9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문리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계통과 동 이공학부 이과계통의 통합  
                  개편

법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과계통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통합개편

공과대학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계통과 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고등공업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의 통합개편

의과대학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개편

농과대학    수원농림전문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의 개편

상과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의 개편

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개편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개편

예술대학    (미술부·음악부) 신설.

2.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본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1949년 12월 31일 우리나라 민주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법이 공포되자 본교는 서울대학교로 개칭되었다.

4. 1950년 6월 25일 제 1학기 등록기간 중 6·25사변 발발로 인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은 분산 피난하게되고 대학의 운영은 일시 중단되었다.

5. 1950년 9월 28일 수도탈환이후 정부환도에 따라 본교는 복구사업에 진

력하게 되었다.

6. 1950년 9월 30일 현안 중이던 사립서울약학대학의 편입이 실현되어 본교는 도합 10개 단과대학을 가지게 되었다.
7. 1950년 11월 문교부 방침에 의하여 서울시내 타대학과 공동으로 문학부, 이학부, 공학부, 법정경상학부, 의학부, 약학부등 6학부의 연합강의가 실시되었다.
8.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본교는 정부와 함께 부산시에 남하하였다.
9. 1951년 2월 19일 부산에서 본교는 응급 조치로 연합강의의 형식을 취하여 수업을 계속하였다.
10. 동년 5월 4일자 문교부령 제 19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본교에서도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운영하게 되고 각지에 산재한 본교 재학생은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각 지방 전시연합대학 혹은 타대학에서 각각 등록 수강하게 되었다.
11. 1951년 9월 제 2 학기를 계기로 농과대학만은 수원 본교로 복귀 개강하게 하는 한편 복귀가 불가능한 잔여 각 대학을 위하여 부산지구에 임시교사를 신축하고 수업을 실시하였다.
12. 1952년 3월 25일 전시연합대학이 해체되자 지방에서 수강하던 본교생은 전부 부산 본교로 복귀하게 하였다.
13. 19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 623호로 교육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는 교과를 개편하는 동시에 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내용의 혁신을 기하였다.
14. 1952년 6월 27일 전화로 인하여 파손된 본교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재건 후원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이사회를 조직하여 본교 재건부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5. 1953년 4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법률 제 285호로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 전 교직원의 자격, 임명, 복무등에 관한 기준이 확립되었다.
16. 1953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 780호로 공포된 국립학교설치령이 시행

됨에 따라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예술대학의 미술부와 음악부는 각각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승격개편되어 본교는 대학원외에 12개 단과대학을 가지게 되었다.

17. 1953년 8월 7일 정부가 환도함에 따라 본교도 복귀업무를 개시하여 10월 17일 이를 완료하였다.

18. 1953년 9월 15일 본교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미 제 8군사령부로부터 본부와 부속도서관, 박물관, 문리과대학, 법과대학등 건물을 인수하였다.

19. 1954년 2월 10일 수의과대학 부속가축병원을 동 대학내에 설치개원하였다.

20. 1954년 9월 5일 F.O.A. 대학원조사금에 의하여 본교 공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시설 복구와 기술계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와 본교간에 기술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21. 1955년 4월 4일 교육법 제 117조에 의하여 본교에 평의원회가 설치되었다.

22. 1956년 12월 10일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교수하여 국제적 이해와 우의를 돈독케 하기 위하여 본교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였다.

23. 1957년 5월 1일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진료를 위하여 본교에 보건진료소를 개설하였다.

24. 1959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 1430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이 신설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의과대학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는 1961년 3월 31일자로 폐교되었다.

25. 1959년 8월 17일 중구 을지로 6가 소재 약학대학 교사와 종로구 연건동소재 음악대학 교사를 상호교환하여 각각 이전하였다.

26. 1960년 3월 5일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동년 4월 1일부터 대학원 의교학과를 신설하였다.

27. 1960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학칙이 개정되어 미술대학 미학과가 문



리과대학 문학부로 이관되었다.

28. 1961년 2월 27일 국무원령 제 211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와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을 두고 문리과대학에 고고인류학과와 미술대학에 예술학과를 각각 신설하여 1961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29. 1961년 4월 6일부터 대학원 생물학과를 식물학과와 동물학과로 각각 독립된 학과로 분리시키고 통신공학과를 전자공학과로 개칭하였다.

30. 1961년 5월 5일 국무원령 제 254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되어 부속도서관에 서무과, 사서과 및 열람과가 설치되었다.

31.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8호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 3조 및 1961년 12월 9일 각령 제 283호로 공포된 학교정비기준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과 또는 신설되었다.

가. 사범대학의 교육심리학과와 교육행정학과, 국어과, 외국어과, 일반사회과, 역사과, 지리과, 수학과, 물리과, 화학과, 생물과 및 지학과의 12과와 미술대학의 예술학과가 폐지되고 사범대학에 과학과와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하였다.

나.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병합되었다.

다. 상과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하였다.

32.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 455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가. 사범대학원이 신설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나. 학생지도연구소가 설치되어 1962년 3월 12일 개강하였으며

다. 교육대학이 병설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개강함과 동시에 동대학에 부속국민학교가 설치되었다.

33. 교육연수원이 본교에 병설되어 1962년 3월 12일부터 개학하였다.

34. 1962년 12월 31일 각령 제 1133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기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학과를 증설하였다.

가. 어학연구소와 신문연구소를 신설하여 어학연구소는 63년 1월 1일부터 신문연구소는 63년 3월 25일부터 각각 발족하였다.

나. 본교에 병설되었던 교육대학과 교육연수원이 63년 3월 1일로 각각 폐지되었다.

다. 공과대학에 공업교육학과, 농과대학에 농업교육학과, 사범대학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외국어교육과가 증설되어 63년 3월 1일 부터 개강하였다.

35. 1963년 4월 12일 각령 제 1268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어 동일자로 개학하였다.

36. 1963년 7월 1일 다음과 같은 연구소가 교내기구로 부설되었다.

공과대학 전력연구소

문리과대학 해양생물연구소, 동아문화연구소

법과대학 한국법학연구소

의과대학 결핵연구소, 암연구소, 풍토병연구소

보건대학원 보건통계연구소

37. 1963년 12월 16일 각령 제 173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에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가 증설되어 1964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8. 1964년 3월 13일 대통령령 제 171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응용화학과를 화학응용과로 개칭하여 1964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9. 1955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종합계획 건설위원회가 총장 자문을 위한 교내기구로서 발족하였다.

40. 1965년 3월 1일 다음과 같은 연구소가 교내기구로서 부설되었다.

의과대학 국민체력과학연구소

상과대학 한국경영연구소

41. 1965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 205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화학응용과를 응용화학과로 개칭하여 1965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42. 1965년 7월 1일 공과대학 부설 전력연구소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여

응용과학연구소를 부설하였다.

43. 1965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 2171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 보건진료소를 법정기구화하였고

나. 사무국에 계획조사과와 관리과를 증설하여 1965년 12월 15일부터 집무하였다.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과대학과 그 부속학교 및 부속시설의 과를 각각 통합할 수 있게하고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부속도서관에 조사과를 증설하여 1965년 9월 1일부터 집무하고 필요에 따라 분관을 둘수 있게하여 1966년 2월 18일에 공학, 농학, 문리, 미술, 법률, 교육, 상경, 약학, 음악, 의학, 치의학, 행정도서관 및 1968년 4월 1일 교양, 신문도서관의 발족을 보았다.

44. 1965년 8월 31일 문리과대학에 인구문제연구소가 교내기구로 부설되었다.

45. 1965년 11월 24일 대통령령 제 2310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영대학원이 신설되어 1966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46. 1965년 12월 17일 대학원학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석사과정에 천문기상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응용미술학과, 박사과정에 지질학과, 광산학과,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공학과, 핵공학과, 축산학과, 농경제학과 임학과가 증설되었다.

47. 1966년 2월 25일 기획처가 본교 종합계획의 연구 발전 추진과 운영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교내기구로서 발족하였다.

48. 1967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 330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신문대학원과 교양과정부가 신설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신문연구소가 신문대학원 부속연구소로 되었다.

49. 1968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종합 10개년 계획을 대통령이 재가하여 동 7월 19일자 법률 제 2034호로 서울대학교 시설 확충 특별회계법이 제

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50. 1968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 3535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에 종합시설과가 증설되었다.

51. 1968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 361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가 신설되어 1969년 3월 1일부터 개교 하였다.

52. 1968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 3681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 가정대학이 신설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설치되었고

나. 공과대학에 생산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가 증설되었고

다. 문리과대학 사학과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로 되었고

라. 사범대학에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가 증설되는 한편 가정과가 폐지되었고

마. 상과대학에 상학과가 폐지되었다.

53. 1969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 447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 학생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 공과대학 광산학과를 자원공학과로 변경하였고

다. 농과대학에 임산가공학과를 증설하였고

라. 문리과대학 미학과, 종교학과를 철학과로 통합하였으며 미생물학과를 증설하였다.

54. 197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 4870호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이 제정공포되어 본교 종합 10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부총장산하에 사무국, 교무처 학생처,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예산담당관, 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학생처에 장학과, 지도과, 건설본부장산하에 관리국, 건설국, 관리국에 기획과, 관리과, 건설국에 행정과, 시설과, 총장자문기관으로 기획위원회

가 설치됨.

55. 197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 511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재외국민교육연구소가 신설되었음.

56. 1970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5429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공과대학 생산기계공학과가 산업공학과로 변경되었음.

57. 1971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 566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기구를 개편 하였음.

가. 관리국 기획과와 건설국 행정과를 관리국 기획행정과로 통합함.

나. 건설국 시설과를 건축과, 토목과, 설비과로 함.

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관리과와 진료각과를 신설함.

라. 농과대학에 수목원을 신설함.

리. 사법대학원을 폐지함.

58. 1972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 6106호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서울대학교에 부설토록 하였다.

행정기구—교학과, 방송교육과, 학사관리과

학 과—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

59. 1972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 6298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건설본부에 설계통제실을 신설하여 종합건설계획의 발전조정과 기본설계 및 설계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60. 1972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 6405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농과대학에 조경학과를 증설하였다.

61. 1973년 12월 25일 대통령령 제 647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환경대학원을 설치하고 동년 3월 1일부터 개학하기로 하였다.

## 2. 역 대 총 장

본교는 개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1인의 총장과 3인의 총장직무대리가 학교를 관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으뜸인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건설한 것은 오직 역대 총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라 하겠다.

|             |           |    |                                 |
|-------------|-----------|----|---------------------------------|
| 제 1 대       | 해리 B. 앤스텐 | 박사 | (1946. 8. 22. ~ 1947. 10. 25.)  |
| 제 2 대       | 李 春 昊     | 선생 | (1947. 10. 25. ~ 1948. 5. 12.)  |
| 제 3 대       | 張 利 郁     | 박사 | (1948. 5. 12. ~ 1949. 1. 4.)    |
| 제 4 대       | 崔 奎 東     | 선생 | (1949. 1. 4. ~ 1950. 10. 6.)    |
| 임시관리<br>책임자 | 金 斗 憲     | 박사 | (1950. 10. 6. ~ 1951. 9. 3.)    |
| 제 5 대       | 崔 奎 南     | 박사 | (1951. 9. 3. ~ 1956. 6. 8.)     |
| 제 6 대       | 尹 日 善     | 박사 | (1956. 7. 19. ~ 1961. 9. 30.)   |
| 직무대리        | 柳 洪 烈     | 박사 | (1961. 9. 30. ~ 1961. 12. 7.)   |
| 제 7 대       | 權 重 輝     | 박사 | (1961. 12. 7. ~ 1964. 6. 9.)    |
| 직무대리        | 徐 明 源     | 박사 | (1964. 6. 9. ~ 1964. 6. 23)     |
| 제 8 대       | 申 泰 煥     | 박사 | (1964. 6. 24. ~ 1965. 8. 27.)   |
| 제 9 대       | 劉 基 天     | 박사 | (1965. 8. 27. ~ 1966. 11. 10.)  |
| 제 10 대      | 崔 文 煥     | 박사 | (1966. 11. 10. ~ 1970. 11. 10.) |
| 제 11 대      | 韓 沁 錫     | 박사 | (1970. 11. 11 ~ 현재 )            |

여 백

## II. 기 구



여 백

## 1. 평 의 원 회

교육법 제 1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평의원회는 단과대학의 학장, 대학원장, 교수 및 교육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게 되며 중요 심의사항으로서는 대학 또는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연구비, 장학금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교 운영과 관련있는 중요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원은 27명이다.

## 2. 학 장 회

학장회는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교양과정부장포함), 처장, 사무국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부, 학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입학수로 및 졸업, 시험, 장학과 장학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 3. 인 사 위 원 회

교육공무원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대학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학 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대학(교양과정부 포함)의 학장과 각 대학교수회에서 호선된 각 1인으로 조직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명

또는 전보를 제청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 조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그 임명제청, 전보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대학원장, 학장(교양과 정부장포함)의 임용,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4. 대 학 교 본 부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31번지

조 직 :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과 2처 3국 1실 11과 1담당관.

기 능 : 각대학원, 대학, 각종연구소, 부속기관을 통괄하며 지도감독한다.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부총장은 총장유고시 총장을 대리한다. 건설본부장은 본교 종합 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70년 4월 8일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신설된 기관으로 관리국과 건설국을 관장한다. 건설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사무국장 밑에 총무과, 경리과, 예산담당관을 두며, 총무과는 보안, 인사, 관인관수, 문서관리, 법령, 예규 등 본교의 일반적인 사항을 수행하며, 경리과는 세입, 세출, 결산, 연금, 물품관리, 외자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 자체감사, 예산관리 및 통계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직접 보좌한다.

교무처장 밑에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고, 교무과는 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와 폐지, 수업, 시험, 학점, 성적, 학생정원과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학적과는 입학과 졸업, 학위, 휴학, 복학, 퇴학, 전학, 전과, 등록, 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학생처장 밑에 장학과와 지도과를 두고, 장학과는 학생의 통계, 보건후생, 장학금, 학비, 학생증, 졸업생의 취직알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지

도과는 학생의 동원과 집회, 행사, 상벌, 훈련, 병사,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관리국장 밑에 기획행정과와 관리과를 두며, 기획행정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발전, 시설활충 특별회계의 예산운영, 물품구입, 공사계약체결,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본부의 일반사무를 수행하며, 관리과는 재산의 처분, 취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건설국장 밑에 건축과, 토목과와 설비과를 두며, 건축과는 종합계획에 관련된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독, 건축자재의 관리사무를 수행하며, 토목과는 종합계획에 관련된 토목공사의 설계 및 감독, 토목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설비과는 종합계획에 관련된 각종 부대 설비공사(전기, 기계, 통신)의 설계 및 감독, 설비자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설계통제실은 종합건설계획의 발전조정과 기본설계 및 설계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통제실장은 2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본부에는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2처장, 3국장 1실장을 위시한 일반직원 16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위원회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총장의 자문기관으로 본교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심의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 5. 대학과 대학원

각대학, 교양과정부와 각대학원에는 각기 대학, 교양과정부, 대학원의 업무를 통할하는 대학장, 교양과정부장과 대학원장이 있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과, 교무과, 학생과의 3과를 두고 있다. 서무과는 보안, 관인관수, 인사, 서무, 회계 등의 사무를, 교무과는 학사 사무를, 학생과는 학생의 장학, 보건, 후생, 병사 및 기타 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각 대학,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는 과주임교수를 배치하고 부속시설

에는 장을 두어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학장, 원장, 과장, 과주임교수 및 부속시설의 장은 각각 그 소속 대학 또는 그 대학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조교수가 겸직하고,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하도록 되어 있다.

각 대학과 각 대학원에는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되는 교수회를 두고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입학, 수료 및 졸업, 시험, 학생의 상벌, 장학금의 급여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각 대학원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대학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과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172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18개의 학과와 부속공장을 설치하고 있다. 학생정원은 3,120 명이며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42명, 일반직원 95명, 합계 237명이다.

**농과대학** 수원시 서둔동 103번지에 위치하며 15개의 학과와 부속농장, 부속가축병원, 부속연습림, 부속동물사육장, 부속수목원을 두고 있다. 학생정원은 1,560명이며,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23명, 일반직원 84명, 합계 207명이다.

**문리과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31번지에 위치하며 문학부에 17학과 이학부에 9학과, 도합 26개의 학과를 두고 있으며, 학생정원은 1,980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64명, 일반직원 52명, 합계 216명이다.

문학부장, 이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미술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172번지에 위치하며 3개의 학과와 부속실습장을 두고 있으며 학생정원은 280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27명, 일반직원 14명, 합계 41명이다.

**법과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번지에 위치하며 2개의 학과 학생정원은 64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30명, 일반 직원 22명, 합계 52명이다.

**사범대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0번지에 위치하며 7개의 학과

에 학생정원은 1,64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98명, 일반직원 31명 합계 129명이다. 또한 부속시설로서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국민학교가 있다.

부속고등학교에는 학생 1,260명과 교원 51명 일반직원 10명, 합계 61명이 있다.

부속중학교에는 학생 1,470명과 교원 44명, 일반직원 8명, 합계 52명이 있다  
부속여자중학교에는 학생 1,680명과 교원 46명, 일반직원 7명, 합계 53명이 있다.

부속국민학교에는 학생 1,080명과 교원 25명, 일반직원 7명, 합계 32명이 있다.

**상과대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9번지에 위치하며 3개의 학과와 한국경제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학생정원은 78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45명, 일반직원 24명, 합계 69명이다.

**약학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며 2학과와 부속 약초원 및 부속 실습약국이 있고, 학생정원은 32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34명, 일반직원 15명, 합계 49명이다.

**음악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가 18번지에 위치하며 4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520명,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44명, 일반직원 14명, 합계 58명이다.

**의과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며 3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1,280명이며 그중 의예과 320명은 문리과대학에서 수용한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48명, 일반직원 41명, 합계 189명이다.

또한 부속병원에는 원장 밑에 서무과, 관리과, 간호과, 진료각과와 약국을 두고 있으며 진료각과에는 17개 진료과, 6개의 중앙진료시설 및 부속시설이 있다.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의과 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이 진료업무를 위하여 겸직하며 일반직원 325명이 병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치과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위치하며 2개 학과에 학

생 정원은 600명이며 그중 치의예과 200명은 문리과대학에서 수용한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57명, 일반직원 34명, 합계 91명이다. 부속시설로서 부속 병원이 있으며 운영의 일체를 치과대학에서 관장하고 있다.

**가정대학** 사범대학 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360명이며,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3명, 일반직원 7명, 합계 20명이다.

**교양과정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172번지에 위치하며 1968년 3월 1일에 개설되어 현재 미술대학,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학생을 제외한 제 1학년 학생의 교양과정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대학 제 2학년 전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양과정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81명, 일반직원 23명, 합계 104명이다.

**대학원** 문리과 대학 구내에 있으며 석사과정 66학과와 박사과정 47학과에 학생정원은 석사과정 1,408명, 박사과정 534명이다. 전임교원으로서 는 원장 1명 뿐이며 일반직원 9명을 두고 있다.

대학원의 교육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경영대학원** 상과대학 구내에 있으며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학생정원은 240명이다. 특히 수업을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 6명, 일반직원 5명, 합계 11명이다.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구내에 있으며 교육학 석사과정 23개의 전공을 두고 있고 학생정원은 200명이다. 특히 수업을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하며 계절수업을 할수있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0명 일반직원 7명, 합계 17명이 있다.

**보건대학원** 의과대학구내에 있으며 보건학 석사과정 8개의 전공을 두고 있고 학생정원은 140명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9명, 일반직원 9명, 합계 28명이다.

**신문대학원** 법과대학 구내에 있으며 문학석사과정과 신문연구소를 두고 있고 학생정원은 120명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10명, 일반직원 9명

합계 19 명이다.

**행정대학원** 법과대학 구내에 있으며 행정학 석사과정과 도시계획학석사과정, 2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270 명이다. 이에 종사하는 교원은 20 명, 일반직원 14 명, 합계 34 명이다.

**환경대학원** 법과대학 구내에 있으며 석사과정 2개 학과에 학생정원은 120명이다. 73년 3월 1일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 참 고

이상에서 교원이라 함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부속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를, 일반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원을 말한 것이며 인원수는 정원임.

앞에 말한 교원 외에 본교 전임이 아닌 시간강사를 매년 약 800명 정도를 위촉하여 수업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각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수의 임시직원을 두어 일반사무를 보조하고 있음.

## 6. 부 설 기 관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본교에 부설된 기관을 소개하고 각대학이나 대학원에 부설된 연구소는 160페이지 6. 연구소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부 속 도 서 관

위치 : 문리과대학 구내

조직 : 관장,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조사과와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방법의 연구개선과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각대학과 대학원에 다음과 같이 분관을 설치하고 있다.

공과대학에 공학도서관, 농과대학에 농학도서관, 문리과대학에 문리도서관, 미술대학에 미술도서관, 법과대학에 법률도서관, 사범대학에 교육도서관, 상과대학에 상경도서관, 약학대학에 약학도서관, 음악대학에 음악도서관, 의과대학에 의학도서관, 치과대학에 치의학도서관, 교양과정부에 교양



도서관, 신문대학원에 신문도서관, 행정대학원에 행정도서관.

본관에 종사하는 교원은 관장이외에 조교 2명이 있으며 일반직원 63명 합계 65명이다. 관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2,3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 부 속 박 물 관

위치 : 문리과대학 구내

조직 : 관장, 고교부, 사무실, 및 고증및평가와 박물관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관장이외에 일반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 박물관은 국내의 역사, 문화, 예술, 민속과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 보관, 진열, 전시하여 학술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법 학 연 구 소

위치 : 법과대학 구내

조직 : 소장, 연구부, 판례부, 간행부, 사무실 및 본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이외에 교원 3명과 일반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다.

소장은 교수,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연구소는 법의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보 건 진 료 소

위치 : 의과대학 구내

조직 : 소장, 환경위생부, 건강관리부, 진료부, 검사부, 약국, 사무실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이외에 일반직원 15명을 배치하고 있다.

소장은 교수,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 진료소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생 약 연 구 소

위치 : 의과대학 구내

조직 : 소장, 천연물화학연구부, 약효학연구부, 생약자원조사부, 재배연구부, 사무실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외에 교원 11명, 일반직원 9명, 합계 20명을 배치하고 있다.

소장은 본교 교수 및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 연구소는 생약의 화학화, 천연물 의약자원의 개발, 생약의 순화재배 및 육종개량의 연구등을 수행하고 있다.

### 어 학 연 구 소

위치 : 문리과대학 구내

조직 : 소장, 연구부, 교육훈련부, 사무실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외에 교원 9명, 일반직원 5명, 합계 14명이 배치되어 있다.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 연구소는 어학 및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와 어학 능력 측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학 생 지 도 연 구 소

위치 : 의과대학 구내

조직 : 소장, 연구부, 지도상담부, 교육훈련부와 사무실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외에 교원 9명, 일반직원 6명, 합계 15명이 배치되고 있으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 연구소는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와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도 및 학생지도 요원양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위치 : 공과대학 구내

조직 : 소장, 예비교육부, 학생지도부, 사무실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외에 고등학교 교사 5명, 일반직원 3명 합계 8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본 연구소는 재외국민 모국유학생의 예비교육, 단기교육, 학생지도, 재외국민교육문제의 연구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비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조직 : 학장 밑에 교학과, 방송교육과, 학사관리과가 있으며 교학과에서는 교재의 편찬, 교육과정, 서면지도, 출석지도, 과외지도, 시험성적, 협력학교 조정업무를, 방송교육과는 방송계획수립 및 실시방송교재작성, 녹음실 관리업무를, 학사관리과는 보안, 인사, 관인관수, 문서관리, 예산, 회계,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교재배부 및 등록, 수료, 졸업 휴학, 복학, 퇴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과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교수회와 방송교육을 위한 방송교육전문위원회와 교재편찬을 위한 교재편찬위원회가 있다.

5개학과에 학생정원 12,000명이며 교원 17명, 일반직원 52명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지도 및 생활 : 통신대학은 특수교육 방법으로 통신교재에 첨부된 학습지침서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습을 계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목 별로 중요한 내용만을 방송을 통하여 특별지도 하고, 학생들의 서면질의에 답해주며 과제 제출을 통한 침삭지도로써 학생의 교육방향을 지도하고 있다.

협력학교 별로 하기 및 동기 방학을 이용한 4주간(하기 2주, 동기 2주)의 출석수업을 실시하여 강의 및 실험 실습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대학 출

제의 종합시험과 협력학교 별로의 필답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보충교육을 지도하고 이들을 통하여 학업성적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통신대학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 자신이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활동 계획을 세워서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방송통신교육 목적을 달성토록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통신학보”를 매월 15일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론적인 기본지식 및 전문 분야의 기초실력을 넓혀 주고 본래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를 하는 한편 제반 지시 및 주지 사항을 상세히 통지하여 주고 있다.

# 7. 기관장명단

(1973. 2. 1. 현재)

| 본 | 부  | 총  | 장  | 韓 | 沁 | 錫 |
|---|----|----|----|---|---|---|
|   | 부  | 총  | 장  | 閔 | 丙 | 久 |
|   | 건설 | 본부 | 장  | 李 | 勳 | 燮 |
|   | 교무 | 처  | 장  | 金 | 哲 | 洙 |
|   | 학생 | 처  | 장  | 李 | 榮 | 基 |
|   | 사무 | 국  | 장  | 黃 | 天 | 性 |
|   | 관리 | 국  | 장  | 金 | 道 | 淵 |
|   | 건설 | 국  | 장  | 金 | 洺 | 執 |
|   | 설계 | 통제 | 실장 | 金 | 雄 | 世 |
|   | 원  |    | 장  | 李 | 崇 | 寧 |
|   | 원  | "  |    | 吳 | 相 | 洛 |
|   | 원  | "  |    | 金 | 聲 | 近 |
|   | 원  | "  |    | 朴 | 亨 | 鍾 |
|   | 원  | "  |    | 金 | 圭 | 煥 |
|   | 원  | "  |    | 朴 | 東 | 緒 |
|   | 학  | 학  | 장  | 金 | 熙 | 喆 |
|   | 학  | "  |    | 表 | 鉉 | 九 |
|   | 학  | "  |    | 高 | 柄 | 翊 |
|   | 학  | "  |    | 金 | 世 | 中 |
|   | 학  | "  |    | 金 | 曾 | 漢 |
|   | 학  | "  |    | 徐 | 明 | 源 |
|   | 학  | "  |    | 邊 | 衡 | 尹 |
|   | 학  | "  |    | 韓 | 寬 | 燮 |
|   | 학  | "  |    | 李 | 惠 | 求 |
|   | 학  | "  |    | 權 | 彝 | 赫 |
|   | 학  | "  |    | 金 | 周 | 煥 |

대경 교보 신행 공농 문미 법사 상약 음의 치  
 영 육 건 문 정 과 과 리 술 과 범 과 학 악 과 과  
 학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   |   |   |   |   |   |   |   |
|---|---|---|---|---|---|---|---|---|
| 가 | 정 | 대 | 학 | 학 | 장 | 玄 | 己 | 順 |
| 교 | 양 | 과 | 부 | 부 | 장 | 閔 | 錫 | 泓 |
| 한 | 국 | 방 | 신 | 학 | 장 | 金 | 宗 | 西 |
| 부 | 속 | 도 | 서 | 관 | 장 | 李 | 萬 | 甲 |
| 부 | 속 | 박 | 물 | 관 | 장 | 金 | 元 | 龍 |
| 보 | 건 | 진 | 료 | 소 | 장 | 魯 | 炳 | 鎬 |
| 법 | 학 | 연 | 구 | 소 | " | 鄭 | 熙 | 喆 |
| 생 | 약 | 연 | 구 | 소 | " | 禹 | 麟 | 根 |
| 어 | 학 | 연 | 구 | 소 | " | 金 | 鍾 | 云 |
| 학 | 생 | 지 | 도 | 연 | 구 | 李 | 義 | 喆 |
| 재 | 외 | 국 | 민 | 교 | 육 | 閔 | 錫 | 泓 |
| 신 | 문 | 대 | 학 | 원 | 신 | 金 | 圭 | 煥 |
| 농 | 과 | 대 | 학 | 부 | 속 | 농 | 장 | 雄 |
| 농 | 과 | 대 | 학 | 부 | 속 | 연 | 습 | 燮 |
| 농 | 과 | 대 | 학 | 부 | 속 | 가 | 축 | 華 |
| 농 | 과 | 대 | 학 | 부 | 속 | 동 | 물 | 隆 |
| 농 | 과 | 대 | 학 | 부 | 속 | 수 | 목 | 福 |
| 미 | 술 | 대 | 학 | 부 | 속 | 실 | 습 | 泓 |
| 사 | 범 | 대 | 학 | 부 | 속 | 고 | 등 | 起 |
| 사 | 범 | 대 | 학 | 부 | 속 | 중 | 학 | 纘 |
| 사 | 범 | 대 | 학 | 부 | 속 | 여 | 자 | 基 |
| 사 | 범 | 대 | 학 | 부 | 속 | 국 | 민 | 雨 |
| 상 | 과 | 대 | 학 | 한 | 국 | 경 | 제 | 淳 |
| 약 | 학 | 대 | 학 | 부 | 속 | 약 | 초 | 燮 |
| 약 | 학 | 대 | 학 | 부 | 속 | 실 | 습 | 根 |
| 의 | 과 | 대 | 학 | 부 | 속 | 병 | 원 | 基 |
| 치 | 과 | 대 | 학 | 부 | 속 | 병 | 원 | 植 |

## 8. 교 직 원 명 단

(1973. 2. 1. 현재)  
(직급별가나다순임)

### 대학교 본부

|        |         |       |  |         |        |
|--------|---------|-------|--|---------|--------|
| 총 장    |         | 韓 沁 錫 |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부 총 장  |         | 閔 丙 久 |  | 금 용 톨   | 경제학박사  |
| 건설본부장  |         | 李 勳 燮 |  |         |        |
| 교무처장   | 교 수     | 金 哲 洙 |  | 유 체 역 학 | 이 학 박사 |
| 교무부처장  | 부 교 수   | 李 泰 魯 |  | 세 법     |        |
| 학생처장   | 교 수     | 李 榮 基 |  | 경 제 학   | 경제학박사  |
| 사무국장   | 이 사 관   | 黃 天 性 |  |         |        |
| 관리국장   | 부 이 사 관 | 金 道 淵 |  |         |        |
| 건설국장   | 부 이 사 관 | 金 洛 執 |  |         |        |
| 설계통제실장 |         | 金 雄 世 |  |         |        |
| 총무과장   | 서 기 관   | 張 錫 連 |  |         |        |
|        | 서 기 관   | 金 成 澤 |  |         |        |
|        | 행정사무관   | 姜 基 洪 |  |         |        |
|        | 행정사무관   | 朴 俊 熙 |  |         |        |
|        | 행정사무관   | 李 滿 榮 |  |         |        |
|        | 행정사무관   | 曹 圭 洪 |  |         |        |
| 경리과장   | 서 기 관   | 金 益 泰 |  |         |        |
|        | 행정사무관   | 金 均 盛 |  |         |        |
| 예산담당관  | 서 기 관   | 朴 起 生 |  |         |        |
|        | 행정사무관   | 尹 均 鎬 |  |         |        |
| 교무과장   | 서 기 관   | 黃 仁 哲 |  |         |        |
|        | 행정사무관   | 姜 吉 秀 |  |         |        |
|        | 행정사무관   | 鄭 冲 熙 |  |         |        |
| 학적과장   | 서 기 관   | 李 海 明 |  |         |        |
|        | 행정사무관   | 李 倫 浩 |  |         |        |
| 장학과장   | 서 기 관   | 張 基 龍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金 俊 經 | 朴 炳 瑄 | 金 熙 |
| 지 도 과 장   | 서 기 관   | 金 朴   | 金 炳   | 金 熙 |
|           | 행정사무관   | 金 金   | 金 榮   | 金 洙 |
| 기 획 행 정 장 | 서 기 관   | 金 安   | 金 載   | 金 憲 |
|           | 행정사무관   | 金 鄭   | 金 燦   | 金 珽 |
| 관 리 과 장   | 서 기 관   | 金 安   | 金 鳳   | 金 俊 |
|           | 행정사무관   | 金 慎   | 金 國   | 金 範 |
| 건 축 과 장   | 건 축 기 정 | 金 李   | 金 相   | 金 滉 |
|           | 건 축 기 좌 | 金 李   | 金 哲   | 金 夏 |
|           | 건 축 기 좌 | 金 申   | 金 文   | 金 秀 |
| 토 목 과 장   | 토 목 기 정 | 金 李   | 金 洪   | 金 南 |
| 설 비 과 장   | 기 계 기 정 | 金 李   | 金 俊   | 金 一 |
|           | 전 기 기 좌 | 金 李   | 金 文   | 金 雨 |
| 설 계 통 제 관 |         | 金 劉   | 金 炳   | 金 守 |
| 설 계 통 제 실 | 행정사무관   |       |       |     |

### 대 학 원

|         |       |       |       |       |       |         |         |
|---------|-------|-------|-------|-------|-------|---------|---------|
| 원 장     | 교 수   | 李 崇 寧 | 申 東 薰 | 洪 淳 佑 | 徐 永 煥 | 국 어 학   | 문 학 박 사 |
| 교 무 과 장 | "     |       |       |       |       | 생 리 학   | 의 학 박 사 |
| 학 생 과 장 | "     |       |       |       |       | 미 생 물 학 | 이 학 박 사 |
| 서 무 과 장 | 행정사무관 |       |       |       |       |         |         |

### 경 영 대 학 원

|           |       |       |       |       |       |           |           |
|-----------|-------|-------|-------|-------|-------|-----------|-----------|
| 원 장       | 교 수   | 吳 相 洛 | 金 正 年 | 任 正 彬 | 郭 正 秀 | 마 케 팅     | 경 제 학 박 사 |
| 교 학 생 과 장 | 부 교 수 |       |       |       |       | 계 량 경 제 학 |           |
| 서 무 과 장   | 행정사무관 |       |       |       |       |           |           |
|           | 조 교 수 |       |       |       |       | 생 산 관 리   |           |

### 교 육 대 학 원

|         |       |       |       |       |       |       |         |
|---------|-------|-------|-------|-------|-------|-------|---------|
| 원 장     | 교 수   | 金 聲 根 | 李 燦 植 | 金 永 植 | 呂 乙 九 | 서 양 사 | 문 학 박 사 |
| 교 무 과 장 | "     |       |       |       |       | 지 리 학 | 철 학 박 사 |
| 학 생 과 장 | 부 교 수 |       |       |       |       | 교 육 학 | 철 학 박 사 |
| 서 무 과 장 | 행정사무관 |       |       |       |       |       |         |





|       |       |       |       |       |
|-------|-------|-------|-------|-------|
| 부 교 수 | 李 相 禧 | 李 相 禧 | 컴퓨터이론 |       |
| "     | 林 根 洙 | 林 根 洙 | 매스컴사  | 문학박사  |
| 조 교 수 | 崔 明   | 崔 明   | 매스컴과치 | 정치학박사 |

### 행정대학원

|      |       |       |        |       |
|------|-------|-------|--------|-------|
| 원 장  | 교 수   | 朴 東 緒 | 인사행정   | 정치학박사 |
| 교무과장 | 부 교 수 | 姜 吳 錫 | 행정이론   | 정치학박사 |
| 학생과장 | 조 교 수 | 金 仁 浩 | 조직이론   | 행정학박사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金 仁 政 | 행정이론   | 행정학박사 |
| 행정장  | 조 교 수 | 金 雲 泰 | 정치학    | 문학박사  |
| 도서관장 | 교 수   | 金 海 東 | 조사방법론  | 법학박사  |
|      | "     | 金 盧 熙 | 지방행정   | 법학박사  |
|      | "     | 徐 元 宇 | 행정법    |       |
|      | "     | 李 漢 彬 | 발전행정   | 철학박사  |
|      | "     | 俞 安 均 | 재무행정   | 정치학박사 |
|      | 부 교 수 | 安 李 海 | 공공관계론  | 법학박사  |
|      | "     | 李 趙 雄 | 회계학    | 경제학박사 |
|      | "     | 崔 錫 鍾 | 조직이론   | 정치학박사 |
|      | "     | 權 泰 起 | 국제행정   | 법학박사  |
|      | 조 교 수 | 金 光 洙 | 계획이론   |       |
|      | "     | 韓 昇 洙 | 계량분석   | 정치학박사 |
|      | "     | 金 昇 洙 | 국제경제   | 경제학박사 |
|      | 전임강사  | 崔 哲   | 사회경제통제 |       |
|      | "     |       | 기획이론   |       |

### 환경대학원

|            |       |       |       |       |
|------------|-------|-------|-------|-------|
| 원장직무대리     | 교 수   | 朴 東 緒 | 인사행정론 | 정치학박사 |
| 교무학생과장직무대리 | 부 교 수 | 姜 信 澤 | 행정이론  | 정치학박사 |
| 서무과장직무대리   | 행정사무관 | 金 仁 浩 |       |       |

### 공과대학

|     |     |       |      |      |
|-----|-----|-------|------|------|
| 학 장 | 교 수 | 金 熙 喆 | 내연기관 | 공학박사 |
|-----|-----|-------|------|------|

|       |   |   |   |   |   |   |                |      |
|-------|---|---|---|---|---|---|----------------|------|
| 교무과장  | 부 | 교 | 수 | 金 | 商 | 周 | 금속공학           | 공학박사 |
| 학생과장  |   | " |   | 申 | 鉉 | 千 | 수학             | 이학박사 |
| 사무과장  | 서 | 기 | 관 | 金 | 應 | 河 | 항공동력           | 공학박사 |
| 공도서관장 | 교 |   | 수 | 李 | 樂 | 周 | 항상             | 공학박사 |
|       |   | " |   | 金 | 魯 | 洙 | 염색학            | 공학박사 |
|       |   | " |   | 金 | 東 | 垣 | 기계역학           | 공학박사 |
|       |   | " |   | 金 | 東 | 勳 | 물리야금학          |      |
|       |   | " |   | 金 | 汶 | 尙 | 편조공학           | 공학박사 |
|       |   | " |   | 金 | 鳳 | 栩 | 도학             |      |
|       |   | " |   | 金 | 載 | 極 | 암석역학           | 공학박사 |
|       |   | " |   | 金 | 在 | 瑾 | 선박설계           | 공학박사 |
|       |   | " |   | 金 | 正 | 洙 | 미분방정식          | 이학박사 |
|       |   | " |   | 金 | 亨 | 杰 | 응용역학           |      |
|       |   | " |   | 金 | 孝 | 經 | 건축사            | 공학박사 |
|       |   | " |   | 金 | 熙 | 春 | 냉난방            |      |
|       |   | " |   | 羅 | 益 | 榮 | 분석화학           |      |
|       |   | " |   | 朴 | 麒 | 洙 | 전자파이론          | 공학박사 |
|       |   | " |   | 朴 | 旻 | 鎬 | 전기기계           | 공학박사 |
|       |   | " |   | 朴 | 鳳 | 烈 | 조립자론           | 이학박사 |
|       |   | " |   | 朴 | 商 | 朝 | 구조공학           |      |
|       |   | " |   | 朴 | 泰 | 源 | 식품공학           | 공학박사 |
|       |   | " |   | 朴 | 平 | 柱 | 비철야금학          | 공학박사 |
|       |   | " |   | 成 | 百 | 能 | 물리학            | 이학박사 |
|       |   | " |   | 申 | 永 | 琦 | 구조역학           |      |
|       |   | " |   | 申 | 允 | 卿 | 산알카리및<br>산화학비료 | 공학박사 |
|       |   | " |   | 沈 | 貞 | 燮 | 고분자화학          | 공학박사 |
|       |   | " |   | 安 | 守 | 漢 | 수리학            | 공학박사 |
|       |   | " |   | 梁 | 興 | 錫 | 자동제어           | 공학박사 |
|       |   | " |   | 廉 | 永 | 夏 | 기계공학           | 공학박사 |
|       |   | " |   | 廉 | 熙 | 澤 | 금속가공및<br>야금학   | 공학박사 |

|   |   |   |   |   |        |      |
|---|---|---|---|---|--------|------|
| 교 | 수 | 禹 | 範 | 植 | 직물구조학  |      |
| " | " | 禹 | 亨 | 疇 | 전기자기학  |      |
| " | " | 魏 | 祥 | 奎 | 항공공학   | 공학박사 |
| " | " | 尹 | 張 | 燮 | 동양건축사  |      |
| " | " | 李 |   | 樑 | 고체역학   | 공학박사 |
| " | " | 李 | 光 | 魯 | 건축의장학  |      |
| " | " | 李 | 暉 | 衡 | 콘크리트학  |      |
| " | " | 李 | 晷 | 漢 | 고전자공학  | 공학박사 |
| " | " | 李 | 承 | 院 | 전기기계   | 공학박사 |
| " | " | 李 | 載 | 聖 | 단위조작   | 공학박사 |
| " | " | 李 | 鍾 | 珏 | 단공전자공학 | 공학박사 |
| " | " | 李 | 澤 | 植 | 유체역학   | 공학박사 |
| " | " | 任 | 尙 | 鏞 | 선박구조학  | 공학박사 |
| " | " | 林 | 應 | 極 | 요업     | 공학박사 |
| " | " | 鄭 | 鳳 | 浹 | 수학     |      |
| " | " | 鄭 | 善 | 謨 | 기계설계   | 공학박사 |
| " | " | 丁 | 性 | 桂 | 고전압공학  | 공학박사 |
| " | " | 池 | 哲 | 根 | 조명공학   | 공학박사 |
| " | " | 崔 | 桂 | 根 | 전자회로   | 공학박사 |
| " | " | 崔 |   | 雄 | 화반응공학  |      |
| " | " | 黃 | 宗 | 屹 | 조선학    | 공학박사 |
| " | " | 洪 | 淳 | 復 | 물리학    |      |
| " | " | 洪 | 準 | 箕 | 물리탐사   | 공학박사 |
| 부 | 교 | 高 | 明 | 三 | 전기공학   | 공학박사 |
| " | " | 金 | 極 | 天 | 반응기관   | 공학박사 |
| " | " | 金 | 淵 | 植 | 채광학    | 공학박사 |
| " | " | 金 | 俊 | 容 | 화학공학   | 공학박사 |
| " | " | 南 | 宮 | 寔 | 화공열역학  | 공학박사 |
| " | " | 閔 | 虎 | 基 | 수학     | 공학박사 |

|   |    |   |   |   |       |       |
|---|----|---|---|---|-------|-------|
| 부 | 교수 | 朴 | 永 | 文 | 전기공학  | 공학박사  |
|   | "  | 朴 | 仲 | 文 | 위생공학  | 공학박사  |
|   | "  | 安 | 哲 | 鉉 | 측량학   |       |
|   | "  | 安 | 泰 | 浩 | 화학공학  | 공학박사  |
|   | "  | 尹 | 定 | 玩 | 건축공학  |       |
|   | "  | 李 | 文 | 變 | 분석화학  |       |
|   | "  | 李 | 禹 | 得 | 수학    | 이학박사  |
|   | "  | 李 | 益 | 翰 | 방사화학  | 이학박사  |
|   | "  | 李 | 海 | 春 | 항공공학  | 공학박사  |
|   | "  | 田 | 溶 | 京 | 광산지질학 | 공학박사  |
|   | "  | 鄭 | 寅 | 元 | 토질역학  |       |
|   | "  | 鄭 | 日 | 駿 | 건축공학  |       |
|   | "  | 趙 | 珪 | 榮 | 체육    |       |
|   | "  | 趙 | 宣 | 彙 | 기계공학  | 공학박사  |
|   | "  | 趙 |   | 哲 | 전기재료  |       |
|   | "  | 韓 | 鳳 | 熙 | 금속물리학 | 공학박사  |
|   | "  | 玄 | 炳 | 九 | 지구물리학 | 공학박사  |
| 조 | 교수 | 金 | 文 | 漢 | 건축구조  |       |
|   | "  | 金 | 相 | 溶 | 섬유공학  | 공학박사  |
|   | "  | 金 | 榮 | 澤 | 전자계산학 | 이공학박사 |
|   | "  | 金 | 應 | 瑞 | 자동차학  |       |
|   | "  | 金 | 載 | 周 | 수학    |       |
|   | "  | 羅 | 亨 | 用 | 구조론   |       |
|   | "  | 南 | 天 | 祐 | 물리학   | 이학박사  |
|   | "  | 朴 | 先 | 正 | 전자장   | 공학박사  |
|   | "  | 朴 | 鍾 | 殷 | 조선학   |       |
|   | "  | 朴 | 天 | 卿 | 기계공학  |       |
|   | "  | 朴 | 惠 | 一 | 원자물리  | 이학박사  |
|   | "  | 宋 | 熙 | 星 | 물리학   | 이학박사  |

|      |    |    |    |       |      |
|------|----|----|----|-------|------|
| 조교수  | 安元 | 秀鍾 | 吉洙 | 회로망   |      |
| "    | 尹李 | 惊基 | 奎俊 | 전기공학  |      |
| "    | 李李 | 基在 | 坤雄 | 물리야금  | 공학박사 |
| "    | 李李 | 忠華 | 榮翼 | 화학공학  | 공학박사 |
| "    | 張鄭 | 會昌 | 炫國 | 방직학   |      |
| "    | 趙朱 | 慶鍾 | 元斗 | 전자회로  | 공학박사 |
| "    | 崔河 | 柄完 | 植曄 | 화학공학  | 공학박사 |
| "    | 韓黃 | 松熙 | 隆一 | 양사역학  | 이학박사 |
| "    | 洪姜 | 性春 | 植元 | 핵공학   | 공학박사 |
| 전임강사 | 高金 | 錫成 | 基湜 | 항공역장  | 공학박사 |
| "    | 金正 | 宗曉 | 相哲 | 항동력   |      |
| "    | 金宗 | 曉鉉 | 杓雨 | 축시공   |      |
| "    | 金申 | 李李 | 相榮 | 및학    |      |
| "    | 李李 | 鄭鄭 | 基在 | 리     |      |
| "    | 洪性 |    | 穆  | 물리    |      |
| "    |    |    |    | 섬유공학  |      |
| "    |    |    |    | 전기공학  |      |
| "    |    |    |    | 전기공학  |      |
| "    |    |    |    | 섬유조제학 |      |
| "    |    |    |    | 주조공학  |      |
| "    |    |    |    | 합성섬유  |      |
| "    |    |    |    | 수학    |      |
| "    |    |    |    | 구조역학  |      |
| "    |    |    |    | 진자공학  |      |
| "    |    |    |    | 조선공학  |      |
| "    |    |    |    | 경영과학  |      |
| "    |    |    |    | 입간과학  |      |
| "    |    |    |    | 회로망   |      |
| "    |    |    |    | 기계공학  |      |
| "    |    |    |    | 물리학   |      |
| "    |    |    |    | 내수학   |      |
| "    |    |    |    | 건축구조학 |      |

# 농과대학

|             |       |         |       |        |
|-------------|-------|---------|-------|--------|
| 학 장         | 교 수   | 表 鉉 九   | 채소원예학 | 농 학 박사 |
| 교무과장        | "     | 表 吳 鳳 國 | 가금육종학 | 농 학 박사 |
| 학생과장        | "     | 尹 錫 鳳   | 수의해부학 | 수의학박사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金 淳 泰   |       |        |
| 농 학<br>도서관장 | 교 수   | 金 玄 在 善 | 동물생태학 | 농 학 박사 |
|             | 교 수   | 姜 壽 遠   | 동 문 학 | 이 학 박사 |
|             | "     | 金 甲 德   | 산림측정학 | 농 학 박사 |
|             | "     | 金 洛 禎   | 가잠해부학 |        |
|             | "     | 金 文 植   | 농업경제학 | 경제학박사  |
|             | "     | 金 文 浹   | 재 상 학 | 농 학 박사 |
|             | "     | 金 載 勗   | 식품공학  | 농 학 박사 |
|             | "     | 柳 達 永 宇 | 화웨이예학 | 농 학 박사 |
|             | "     | 朴 成 植 來 | 수 리 학 | 농 학 박사 |
|             | "     | 朴 泰 弘   | 농업교육학 | 농 학 박사 |
|             | "     | 朴 白 雲 夏 | 통 계 학 | 통계학박사  |
|             | "     | 邊 普 燁 源 | 곤 충 학 | 농 학 박사 |
|             | "     | 宋 啓 源 斗 | 토질역학  | 농 학 박사 |
|             | "     | 申 載 鍾 燮 | 축산가공학 | 농 학 박사 |
| 부속<br>연습장   | "     | 沈 鍾 華   | 수의화학  | 농 학 박사 |
| 부속<br>병원    | "     | 玉 劉 漢 烈 | 수의외과학 |        |
|             | "     | 陸 鍾 隆   | 관 개 학 | 농 학 박사 |
| 부속<br>사육장   | "     | 李 升 圭   | 낙 농 학 | 농 학 박사 |
|             | "     | 李 榮 商   | 가 금 학 |        |
|             | "     | 李 榮 韶   | 가축영양학 | 농 학 박사 |
|             | "     | 李 榮 用 斌 | 수의생리학 | 수의학박사  |
|             | "     |         | 가축번식학 | 농 학 박사 |

부속장  
농장장  
부속수목장  
원장

|     |       |        |        |
|-----|-------|--------|--------|
| 교수  | 李 殷 雄 | 작물학    | 농학박사   |
| "   | 李 長 洛 | 수의약리학  | 농학박사   |
| "   | 李 昌 福 | 수목학    | 농학박사   |
| "   | 李 哲 周 | 농업기계학  | 공학박사   |
| "   | 李 春 寧 | 생화학    | 농학박사   |
| "   | 任 慶 彬 | 조림학    | 농학박사   |
| "   | 林 昌 亨 | 수의병리학  | 수의학박사  |
| "   | 任 炯 彬 | 식물생리학  | 농학박사   |
| "   | 全 允 成 | 수미생물학  | 수의학박사  |
| "   | 鄭 昌 國 | 수의외과학  | 수의학박사  |
| "   | 曹 惠 鉉 | 농화학    | 농학박사   |
| "   | 趙 聖 祉 | 영어     |        |
| "   | 崔 炳 熙 | 잠사화학   | 농학박사   |
| "   | 玄 信 圭 | 임목육종학  | 농학박사   |
| 부교수 | 高 光 出 | 과수학    | 농학박사   |
| "   | 高 在 君 | 농진축공학  | 농학박사   |
| "   | 朴 永 觀 | 지질학    |        |
| "   | 潘 性 紈 | 농업경영학  | 농학박사   |
| "   | 宋 海 均 | 농업교육학  | 농교육학박사 |
| "   | 沈 永 根 | 농업정책   | 농학박사   |
| "   | 安 建 鋪 | 임목육종학  |        |
| "   | 王 仁 樞 | 농시장경제학 | 농학박사   |
| "   | 吳 壽 珏 | 수의산과학  | 수의학박사  |
| "   | 李 啓 瑚 | 화학     | 농학박사   |
| "   | 李 良 厚 | 의류학    |        |
| "   | 李 昌 業 | 수의약리학  |        |
| "   | 李 弘 秬 | 작물학    | 농학박사   |
| "   | 林 善 旭 | 토미생물학  | 농학박사   |



|   |   |   |   |   |   |    |    |   |    |       |
|---|---|---|---|---|---|----|----|---|----|-------|
| 부 | 교 | 수 | 張 | 斗 | 煥 | 수기 | 생  | 충 | 의학 | 수의학박사 |
|   | " |   | 鄭 | 吉 | 澤 | 수위 | 의  | 공 | 중  | 수의학박사 |
|   | " |   | 鄭 | 昌 | 柱 | 농업 | 기계 | 학 |    | 공학박사  |
|   | " |   | 鄭 | 厚 | 雙 | 식물 | 병리 | 학 |    | 농학박사  |
|   | " |   | 朱 | 奉 | 圭 | 토지 | 경제 | 학 |    | 농학박사  |
|   | " |   | 崔 | 承 | 允 | 곤  | 충  | 학 |    | 농학박사  |
|   | " |   | 韓 | 壽 | 南 | 생물 | 화학 |   |    | 수의학박사 |
|   | " |   | 韓 | 仁 | 圭 | 가축 | 영양 | 학 |    | 농학박사  |
|   | " |   | 許 | 文 | 會 | 작물 | 육종 | 학 |    | 농학박사  |
| 조 | 교 | 수 | 權 | 宗 | 國 | 수의 | 생리 | 학 |    |       |
|   | " |   | 高 | 學 | 均 | 동  | 력  | 학 |    |       |
|   | " |   | 金 | 東 | 岩 | 초  | 지  | 학 |    | 농학박사  |
|   | " |   | 金 | 振 | 元 | 체  |    | 육 |    |       |
|   | " |   | 金 | 泰 | 旭 | 경계 | 식물 | 학 |    |       |
|   | " |   | 羅 | 瑤 | 俊 | 식물 | 병리 | 학 |    |       |
|   | " |   | 南 | 重 | 熙 | 제  | 사  | 학 |    |       |
|   | " |   | 柳 | 順 | 昊 | 토  | 양  | 학 |    | 이학박사  |
|   | " |   | 朴 | 光 | 義 | 가잠 | 육종 | 학 |    | 농학박사  |
|   | " |   | 朴 | 明 | 圭 | 산림 | 보호 | 학 |    |       |
|   | " |   | 朴 | 英 | 一 | 가축 | 육종 | 학 |    | 농학박사  |
|   | " |   | 朴 | 昌 | 圭 | 유기 | 화  | 학 |    | 이학박사  |
|   | " |   | 徐 | 鈇 | 洙 | 수의 | 병리 | 학 |    |       |
|   | " |   | 成 | 在 | 基 | 수의 | 방사 | 선 |    |       |
|   | " |   | 沈 | 載 | 昱 | 생물 | 유전 | 학 |    |       |
|   | " |   | 安 | 元 | 榮 | 목재 | 화  | 학 |    |       |
|   | " |   | 禹 | 建 | 錫 | 곤  | 충  | 학 |    |       |
|   | " |   | 禹 | 保 | 命 | 사방 | 공  | 학 |    |       |
|   | " |   | 李 | 炳 | 駟 | 채종 | 원예 | 학 |    | 농학박사  |
|   | " |   | 李 | 瓊 | 鉉 | 농업 | 경영 | 학 |    |       |

|         |       |             |        |
|---------|-------|-------------|--------|
| 조 교 수   | 李 弼 宇 | 목재이용학       |        |
| "       | 全 在 根 | 식 품 공 학     | 농 학 박사 |
| "       | 鄭 址 雄 | 교 육 학       |        |
| "       | 趙 鋪 涉 | 식물병리학       | 농 학 박사 |
| "       | 崔 敏 浩 | 농업교육학       |        |
| "       | 崔 在 甲 | 농 기 구 학     |        |
| "       | 崔 熙 仁 | 수의내과학       |        |
| "       | 韓 相 麒 | 작물측정학       | 농 학 박사 |
| 전 임 강 사 | 權 容 雄 | 작물생리학       |        |
| "       | 金 浩 卓 | 농업경제학       | 농 학 박사 |
| "       | 馬 錫 一 | 섬 유 공 학     |        |
| "       | 文 在 裕 | 육 잡 학       |        |
| "       | 朴 陽 子 | 가 정 학       |        |
| "       | 李 茂 根 | 농업교육학       |        |
| "       | 李 相 沃 | 영 어         |        |
| "       | 李 俊 變 | 수의조직학       |        |
| "       | 林 雄 圭 | 식 물 학       |        |
| "       | 鄭 夏 禹 | 수 리 학       |        |
| "       | 崔 銀 淑 | 가정관리학       |        |
| "       | 韓 弘 栗 | 소 내 동 과 물 학 |        |

문 리 과 대 학

|          |       |       |         |        |
|----------|-------|-------|---------|--------|
| 학 장      | 교 수   | 高 炳 翊 | 동 양 사   | 철 학 박사 |
| 문학부장     | "     | 全 光 鋪 | 국 문 학   |        |
| 이학부장     | "     | 具 廷 會 | 결 정 화 학 | 이 학 박사 |
| 의 치 예과부장 | "     | 鄭 英 昊 | 식물분류학   | 이 학 박사 |
| 교무과장     | 부 교 수 | 文 祥 得 | 영 문 학   |        |
| 학생과장     | "     | 安 相 鎭 | 철 학     |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朴 成 喆 |         |        |
| 문 리 도서관장 | 부 교 수 | 鄭 漢 模 | 국 문 학   |        |

|   |   |   |   |   |   |   |   |        |
|---|---|---|---|---|---|---|---|--------|
|   | 수 | 姜 | 斗 | 植 | 독 | 문 | 학 |        |
|   | " | 姜 | 永 | 善 | 세 | 유 | 전 | 이 학 박사 |
|   | " | 權 | 寧 | 大 | 포 | 강 | 학 | 이 학 박사 |
|   | " | 高 | 錫 | 錫 | 영 | 문 | 학 |        |
|   | " | 高 | 尤 | 星 | 원 | 자 | 학 | 이 학 박사 |
|   | " | 金 | 庚 | 熙 | 문 | 리 | 학 |        |
|   | " | 金 | 斗 | 漢 | 지 | 리 | 학 |        |
|   | " | 金 | 芳 | 均 | 경 | 계 | 학 |        |
|   | " | 金 | 鳳 | 九 | 인 | 어 | 학 |        |
|   | " | 金 | 鵬 | 國 | 고 | 생 | 문 | 이 학 박사 |
|   | " | 金 | 榮 | 龍 | 불 | 문 | 학 |        |
| 부 | " | 金 | 元 | 龍 | 경 | 치 | 학 | 철 학 박사 |
| 박 | " | 金 | 俊 | 雙 | 고 | 고 | 학 | 철 학 박사 |
| 문 | " | 金 | 哲 | 洙 | 친 |   | 학 | 이 학 박사 |
| 관 | " | 金 | 鎔 | 浚 | 유 | 세 | 역 | 이 학 박사 |
| 상 | " | 金 | 鎔 | 吉 | 국 |   | 사 |        |
|   | " | 金 | 泰 | 洙 | 천 |   | 학 | 철 학 박사 |
|   | " | 金 | 熙 | 台 | 동 | 물 | 분 | 이 학 박사 |
|   | " | 金 | 丙 | 泓 | 물 | 분 | 류 | 학      |
|   | " | 閔 | 錫 | 鉉 | 정 | 치 | 학 | 문 학 박사 |
|   | " | 閔 | 義 | 奎 | 서 | 양 | 학 |        |
|   | " | 朴 | 洪 | 奎 | 미 |   | 학 |        |
|   | " | 朴 | 致 | 武 | 절 |   | 학 |        |
|   | " | 孫 | 四 | 穰 | 광 | 산 | 학 | 이 학 박사 |
|   | " | 宋 | 乘 | 勳 | 영 | 문 | 학 | 문 학 박사 |
|   | " | 申 | 鉉 | 祐 | 중 | 교 | 학 | 철 학 박사 |
|   | " | 梁 | 基 | 瑀 | 시 | 양 | 사 |        |
|   | " | 吳 | 萬 | 文 | 불 | 문 | 학 |        |
|   | " | 李 | 萬 | 甲 | 국 | 어 | 학 |        |
|   | " | 李 | 敏 | 毅 | 사 | 회 | 학 |        |
|   | " | 李 |   |   | 식 | 문 | 학 | 이 학 박사 |

부  
박  
문  
관  
상

교  
무  
처  
장

교  
과  
장  
부  
장

부  
도  
서  
관  
장  
부  
장  
부  
장  
부  
장  
부  
장

학생지도  
연구소장  
인구및발전  
문제연구소장

|    |   |   |   |           |        |
|----|---|---|---|-----------|--------|
| 교수 | 李 | 商 | 萬 | 암 석 학     | 이 학 박사 |
| "  | 李 | 用 | 熙 | 국제정치학     | 법 학 박사 |
| "  | 李 | 義 | 喆 | 심 리 학     | 철 학 박사 |
| "  | 李 | 海 | 英 | 사 회 학     |        |
| "  | 李 | 彙 | 榮 | 불 문 학     |        |
| "  | 張 | 基 | 槿 | 중 국 문 학   | 문 학 박사 |
| "  | 張 | 德 | 順 | 한 고 전 문 학 | 문 학 박사 |
| "  | 張 | 秉 | 吉 | 종 교 학     |        |
| "  | 張 | 秉 | 琳 | 심 리 학     |        |
| "  | 張 | 世 | 愷 | 물 리 화 학   |        |
| "  | 張 | 世 | 愷 | 유 기 화 학   | 이 학 박사 |
| "  | 全 | 濟 | 玉 | 영 문 학     |        |
| "  | 鄭 | 炳 | 昱 | 국 문 학     | 문 학 박사 |
| "  | 鄭 | 鳳 | 日 | 지구물리학     |        |
| "  | 鄭 | 良 | 殷 | 심 리 학     | 철 학 박사 |
| "  | 鄭 | 昌 | 熙 | 퇴적암석학     | 이 학 박사 |
| "  | 趙 | 完 | 圭 | 동물세포학     | 이 학 박사 |
| "  | 池 | 彰 | 烈 | 전 자 기 학   | 이 학 박사 |
| "  | 車 | 相 | 轅 | 중 국 문 학   | 문 학 박사 |
| "  | 車 | 柱 | 環 | 중 국 문 학   | 문 학 박사 |
| "  | 崔 | 圭 | 源 | 물 리 화 학   | 이 학 박사 |
| "  | 崔 | 載 | 喜 | 철 학       | 철 학 박사 |
| "  | 崔 | 至 | 薰 | 통 제 학     | 이 학 박사 |
| "  | 河 | 相 | 洛 | 사 회 사 업   |        |
| "  | 韓 | 祐 | 勛 | 국 사       | 문 학 박사 |
| "  | 許 | 亨 | 根 | 독 문 학     |        |
| "  | 許 |   | 雄 | 언 어 학     | 문 학 박사 |
| "  | 玄 | 正 | 峻 | 천 문 학     |        |
| "  | 洪 | 淳 | 佑 | 식물세포학     | 이 학 박사 |

|   |   |   |   |   |   |   |   |   |   |   |
|---|---|---|---|---|---|---|---|---|---|---|
|   | 부 | 교 | 수 | 姜 | 萬 | 植 | 방 | 사 | 성 | 이 |
|   |   | " |   | 高 | 永 | 復 | 생 | 물 | 학 | 학 |
|   |   | " |   | 丘 | 翼 | 星 | 사 | 회 | 학 | 박 |
|   |   | " |   | 具 | 範 | 謨 | 독 | 문 | 학 | 사 |
|   |   | " |   | 具 | 永 | 祿 | 비 | 교 | 정 | 학 |
|   |   | " |   | 金 | 聖 | 三 | 정 | 치 | 학 | 박 |
|   |   | " |   | 金 | 容 | 雙 | 기 | 상 | 학 | 사 |
| 어 |   | " |   | 金 | 鍾 | 云 | 국 |   | 사 |   |
| 학 |   | " |   | 金 | 彩 | 潤 | 미 | 국 | 문 | 학 |
| 연 |   | " |   | 金 | 鎬 | 澂 | 사 | 회 | 학 |   |
| 구 |   | " |   | 金 | 閔 | 基 | 이 | 론 | 화 | 학 |
| 소 |   | " |   | 閔 | 斗 | 植 | 동 | 양 | 사 | 박 |
| 장 |   | " |   | 朴 | 奉 | 龍 | 국 | 제 | 정 | 학 |
|   | 국 | " |   | 朴 | 乙 | 圭 | 수 |   | 학 | 박 |
|   | 제 | " |   | 朴 | 俊 | 錫 | 국 | 제 | 정 | 학 |
|   | 문 | " |   | 孫 | 製 | 及 | 국 | 제 | 정 | 학 |
|   | 제 | " |   | 慎 | 翼 | 老 | 언 | 어 | 학 |   |
|   | 연 | " |   | 尹 | 明 | 協 | 철 |   | 학 | 박 |
|   | 소 | " |   | 張 | 仁 | 澤 | 사 | 회 | 사 | 학 |
|   | 장 | " |   | 鄭 | 漢 | 烈 | 심 | 리 | 학 |   |
|   |   | " |   | 池 | 明 | 鳳 | 독 | 문 | 학 |   |
|   |   | " |   | 河 | 斗 | 一 | 생 | 리 | 학 | 박 |
|   | 조 | " |   | 權 | 肅 | 貞 | 고 | 체 | 물 | 리 |
|   |   | " |   | 金 | 道 | 眞 | 지 | 리 | 학 | 박 |
|   |   | " |   | 金 | 洙 | 洙 | 광 | 물 | 학 | 박 |
|   |   | " |   | 金 | 完 | 洙 | 수 | 산 | 해 | 학 |
|   |   | " |   | 金 | 完 | 眞 | 자 | 원 | 학 | 박 |
|   |   | " |   | 金 | 完 | 九 | 국 | 어 | 학 | 사 |
|   |   | " |   | 金 | 容 | 秘 | 국 | 제 | 정 | 학 |
|   |   | " |   | 金 | 濟 | 主 | 위 | 상 | 수 | 학 |
|   |   | " |   | 金 | 學 |   | 중 | 국 | 문 | 학 |

|   |   |   |   |   |   |       |       |
|---|---|---|---|---|---|-------|-------|
| 조 | 교 | 수 | 南 | 世 | 鎮 | 사회사업학 |       |
|   | " |   | 盧 | 在 | 鳳 | 국제정치학 | 정치학박사 |
|   | " |   | 朴 | 相 | 大 | 동물조직학 |       |
|   | " |   | 朴 | 世 | 熙 | 수학    |       |
|   | " |   | 朴 | 龍 | 安 | 해양학   |       |
|   | " |   | 朴 | 仁 | 源 | 생물화학  | 이학박사  |
|   | " |   | 朴 | 亨 | 達 | 언어학   |       |
|   | " |   | 叟 | 成 | 東 | 정치학   |       |
|   | " |   | 白 | 琪 | 洙 | 미학    |       |
|   | " |   | 白 | 樂 | 晴 | 영문학   |       |
|   | " |   | 宋 | 東 | 準 | 독문학   |       |
|   | " |   | 嚴 | 圭 | 白 | 해양생태학 |       |
|   | " |   | 尹 | 在 | 漢 | 수학    |       |
|   | " |   | 李 | 京 | 植 | 영문학   |       |
|   | " |   | 李 | 龜 | 澈 | 물리학   | 이학박사  |
|   | " |   | 李 | 炳 | 漢 | 중국문학  |       |
|   | " |   | 李 | 潤 | 榮 | 유기화학  |       |
|   | " |   | 李 | 仁 | 圭 | 조류학   | 이학박사  |
|   | " |   | 李 | 炫 | 馥 | 언어학   | 철학박사  |
|   | " |   | 李 | 洪 | 九 | 정치학   | 정치학박사 |
|   | " |   | 鄭 | 智 | 榮 | 불어학   | 문학박사  |
|   | " |   | 曹 | 大 | 京 | 심리학   | 철학박사  |
|   | " |   | 河 | 永 | 七 | 미생물학  |       |
|   | " |   | 韓 | 相 | 福 | 인류학   |       |
|   | " |   | 韓 | 完 | 相 | 사회학   | 사회학박사 |
|   | " |   | 洪 | 承 | 五 | 불문학   |       |
| 전 | 임 | 강 | 金 | 禹 | 昌 | 영문학   |       |
|   | " |   | 柳 | 正 | 茂 | 체육학   |       |
|   | " |   | 朴 | 英 | 漢 | 지리학   |       |

|   |   |   |   |   |   |   |   |   |
|---|---|---|---|---|---|---|---|---|
| 전 | 임 | 강 | 사 | 吳 | 昞 | 南 | 미 | 학 |
|   | " |   |   | 李 | 南 | 泳 | 철 | 학 |
|   | " |   |   | 任 | 孝 | 宰 | 고 | 학 |
|   | " |   |   | 韓 | 永 | 愚 | 한 | 국 |
|   |   |   |   |   |   |   | 국 | 사 |

**미술대학**

|    |    |    |     |   |   |   |   |   |
|----|----|----|-----|---|---|---|---|---|
| 학  | 장  | 교  | 수   | 金 | 世 | 中 | 조 | 소 |
| 교  | 무과 | 부  | 교   | 金 | 教 | 滿 | 상 | 업 |
| 학  | 생과 | 조  | 교   | 崔 | 滿 | 麟 | 조 | 소 |
| 서  | 무과 | 행정 | 사무관 | 李 | 銓 | 銀 | 미 | 학 |
| 미술 | 장  | 부  | 교   | 劉 | 權 | 俊 | 공 | 업 |
| 관  | 도  | 부  | 교   | 閔 | 哲 | 泓 | 조 | 소 |
| 부  | 속  | 교  | 수   | 金 | 鍾 | 瑛 | 서 | 양 |
| 장  | 실  | 수  | 수   | 柳 | 景 | 塚 | 서 | 양 |
|    |    | "  | "   | 文 | 學 | 晉 | 동 | 양 |
|    |    | "  | "   | 朴 | 魯 | 壽 | 동 | 양 |
|    |    | "  | "   | 朴 | 世 | 元 | 동 | 양 |
|    |    | "  | "   | 徐 | 世 | 鈺 | 서 | 양 |
|    |    | "  | "   | 丁 | 昌 | 燮 | 공 | 예 |
|    |    | 부  | 교   | 權 | 純 | 亨 | 만 | 화 |
|    |    | "  | 수   | 金 | 靜 | 子 | 서 | 양 |
|    |    | 조  | 교   | 金 | 永 | 泰 | 동 | 양 |
|    |    | "  | "   | 辛 | 英 | 常 | 미 | 학 |
|    |    | "  | "   | 林 | 英 | 芳 | 상 | 업 |
|    |    | "  | "   | 趙 | 義 | 濟 | 조 | 소 |
|    |    | "  | "   | 崔 | 濬 | 均 | 공 | 예 |
|    |    | 전  | 임   | 姜 | 承 | 椿 | 상 | 업 |
|    |    | "  | 강   | 梁 | 明 | 老 | 서 | 양 |
|    |    | "  | 사   | 尹 | 鍾 | 泰 | 조 | 소 |
|    |    | "  |     | 崔 |   |   |   |   |

칠학박사

# 법 과 대 학

|          |         |         |         |        |
|----------|---------|---------|---------|--------|
| 학 장      | 교 수     | 金 會 漢   | 민 법     | 법 학 박사 |
| 교무과장     | "       | 金 致 善   | 노 동 법   | 법 학 박사 |
| 학생과장     | 부 교 수   | 金 黃 迪 仁 | 민 법     |        |
| 사무과장     | 행정사무관   | 李 昌 根   |         |        |
| 법도서관장    | 교 수     | 崔 鍾 吉   | 민 법     | 법 학 박사 |
|          | 교 수     | 郭 潤 直   | 민 법     | 법 학 박사 |
|          | "       | 金 箕 斗   | 형 법     | 법 학 박사 |
|          | "       | 金 哲 洙   | 헌 법     | 법 학 박사 |
|          | "       | 金 董 德 模 | 정 치 학   | 정치학박사  |
|          | "       | 裴 福 石   | 재 정 제 학 | 법 학 박사 |
|          | "       | 裴 載 漢 基 | 국 제 법   | 법 학 박사 |
|          | "       | 李 印 英 煥 | 국 제 법   | 법 학 박사 |
|          | "       | 林 元 澤   | 체 육     |        |
|          | "       | 田 源 培   | 경 제 학   | 경제학박사  |
| 법 연구소 학장 | "       | 鄭 熙 喆   | 법 철     | 법 학 박사 |
|          | 부 교 수   | 朴 秉 濠   | 민 법     | 법 학 박사 |
| 교무부처장    | "       | 李 泰 魯   | 세 법     | 법 학 박사 |
|          | 조 교 수   | 金 東 熙   | 행 정 법   | 법 학 박사 |
|          | "       | 金 碩 祚   | 행 정 제   | 법 학 박사 |
|          | "       | 白 忠 鉉   | 국 상 법   | 법 학 박사 |
|          | "       | 宋 相 現   | 상 법     | 법 학 박사 |
|          | "       | 梁 承 圭   | 상 형 법   | 법 학 박사 |
|          | 전 임 강 사 | 李 壽 裕   | 노 동 법   | 법 학 박사 |
|          | "       | 金 大 權   | 헌 정 법   | 법 학 박사 |
|          | "       | 崔 松 和   | 행 정 법   | 법 학 박사 |



# 사범대학

|               |       |     |     |     |        |       |
|---------------|-------|-----|-----|-----|--------|-------|
| 학장            | 교수    | 徐明源 | 徐明源 | 徐明源 | 교육학    | 교육학박사 |
| 교무과장          | "     | 李元植 | 李元植 | 李元植 | 분석화학   |       |
| 학생과장          | 부교수   | 李東昇 | 李東昇 | 李東昇 | 독문학    |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林鍾大 | 林鍾大 | 林鍾大 |        |       |
| 교육<br>도서관장    | 부교수   | 李敏鎬 | 李敏鎬 | 李敏鎬 | 서양사    |       |
|               | 교수    | 康吉秀 | 康吉秀 | 康吉秀 | 교육행정   |       |
|               | "     | 金秉和 | 金秉和 | 金秉和 | 교육학    |       |
|               | "     | 金相昊 | 金相昊 | 金相昊 | 지리학    | 문학박사  |
|               | "     | 金錫穆 | 金錫穆 | 金錫穆 | 윤리학    |       |
| 교육<br>대원장     | "     | 金聲近 | 金聲近 | 金聲近 | 서양사학   | 문학박사  |
|               | "     | 金景鎭 | 金景鎭 | 金景鎭 | 독문학    |       |
|               | "     | 金應泰 | 金應泰 | 金應泰 | 수학     |       |
| 한국방송<br>통신대학장 | "     | 金宗西 | 金宗西 | 金宗西 | 교육학    |       |
|               | "     | 金鍾喆 | 金鍾喆 | 金鍾喆 | 교육학    | 철학박사  |
|               | "     | 金遵敏 | 金遵敏 | 金遵敏 | 생물학    | 이학박사  |
|               | "     | 金亨奎 | 金亨奎 | 金亨奎 | 국어학    | 문학박사  |
|               | "     | 金羅成 | 金羅成 | 金羅成 | 체육학    |       |
|               | "     | 朴吉俊 | 朴吉俊 | 朴吉俊 | 체육학    |       |
|               | "     | 朴德培 | 朴德培 | 朴德培 | 법학     |       |
|               | "     | 朴漢植 | 朴漢植 | 朴漢植 | 수학     |       |
|               | "     | 邊太燮 | 邊太燮 | 邊太燮 | 국사     |       |
|               | "     | 申熙明 | 申熙明 | 申熙明 | 물리학    |       |
|               | "     | 元容明 | 元容明 | 元容明 | 사회학    |       |
|               | "     | 俞景老 | 俞景老 | 俞景老 | 천문학    |       |
|               | "     | 尹仁鎬 | 尹仁鎬 | 尹仁鎬 | 체육과교수법 |       |
|               | "     | 李根茂 | 李根茂 | 李根茂 | 물리화학   | 이학박사  |
|               | "     | 李杜鉉 | 李杜鉉 | 李杜鉉 | 국문학    | 문학박사  |

학생처장

|     |   |   |   |   |     |       |
|-----|---|---|---|---|-----|-------|
| 교수  | 李 | 星 | 憲 | 수 | 학   |       |
| "   | 李 | 榮 | 基 | 경 | 제   | 경제학박사 |
| "   | 李 | 雄 | 植 | 생 | 물   | 이학박사  |
| "   | 李 | 應 | 百 | 국 | 문   |       |
| "   | 李 | 周 | 植 | 미 | 생물학 | 이학박사  |
| "   | 李 | 智 | 皓 | 지 | 리   | 학     |
| "   | 李 | 泰 | 寧 | 유 | 기   | 화학    |
| "   | 張 | 旺 | 祿 | 미 | 국   | 문학    |
| "   | 鄭 | 範 | 謨 | 교 | 육   | 심리학   |
| "   | 鄭 | 然 | 泰 | 물 | 리   | 학     |
| "   | 鄭 | 昌 | 熙 | 기 | 상   | 학     |
| "   | 陳 | 元 | 重 | 교 | 육   | 학     |
| "   | 崔 | 基 | 哲 | 동 | 물   | 학     |
| "   | 皮 | 千 | 得 | 영 | 문   | 학     |
| "   | 韓 | 基 | 彦 | 사 | 회   | 교육학   |
| 부교수 | 金 | 年 | 植 | 수 | 학   |       |
| "   | 金 | 豪 | 權 | 교 | 육   | 심리학   |
| "   | 朴 | 玉 | 茁 | 분 | 어   | 학     |
| "   | 朴 | 喜 | 寅 | 지 |     | 학     |
| "   | 元 | 明 | 洙 | 위 | 생   | 학     |
| "   | 李 | 孟 | 成 | 영 | 문   | 학     |
| "   | 李 | 洙 | 灝 | 물 | 리   | 학     |
| "   | 李 | 庸 | 周 | 국 | 어   | 학     |
| "   | 李 | 元 | 淳 | 국 |     | 사     |
| "   | 李 |   | 桓 | 분 | 어   | 학     |
| "   | 鄭 | 元 | 植 | 교 | 육   | 학     |
| 조교수 | 丘 | 仁 | 煥 | 국 | 문   | 학     |
| "   | 金 | 恩 | 典 | 국 | 문   | 학     |
| "   | 金 | 哲 | 子 | 독 |     | 어     |

|              |   |   |   |   |     |       |   |   |       |
|--------------|---|---|---|---|-----|-------|---|---|-------|
| 통신대학<br>교과과장 | 주 | 교 | 수 | 文 | 龍   | 영     | 어 |   |       |
|              | " | " | " | 朴 | 洙   | 국     | 어 | 학 |       |
|              | " | " | " | 朴 | 載   | 문     | 리 | 학 |       |
|              | " | " | " | 沈 | 鎬   | 영     | 문 | 학 |       |
|              | " | " | " | 李 | 奎   | 문화인류학 |   |   | 철학박사  |
|              | " | " | " | 李 | 哲   | 체육학   |   |   |       |
|              | " | " | " | 李 | 翊   | 국문학   |   |   |       |
|              | " | " | " | 李 | 周   | 교육학   |   |   | 철학박사  |
|              | " | " | " | 李 | 喆   | 철학    |   |   |       |
|              | " | " | " | 李 | 珍   | 교육심리  |   |   | 철학박사  |
|              | " | " | " | 李 | 傑   | 교육학   |   |   |       |
|              | " | " | " | 李 | 雄   | 무기화학  |   |   | 이학박사  |
|              | " | " | " | 李 | 雨   | 교육학   |   |   | 교육학박사 |
|              | " | " | " | 張 | 基   | 생물학   |   |   | 농학박사  |
|              | " | " | " | 崔 | 鳳   | 독문학   |   |   |       |
|              | " | " | " | 許 | 雲   | 독문학   |   |   | 철학박사  |
|              |   | 전 | 임 | 강 | 사   | 영     | 어 |   |       |
|              |   | " | " | " | "   | 교육학   |   |   |       |
|              | " | " | " | " | 영문학 |       |   |   |       |
|              | " | " | " | " | 동양사 |       |   |   |       |
|              | " | " | " | " | 불어학 |       |   |   |       |
|              | " | " | " | " | 정치학 |       |   |   |       |
|              | " | " | " | " | 지리학 |       |   |   |       |
|              | " | " | " | " | 체육학 |       |   |   |       |
|              | " | " | " | " | 체육학 |       |   |   |       |
|              | " | " | " | " | 지리학 |       |   |   |       |

상과대학

|   |   |   |   |   |   |   |       |       |
|---|---|---|---|---|---|---|-------|-------|
| 학 | 장 | 교 | 수 | 邊 | 衡 | 尹 | 계통경제학 | 경제학박사 |
|---|---|---|---|---|---|---|-------|-------|

|         |       |       |         |        |
|---------|-------|-------|---------|--------|
| 교무과장    | 부 교 수 | 姜 命 圭 | 경 제 학 사 |        |
| 학생과장    | "     | 崔 基 元 | 상 번     | 법 학 박사 |
| 사무과장    | 행정사무관 | 金 容 萬 | 경 제 사   |        |
| 상도서관장   | 부 교 수 | 金 宗 炫 | 보 험 론   | 경제학박사  |
|         | 교 수   | 方 甲 洙 | 회 제 학   | 경제학박사  |
|         | "     | 蘇 眞 德 | 재 무 관 리 |        |
|         | "     | 沈 兩 求 | 보 험 론   |        |
| 경대학원영장  | "     | 吳 相 洛 | 마 케 팅   | 경제학박사  |
| 경연연구소영장 | "     | 李 廐 俊 | 회 제 학   |        |
|         | "     | 李 賢 宰 | 재 정     | 경제학박사  |
|         | "     | 李 炳 然 | 이론경제학   | 경제학박사  |
| 한국경제연구원 | "     | 趙 淳 權 | 화폐금융론   | 경제학박사  |
|         | 부 교 수 | 車 耕 梧 | 재 정 학   | 경제학박사  |
|         | "     | 金 鳳 元 | 체 육     |        |
|         | "     | 金 羅 雄 | 마케팅관리   |        |
|         | "     | 呂 井 東 | 생 산 관 리 | 경영학박사  |
|         | "     | 朴 宇 熙 | 정 치 학   |        |
|         | "     | 林 鍾 哲 | 외 환 론   |        |
|         | "     | 韓 鍾 羲 | 국제경제학   |        |
|         | 조 교 수 | 鞠 正 植 | 상 품 학   |        |
|         | "     | 金 植 均 | 영 문 학   |        |
|         | "     | 金 鎭 履 | 인 사 관 리 |        |
|         | "     | 安 秉 直 | 사 회 학   |        |
|         | "     | 李 正 浩 | 경 제 사   |        |
|         | "     | 李 好 斑 | 한국경제사   |        |
| 전임강사    |       | 朴 在 潤 | 회 제 학   |        |
|         |       |       | 민 법     |        |
|         |       |       | 국 제 금 용 |        |

|      |       |       |       |
|------|-------|-------|-------|
| 전임강사 | 裴 茂 基 | 노동경제학 |       |
| "    | 愼 侑 根 | 인사관리  |       |
| "    | 鄭 基 俊 | 수리경제학 |       |
| "    | 鄭 英 一 | 농업경제학 |       |
| "    | 崔 凡 鍾 | 계량경제학 | 경제학박사 |

### 약 학 대 학

|           |       |           |                 |        |
|-----------|-------|-----------|-----------------|--------|
| 학 장       | 교 수   | 韓 寬 燮     | 약품물리학           | 이 학 박사 |
| 교무과장      | 부 교 수 | 朴 大 成     | 독 물 학           | 약 학 박사 |
| 학생과장      | "     | 羅 雲 龍     | 약 제 조 화 학       | 약 학 박사 |
| 사무과장      | 행정사무관 | 李 璧 榮     |                 |        |
| 약 학 도서관장  | 교 수   | 高 鉉 起     | 약 화 학           | 약 학 박사 |
| 실 약 국 습 장 | 부 교 수 | 金 信 根     | 이론약제학           | 약 학 박사 |
|           | 교 수   | 鞠 塚 豪     | 유 기 약 화 학       | 약 학 박사 |
|           | "     | 金 泳 垠     | 생 물 화 학         | 약 학 박사 |
|           | "     | 白 南 豪     | 약품분석화 학(2)      | 약 학 박사 |
|           | "     | 沈 吉 淳     | 위 생 화 학         | 약 학 박사 |
|           | "     | 禹 鍾 鶴     | 약 제 학           | 약 학 박사 |
|           | "     | 李 善 宙     | 생 약 학           | 약 학 박사 |
|           | "     | 李 王 圭     | 약품분석(1)         | 약 학 박사 |
|           | "     | 李 趙 允 成 圭 | 약 효 학           | 약 학 박사 |
|           | "     | 蔡 東 圭     | 약 화학 (2)        | 약 학 박사 |
|           | 부 교 수 | 李 相 燮     | 천 연 물 유 기 화 학   | 약 학 박사 |
|           | "     | 鄭 源 根     | 약품합성화 학 약 화학(2) | 약 학 박사 |
|           | "     | 韓 大 錫     | 생 약 학           |        |
|           | 조 교 수 | 金 洛 斗     | 약 효 학           |        |
|           | "     | 金 炳 珪     | 미 생 물 학         | 약 학 박사 |
|           | "     | 俞 炳 高     | 약품제조화 학(1)      | 약 학 박사 |
| 약초원장 직무대리 | "     | 鄭 普 燮     | 약용식물학           | 약 학 박사 |

|      |     |           |
|------|-----|-----------|
| 조교수  | 趙潤相 | 약품제조화학(3) |
| 전임강사 | 朴萬基 | 약품물리학     |
| "    | 申泰浩 | 독일어       |
| "    | 李民和 | 향장품화학     |

### 음악대학

|        |       |     |        |    |      |
|--------|-------|-----|--------|----|------|
| 학장     | 교수    | 李惠求 | 극작     | 음악 | 문학박사 |
| 교무과장   | 조교수   | 李南洙 | 성악     |    |      |
| 학생과장   | 부교수   | 安亨一 | 피아노    |    |      |
| 사무과장   | 행정사무관 | 金通元 | 작곡     |    |      |
| 음악도서관장 | 조교수   | 康芸京 | 피아노    |    |      |
|        | 교수    | 金聖泰 | 피아노    |    | 문학박사 |
|        | "     | 金淳元 | 피아노    |    |      |
|        | "     | 金元福 | 바이올린   |    |      |
|        | "     | 朴敏鍾 | 영문학    |    |      |
|        | "     | 朴時仁 | 성악     |    |      |
|        | "     | 李觀玉 | 성악     |    |      |
|        | "     | 李想春 | 작곡     |    |      |
|        | "     | 李誠載 | 국악     |    | 문학박사 |
|        | "     | 張師助 | 첼로     |    |      |
|        | "     | 全鳳勳 | 성악     |    |      |
|        | 부교수   | 金興教 | 콘트라베이스 |    |      |
|        | "     | 白樂皓 | 피아노    |    |      |
|        | "     | 吳貞珠 | 피아노    |    |      |
|        | "     | 李慶淑 | 성악     |    |      |
|        | "     | 李貞姬 | 성악     |    |      |
|        | "     | 鄭貞宇 | 피아노    |    |      |
|        | "     | 鄭回甲 | 작곡     |    |      |

|   |   |   |   |   |   |   |   |
|---|---|---|---|---|---|---|---|
| 조 | 교 | 수 | 金 | 容 | 振 | 각 | 곡 |
|   | " |   | 金 | 惠 | 炅 | 성 | 악 |
|   | " |   | 朴 | 魯 | 慶 | 성 | 악 |
|   | " |   | 梁 | 海 | 曄 | 바 | 이 |
|   | " |   | 李 | 基 | 媛 | 이 | 연 |
|   | " |   | 李 | 成 | 均 | 과 | 아 |
|   | " |   | 李 | 仁 | 榮 | 과 | 아 |
|   | " |   | 李 | 在 | 淑 | 성 | 노 |
|   | " |   | 李 | 潤 | 芳 | 국 | 악 |
| 전 | 임 | 강 | 權 | 桂 | 淑 | 체 | 육 |
|   | " |   | 徐 | 友 | 錫 | 과 | 아 |
|   | " |   | 徐 | 光 | 熙 | 과 | 노 |
|   | " |   | 蘇 | 秀 | 貞 | 작 | 곡 |
|   | " |   | 申 | 泰 | 烈 | 천 | 학 |
|   | " |   | 俞 | 明 | 學 | 의 | 아 |
|   | " |   | 李 | 在 | 玉 | 성 | 노 |
|   | " |   | 李 | 萬 | 榮 | 과 | 아 |
|   | " |   | 韓 | 玄 | 恩 | 비 | 노 |
|   | " |   |   |   |   | 국 | 라 |
|   | " |   |   |   |   | 바 | 아 |
|   | " |   |   |   |   | 이 | 연 |
|   | " |   |   |   |   | 린 |   |

### 의 과 대 학

|   |   |   |   |   |   |   |   |   |   |   |   |   |   |   |
|---|---|---|---|---|---|---|---|---|---|---|---|---|---|---|
| 학 | 장 | 교 | 수 | 權 | 彛 | 赫 | 예 | 방 | 의 | 학 | 의 | 학 | 박 | 사 |
| 교 | 무 | 과 | 장 | 高 | 光 | 昱 | 소 | 아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학 | 생 | 과 | 장 | 李 | 光 | 鎬 | 해 | 부 | 학 |   | 의 | 학 | 박 | 사 |
| 서 | 무 | 과 | 장 | 金 | 次 | 嚴 |   |   |   |   |   |   |   |   |
| 의 | 도 | 서 | 관 | 金 | 祐 | 謙 | 생 | 리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姜 | 承 | 鎬 | 내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康 | 昶 | 榮 | 내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결 | 핵 | 연 | 구 | 金 | 敬 | 植 | 내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소 | 장 |   |   | 金 | 道 | 鎭 | 내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金 | 洙 | 泰 | 일 | 반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   |   |   |   |   |   |   | 학 |   |   |   |   |   |   |   |

|              |    |   |   |   |       |      |
|--------------|----|---|---|---|-------|------|
|              | 교수 | 金 | 英 | 均 | 비뇨기과학 | 의학박사 |
|              | "  | 金 | 應 | 振 | 내 과학  | 의학박사 |
| 부속<br>명원장    | "  | 金 | 仁 | 達 | 예방의학  | 의학박사 |
|              | "  | 金 | 弘 | 基 | 이후과학  | 의학박사 |
|              | "  | 金 | 洪 | 植 | 피부과학  | 의학박사 |
| 국민체력<br>연구소장 | "  | 金 | 建 | 榮 | 산부인과학 | 의학박사 |
|              | "  | 羅 | 世 | 振 | 해부학   | 의학박사 |
|              | "  | 南 | 基 | 鏞 | 생리학   | 의학박사 |
| 보진<br>연구소장   | "  | 魯 | 炳 | 鎬 | 내 과학  | 의학박사 |
|              | "  | 閔 | 獻 | 基 | 내 과학  | 의학박사 |
|              | "  | 朴 | 吉 | 秀 | 일반외과학 | 의학박사 |
| 풍토<br>연구소장   | "  | 白 | 萬 | 基 | 이후과학  | 의학박사 |
|              | "  | 徐 | 丙 | 高 | 기생충학  | 의학박사 |
|              | "  | 成 | 樂 | 應 | 생화학   | 의학박사 |
| 대학원<br>교무과장  | "  | 申 | 東 | 薰 | 생리학   | 의학박사 |
|              | "  | 沈 | 輔 | 星 | 신경외과학 | 의학박사 |
|              | "  | 吳 | 鎭 | 燮 | 약리학   | 의학박사 |
|              | "  | 尹 | 源 | 植 | 안과학   | 의학박사 |
|              | "  | 李 | 國 | 柱 | 소아과학  | 의학박사 |
|              | "  | 李 | 貴 | 香 | 간호학   | 의학박사 |
|              | "  | 李 | 基 | 寧 | 생화학   | 의학박사 |
|              | "  | 李 | 明 | 馥 | 해부학   | 의학박사 |
|              | "  | 李 | 文 | 鎬 | 내 과학  | 의학박사 |
|              | "  | 李 | 尙 | 國 | 병리학   | 의학박사 |
|              | "  | 李 | 相 | 敦 | 생리학   | 의학박사 |
|              | "  | 李 | 聖 | 浩 | 내 과학  | 의학박사 |
|              | "  | 李 | 承 | 薰 | 미생물학  | 의학박사 |
|              | "  | 李 | 寧 | 均 | 흉부외과학 | 의학박사 |
|              | "  | 李 | 英 | 澤 | 의사학   | 의학박사 |



| 고 | 수 | 李 | 濟 | 九 | 병 리 학     | 의 학 박사 |
|---|---|---|---|---|-----------|--------|
| " | " | 李 | 定 | 均 | 정 신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李 | 鎬 | 汪 | 미 생 물 학   | 의 학 박사 |
| " | " | 任 | 正 | 淳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張 | 信 | 堯 | 해 부 학     | 의 학 박사 |
| " | " | 朱 | 樞 | 源 | 미 뇨 기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朱 | 東 | 雲 | 방 사 신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崔 | 漢 | 雄 | 소 아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韓 | 文 | 植 | 정 형 외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許 | 仁 | 穆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洪 | 思 | 岳 | 약 리 학     | 의 학 박사 |
| " | " | 洪 | 彰 | 義 | 소 아 과 학   | 의 학 박사 |
| 부 | 교 | 郭 | 一 | 龍 | 마 려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相 | 仁 | 임 상 병 리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相 | 協 | 소 아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昇 | 元 | 생 화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禮 | 欽 | 일 반 외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周 | 完 | 방 사 신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鎭 | 福 | 일 반 외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文 | 炯 | 魯 | 소 아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閔 | 丙 | 哲 | 일 반 외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朴 | 在 | 一 | 산 부 인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成 | 耆 | 陵 | 해 부 학     | 의 학 박사 |
| " | " | 申 | 冕 | 雨 | 산 부 인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吳 | 仁 | 赫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尹 | 德 | 老 | 예 방 의 학   | 의 학 박사 |
| " | " | 李 | 惟 | 信 | 괴 부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李 | 熙 | 永 | 미 뇨 기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林 | 壽 | 德 | 괴 부 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   |   |   |   |   |   |   |   |   |   |   |
|---|---|---|---|---|---|---|---|---|---|---|---|---|---|---|---|
| 부 | 교 | 수 | 林 | 定 | 圭 | 약 | 리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   | 張 | 友 | 鉉 | 미 | 생 | 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 張 | 潤 | 錫 | 산 | 부 | 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朱 | 正 | 和 | 신 | 경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咸 | 毅 | 根 | 병 | 리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조 | 교 | 수 | 高 | 昌 | 舜 | 등 | 위 | 원 | 소 | 의 | 학 | 박 | 사 |   |   |
|   | " |   | 金 | 光 | 宇 | 마 | 취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 金 | 勝 | 煜 | 산 | 부 | 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金 | 勇 | 一 | 병 | 리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金 | 丁 | 龍 | 내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金 | 鎭 | 永 | 이 | 비 | 인 | 후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金 | 晋 | 煥 | 일 | 반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羅 | 鳳 | 鎭 | 해 | 부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盧 | 寬 | 澤 | 이 | 비 | 인 | 후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明 | 好 | 鎭 | 신 | 경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 朴 | 貞 | 浩 | 간 | 호 | 학 |   |   |   |   |   |   |   |
|   | " |   | 朴 | 贊 | 雄 | 약 | 리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白 | 相 | 豪 | 해 | 부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徐 | 景 | 弼 | 흉 | 부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石 | 世 | 一 | 정 | 형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尹 | 東 | 浩 | 안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李 | 德 | 鏞 | 정 | 형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李 | 符 | 永 | 정 | 신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 李 | 尙 | 馥 | 신 | 경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 李 | 迎 | 雨 | 내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李 | 恩 | 玉 | 간 | 호 | 학 |   |   |   |   |   |   |   |
|   | " |   | 李 | 栽 | 興 | 안 | 과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李 | 漢 | 九 | 정 | 형 | 외 | 과 | 학 | 의 | 학 | 박 | 사 |   |
|   | " |   | 張 | 家 | 鏞 | 약 | 리 | 학 |   | 의 | 학 | 박 | 사 |   |   |

|         |       |                |        |
|---------|-------|----------------|--------|
| 조 교 수   | 蔡 範 錫 | 임 상 병<br>리 과 학 | 의 학 박사 |
| "       | 韓 東 世 | 정 신 과 학        | 의 학 박사 |
| "       | 韓 萬 靑 | 방사선과 학         | 의 학 박사 |
| "       | 韓 鏞 徹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       | 洪 麗 信 | 간 호 학          |        |
| 전 임 강 사 | 金 基 煥 | 생 화 학          |        |
| "       | 金 潞 經 | 내 과 학          |        |
| "       | 金 時 煌 | 비뇨기과 학         |        |
| "       | 金 永 珉 | 정형외과 학         |        |
| "       | 金 鍾 煥 | 흉부의과 학         | 의 학 박사 |
| "       | 徐 文 子 | 간 호 학          |        |
| "       | 安 承 槿 | 생 리 학          |        |
| "       | 禹 玉 子 | 간 호 학          |        |
| "       | 尹 鳳 子 | 예 방 의 학        |        |
| "       | 尹 鍾 求 | 소 아 과 학        |        |
| "       | 李 揆 媛 | 정 신 과 학        |        |
| "       | 李 笑 雨 | 간 호 학          |        |
| "       | 李 純 炯 | 기 생 증 학        | 의 학 박사 |
| "       | 李 元 魯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       | 李 珍 鏞 | 산부인과 학         |        |
| "       | 張 鳳 麟 | 안 과 학          |        |
| "       | 崔 國 鎭 | 일반외과 학         |        |
| "       | 崔 圭 完 | 내 과 학          | 의 학 박사 |
| "       | 崔 圭 秀 | 신경외과 학         |        |
| "       | 崔 成 培 | 미 생 물 학        | 의 학 박사 |
| "       | 洪 京 子 | 간 호 학          |        |

### 치 과 대 학

|                  |       |        |        |
|------------------|-------|--------|--------|
| 학 장 교 수          | 金 周 煥 | 예방치과 학 | 의 학 박사 |
| 치 과 대 학<br>부속병원장 | 金 圭 植 | 구강외과 학 | 의 학 박사 |

|             |   |   |   |   |     |   |         |        |
|-------------|---|---|---|---|-----|---|---------|--------|
| 교무과장        | 부 | 교 | 수 | 丁 | 東   | 均 | 약 리 학   | 의 학 박사 |
| 학생과장        |   | " |   | 金 | 明   | 國 | 구강해부학   | 의 학 박사 |
| 서무과장        | 서 | 기 | 관 | 李 | 澈   | 河 |         |        |
| 치의학<br>도서관장 | 부 | 교 | 수 | 金 | 鎭   | 泰 | 소아치과학   | 의 학 박사 |
|             | 교 |   | 수 | 金 | 東   | 順 | 구강병리학   | 의 학 박사 |
|             |   | " |   | 金 | 洙   | 哲 | 보 존 학   | 의 학 박사 |
|             |   | " |   | 金 | 永   | 昌 | 구강해부학   | 의 학 박사 |
|             |   | " |   | 金 | 英   | 海 | 보 존 학   | 의 학 박사 |
|             |   | " |   | 金 | 用   | 瑄 | 구강외과학   | 치의학박사  |
|             |   | " |   | 金 | 仁   | 哲 | 보 천 학   | 의 학 박사 |
|             |   | " |   | 文 | 東   | 先 | 치 주 병 학 | 의 학 박사 |
|             |   | " |   | 鮮 | 于 良 | 國 | 재 료 학   | 의 학 박사 |
|             |   | " |   | 沈 | 泰   | 錫 | 보 천 학   | 의 학 박사 |
|             |   | " |   | 安 | 炯   | 珪 | 방 사 선 학 | 의 학 박사 |
|             |   | " |   | 劉 | 鐘   | 德 | 구강해부학   | 의 학 박사 |
|             |   | " |   | 李 | 春   | 根 | 구강외과학   | 의 학 박사 |
|             |   | " |   | 張 | 完   | 植 | 보 천 학   | 의 학 박사 |
|             |   | " |   | 車 | 文   | 豪 | 소아치과학   | 의 학 박사 |
|             | 부 | 교 | 수 | 閔 | 丙   | 一 | 구강외과학   | 의 학 박사 |
|             |   | " |   | 徐 | 廷   | 勳 | 교 정 학   | 의 학 박사 |
|             |   | " |   | 申 | 範   | 哲 | 보 천 학   | 의 학 박사 |
|             |   | " |   | 劉 | 東   | 洙 | 방 사 선 학 | 의 학 박사 |
|             |   | " |   | 李 | 鳴   | 鍾 | 보 존 학   | 의 학 박사 |
|             |   | " |   | 李 | 正   | 植 | 보 존 학   | 의 학 박사 |
|             |   | " |   | 李 | 在   | 賢 | 치 주 병 학 | 의 학 박사 |
|             |   | " |   | 趙 | 根   | 沃 | 보 천 학   | 의 학 박사 |
|             |   | " |   | 趙 | 漢   | 國 | 구강병리학   | 의 학 박사 |
|             |   | " |   | 趙 | 喜   | 園 | 교 정 학   | 의 학 박사 |
|             |   | " |   | 陳 | 庸   | 奐 | 보 천 과   | 의 학 박사 |

|   |   |   |   |   |   |         |        |
|---|---|---|---|---|---|---------|--------|
| 부 | 교 | 수 | 黃 | 聖 | 明 | 구강해부학   | 의 학 박사 |
| 조 | 교 | 수 | 金 | 宗 | 源 | 구강외과학   | 의 학 박사 |
|   | " |   | 南 | 日 | 祐 | 구강외과학   | 의 학 박사 |
|   | " |   | 孫 | 性 | 熙 | 치 주 병 학 | 의 학 박사 |
|   | " |   | 李 | 勝 | 雨 | 구강진단학   | 의 학 박사 |
|   | " |   | 林 | 昌 | 潤 | 구강병리학   | 의 학 박사 |
| 전 | 임 | 강 | 權 | 赫 | 春 | 보 존 학   |        |
|   | " |   | 金 | 守 | 經 | 구강외과학   |        |
|   | " |   | 金 | 英 | 洙 | 보 철 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鍾 | 培 | 예방치과학   | 의 학 박사 |
|   | " |   | 金 | 哲 | 偉 | 치과재료학   |        |
|   | " |   | 朴 | 兌 | 源 | 방사선학    |        |
|   | " |   | 孫 | 同 | 銖 | 소아치과학   | 의 학 박사 |
|   | " |   | 梁 | 棟 | 奎 | 구강외과학   | 의 학 박사 |
|   | " |   | 梁 | 源 | 植 | 교 경 학   | 의 학 박사 |
|   | " |   | 尹 | 壽 | 漢 | 보 존 학   | 의 학 박사 |
|   | " |   | 李 | 鍾 | 昕 | 생 리 학   | 의 학 박사 |
|   | " |   | 林 | 成 | 森 | 보 존 학   | 의 학 박사 |
|   | " |   | 張 | 翼 | 泰 | 보 철 학   | 의 학 박사 |
|   | " |   | 鄭 | 泰 | 英 | 생 리 학   | 의 학 박사 |
|   | " |   | 崔 | 翔 | 默 | 치 주 병 학 | 의 학 박사 |

### 가 정 대 학

|   |     |   |   |   |   |   |           |
|---|-----|---|---|---|---|---|-----------|
| 학 | 장   | 교 | 수 | 玄 | 己 | 順 | 경 양 학     |
| 교 | 무과장 |   | " | 金 | 聲 | 連 | 섬 유 과 학   |
| 학 | 생과장 | 전 | 임 | 李 | 基 | 春 | 가정관리학     |
| 직 | 무대리 | 행 | 청 | 權 | 甲 | 周 |           |
| 서 | 무과장 | 교 | 수 | 張 | 明 | 郁 | 가정교수법     |
|   |     | 부 | 교 | 牟 | 壽 | 美 | 영 양 식 품 학 |
|   |     |   | " | 李 | 惠 | 秀 | 조 리 학     |
|   |     |   |   |   |   |   | 식 품 화 학   |

|         |   |   |   |           |
|---------|---|---|---|-----------|
| 부 교 수   | 林 | 元 | 子 | 의 상 학     |
| 조 교 수   | 安 | 承 | 堯 | 유 기 화 학   |
| 전 임 강 사 | 李 | 順 | 媛 | 피 복 구 성 학 |

### 교 양 과 정 부

|             |       |   |   |   |       |
|-------------|-------|---|---|---|-------|
| 부 장         | 교 수   | 閔 | 錫 | 泓 | 서양문화사 |
| 교무과장        | 부 교 수 | 羅 | 鍾 | 一 | 문 화 사 |
| 학생과장        | 조 교 수 | 朴 | 煥 | 德 | 독 어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全 | 澈 | 興 |       |
| 교 양<br>도서관장 | 부 교 수 | 李 | 炳 | 璩 | 독 어   |
|             | 교 수   | 朴 | 相 | 鉉 | 철 학   |
|             | "     | 崔 | 鶴 | 根 | 국 어   |
|             | "     | 崔 | 弘 | 基 | 사 회 학 |
|             | 부 교 수 | 文 | 祐 | 相 | 영 어   |
|             | "     | 安 | 秉 | 禧 | 국 어   |
|             | "     | 李 | 日 | 海 | 수 학   |
|             | "     | 鄭 | 明 | 煥 | 분 철 어 |
|             | "     | 韓 | 荃 | 淑 | 철 영 어 |
|             | 조 교 수 | 姜 | 大 | 虔 | 영 독 어 |
|             | "     | 高 | 昌 | 範 | 수 학   |
|             | "     | 高 | 英 | 昭 | 영 어   |
|             | "     | 金 | 光 | 浩 | 국 어   |
|             | "     | 金 | 昔 | 妍 | 경 제   |
|             | "     | 金 | 世 | 源 | 한 문   |
|             | "     | 金 | 時 | 俊 | 어 어   |
|             | "     | 金 | 容 | 稷 | 국 어   |
|             | "     | 金 | 允 | 植 | 국 물   |
|             | "     | 金 | 濟 | 琬 | 생 리   |
|             | "     | 金 | 俊 | 鎬 | 물     |

|   |   |   |   |   |   |   |
|---|---|---|---|---|---|---|
| 조 | 수 | 金 | 銀 | 世 | 국 | 어 |
|   | 교 | 盧 | 熙 | 惠 | 체 | 육 |
|   | " | 朴 | 東 | 奎 | 국 | 어 |
|   | " | 朴 | 炯 | 錫 | 화 | 학 |
|   | " | 宋 | 洛 | 憲 | 영 | 어 |
|   | " | 沈 | 在 | 箕 | 국 | 어 |
|   | " | 尹 | 玉 | 鏡 | 수 | 학 |
|   | " | 李 | 甲 | 圭 | 독 | 어 |
|   | " | 李 | 禹 | 永 | 화 | 학 |
|   | " | 元 | 潤 | 洙 | 불 | 어 |
|   | " | 李 | 緝 | 世 | 체 | 육 |
|   | " | 李 | 翊 | 變 | 국 | 어 |
|   | " | 張 | 浚 | 成 | 문 | 리 |
|   | " | 鄭 | 漢 | 永 | 수 | 학 |
|   | " | 鄭 | 炳 | 銀 | 철 | 학 |
|   | " | 趙 | 完 | 泰 | 영 | 어 |
|   | " | 崔 | 英 | 植 | 한 | 문 |
|   | " | 河 | 東 | 龜 | 화 | 학 |
|   | " | 黃 | 光 | 奎 | 영 | 어 |
| 전 | 강 | 金 | 炳 | 南 | 불 | 어 |
| 임 | 사 | 金 | 錫 | 國 | 국 | 어 |
| " | " | 金 | 義 | 道 | 독 | 어 |
| " | " | 金 | 寅 | 洙 | 체 | 육 |
| " | " | 金 | 寅 | 淑 | 영 | 어 |
| " | " | 閔 | 丙 | 秀 | 국 | 어 |
| " | " | 石 | 璟 | 澄 | 영 | 어 |
| " | " | 吳 | 麟 | 錫 | 문 | 사 |
| " | " | 李 | 耕 | 培 | 수 | 학 |
| " | " | 李 | 命 | 宰 | 독 | 어 |

|      |   |   |   |   |   |
|------|---|---|---|---|---|
| 전임강사 | 李 | 敏 | 浩 | 물 | 리 |
| "    | 李 | 秉 | 建 | 영 | 어 |
| "    | 李 | 秉 | 根 | 국 | 어 |
| "    | 李 | 碩 | 衡 | 체 | 육 |
| "    | 李 | 廷 | 珠 | 생 | 물 |
| "    | 李 | 鍾 | 徹 | 국 | 어 |
| "    | 李 | 鉉 | 求 | 수 | 학 |
| "    | 張 | 鉉 | 甲 | 심 | 리 |
| "    | 鄭 | 鍾 | 律 | 지 | 학 |
| "    | 千 | 冀 | 泰 | 독 | 어 |
| "    | 千 | 勝 | 傑 | 영 | 어 |
| "    | 崔 | 昌 | 圭 | 정 | 치 |
| "    | 韓 | 啓 | 傳 | 국 | 어 |

방 송 통 신 대 학

|             |         |   |   |   |                |        |
|-------------|---------|---|---|---|----------------|--------|
| 학 장         | 교 수     | 金 | 宗 | 西 | 교 육 학          |        |
| 교학과장        | 조 교 수   | 李 | 溶 | 傑 | 교 육 학          |        |
| 방 송 교 육 과 장 | 부 교 수   | 李 | 相 | 禧 | 컴퓨터이론<br>통신과여론 |        |
| 학 사 관 리 과 장 | 서 기 관 수 | 李 | 相 | 榮 |                |        |
|             | 교 수     | 宋 | 啓 | 源 | 축산가공학          | 농 학 박사 |
|             | 부 교 수   | 牟 | 壽 | 美 | 영양식품학          |        |
|             | "       | 韓 | 荃 | 淑 | 철 학            |        |
|             | 조 교 수   | 吳 | 錫 | 泓 | 조직이론           | 행정학박사  |
|             | "       | 李 | 正 | 浩 | 회 계 학          |        |
| 행정사무관       |         | 李 | 郭 | 熙 |                |        |
| "           |         | 陸 | 世 | 均 |                |        |
| "           |         | 李 | 炳 | 崇 |                |        |



### 부속고등학교

|      |       |       |  |
|------|-------|-------|--|
| 교 장  |       | 金 永 起 |  |
| 교 감  |       | 石 鎭 復 |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辛 宗 泰 |  |

### 부속중학교

|     |  |       |  |
|-----|--|-------|--|
| 교 장 |  | 安 秉 纘 |  |
| 교 감 |  | 金 斗 鉉 |  |

### 부속여자중학교

|     |  |       |  |
|-----|--|-------|--|
| 교 장 |  | 李 豐 基 |  |
| 교 감 |  | 曹 圭 三 |  |

### 부속국민학교

|     |  |       |  |
|-----|--|-------|--|
| 교 장 |  | 李 惠 雨 |  |
| 교 감 |  | 丁 熙 鎭 |  |

### 부속도서관

|      |       |       |       |
|------|-------|-------|-------|
| 관 장  | 교 수   | 李 萬 甲 | 사 회 학 |
| 서무과장 | 행정사무관 | 咸 錫 泰 |       |
| 사서과장 | 서 기 관 | 柳 東 烈 |       |
| 열람과장 | 서 기 관 | 白 麟   |       |
| 조사과장 | 부 교 수 | 朴 秉 濠 |       |

### 부속박물관

|     |     |       |       |
|-----|-----|-------|-------|
| 관 장 | 교 수 | 金 元 龍 | 고 고 학 |
|-----|-----|-------|-------|

### 보건진료소

|     |     |       |              |
|-----|-----|-------|--------------|
| 소 장 | 교 수 | 魯 炳 鎬 | 내 과 학 의 학 박사 |
|-----|-----|-------|--------------|

### 법학연구소

|     |     |       |            |
|-----|-----|-------|------------|
| 소 장 | 교 수 | 鄭 熙 喆 | 상 법 법 학 박사 |
|-----|-----|-------|------------|

### 생약연구소

|   |   |   |       |   |   |   |       |      |
|---|---|---|-------|---|---|---|-------|------|
| 소 | 장 | 교 | 수     | 禹 | 麟 | 根 | 식물화학  | 약학박사 |
|   |   |   | "     | 禹 | 源 | 植 | 생물화학  | 약학박사 |
|   |   |   | "     | 韓 | 龜 | 東 | 생물화학  | 약학박사 |
|   |   |   | "     | 洪 | 文 | 和 | 광물생약  | 약학박사 |
|   |   | 조 | 교 수   | 金 | 濟 | 勳 | 식물화학  | 약학박사 |
|   |   |   | "     | 池 | 亨 | 浚 | 생약학   |      |
|   |   |   | "     | 韓 | 秉 | 勳 | 생물화학  | 약학박사 |
|   |   | 전 | 임 강 사 | 權 | 寧 | 命 | 식물생리학 |      |
|   |   |   | "     | 申 | 國 | 鉉 | 분석학   |      |
|   |   |   | "     | 李 | 殷 | 芳 | 약물학   |      |

### 어학연구소

|   |   |   |     |   |   |   |       |       |
|---|---|---|-----|---|---|---|-------|-------|
| 소 | 장 | 부 | 교 수 | 金 | 鍾 | 云 | 영문학   |       |
|   |   | 교 | 수   | 黃 | 燦 | 鎬 | 영어영문학 |       |
|   |   | 조 | 교 수 | 高 | 永 | 根 | 국어국문학 |       |
|   |   |   | "   | 金 | 石 | 山 | 언어학   | 언어학박사 |
|   |   |   | "   | 金 | 韓 | 坤 | 영어학   |       |
|   |   |   | "   | 朴 | 南 | 植 | 언어학   |       |
|   |   |   | "   | 李 | 季 | 順 | 영어영문학 |       |
|   |   |   | "   | 張 | 奭 | 鎭 | 언어학   | 언어학박사 |
|   |   |   | "   | 趙 | 俊 | 學 | 영어학   |       |

### 학생지도연구소

|   |   |   |       |   |   |   |     |      |
|---|---|---|-------|---|---|---|-----|------|
| 소 | 장 | 교 | 수     | 李 | 義 | 喆 | 심리학 | 철학박사 |
|   |   | 조 | 교 수   | 李 | 寬 | 鎔 | 심리학 |      |
|   |   |   | "     | 李 | 創 | 基 | 정치학 |      |
|   |   | 전 | 임 강 사 | 徐 | 鳳 | 延 | 심리학 |      |
|   |   |   | "     | 李 | 將 | 鎬 | 심리학 |      |

전임강사 林承權 교 육 학

재외국민교육연구소

|             |       |       |
|-------------|-------|-------|
| 소 장 교 수     | 閔 錫 泓 | 서 양 사 |
| 부 소 장 "     | 崔 弘 基 | 사 회 학 |
| 예 비 전 임 강 사 | 李 鍾 徹 | 국 어   |
| 교육부 장       |       |       |
| 학 생 "       | 金 炳 國 | 국 어   |
| 지도부 장       |       |       |

의과대학부속병원

|         |         |       |        |
|---------|---------|-------|--------|
| 원 장 교 수 | 金 弘 基   | 이비인후과 | 의 학 박사 |
| 서무과장    | 金 英 洙   |       |        |
| 관리과장    | 金 趙 元 濟 |       |        |
|         | 尹 吉 相   |       |        |
| 약 국 장   | 康 炯 泰   |       |        |
| 간호과장    | 朴 貞 浩   |       |        |
| 서 무 과   | 金 碩 基   |       |        |
|         | 金 漢 培   |       |        |
|         | 金 白 南   |       |        |
|         | 崔 性 東   |       |        |
|         | 韓 相 和   |       |        |
| 간 호 과   | 金 義 錫   |       |        |
|         | 金 淑 子   |       |        |
| 약 국     | 李 哲 雨   |       |        |
|         | 趙 允 熙   |       |        |
| 검 사 과   | 石 鍾 聲   |       |        |

### **III. 학칙 및 설치령**

여 백

# 1. 서울대학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교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교에는 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가정대학, 교양과정부,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신문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을 둔다.

본교에는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법학연구소, 보건진료소,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기숙사, 학생지도연구소와 재외국민교육연구소를 두며 다음의 대학, 대학원과 부속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시설 또는 부속기관을 둔다.

공과대학 부속공장

농과대학 부속농장, 부속가축병원, 부속동물사육장, 부속연습림, 부속수목원

미술대학 부속실습장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국민학교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약학대학 부속약초원, 부속실습약국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신문대학원 신문연구소

부속도서관 분관

각대학, 교양과정부,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각대과의 학부 학과별과 학생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 1.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40 명, 화학공학과 50 명, 토목공학과 40 명, 건축공학과 40 명, 전기공학과 60 명, 기계공학과 50 명, 전자공학과 50 명, 조선공학과 40 명, 항공공학과 25 명, 자원공학과 40 명, 금속공학과 50 명, 원자력공학과 30 명, 공업교육과 120 명, 응용수학과 30 명, 응용물리학과 25 명, 응용화학과 30 명, 산업공학과 30 명, 재료공학과 30 명, 계 780 명

#### 2. 농과대학

농학과 20 명, 임학과 20 명, 농공학과 40 명, 축산학과 25 명, 농화학과 20 명, 농경제학과 20 명, 농생물학과 20 명, 잠사학과 20 명, 농가정학과 20 명, 수의학과 40 명, 농업교육과 60 명, 원예학과 20 명, 식품공학과 20 명, 임산가공학과 15 명, 조정학과 30 명, 계 390 명

#### 3. 문리대학과

##### 문학부

국어국문학과 20 명, 중어중문학과 10 명, 영어영문학과 20 명, 불어불문학과 20 명, 독어독문학과 20 명, 언어학과 10 명, 동양사학과 10 명, 서양사학과 10 명, 철학과 40 명, 사회학과 20 명, 정치학과 20 명, 외교학과 20 명, 심리학과 20 명, 지리학과 20 명, 고고인류학과 10 명, 사회사업학과 10 명, 국사학과 15 명, 소계 295 명

##### 이학부

수학과 20 명, 물리학과 30 명, 식물학과 15 명, 동물학과 15 명, 화학과 30 명, 전분기상학과 20 명, 해양학과 30 명, 지질학과 20 명, 미생물학과 20 명, 소계 200 명, 계 495 명

#### 4. 미술대학

회화과 25 명, 조소과 15 명, 응용미술과 30 명 계 70 명

#### 5. 법과대학

법학과 100 명, 행정학과 60 명, 계 160 명

**6. 사범대학**

체육학과 40 명, 과학교육과 120 명, 사회교육과 70 명, 교육과 20 명,  
수학교육과 40 명, 국어교육과 40 명, 외국어교육과 80 명 계 410 명

**7. 상과대학**

경제학과 55 명, 경영학과 100 명, 무역학과 40 명, 계 195 명

**8. 약학대학**

약학과 40 명, 제약학과 40 명, 계 80 명

**9. 음악대학**

성악과 30 명, 작곡과 15 명, 기악과 60 명, 국악과 25 명, 계 130 명

**10. 의과대학**

의학과(160 명), 간호학과 80 명, 의예과 160 명, 계 240 명(160 명)

**11. 치과대학**

치의학과(100 명), 치의예과 100 명, 계 100 명(100 명)

**12.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30 명, 식품영양학과 30 명, 의류학과 30 명, 계 90 명,

**합계 3,140 명(260 명)**

다만, 각대학 제1학년 및 제2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당해 예과에 한한다)의 학생정원은 교양과정부의 학생정원으로 본다.

음악대학의 성악과와 기악과에 전공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4 조**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학년은 다음과 같이 2 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 일

제 2 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 6 조** 매 학기 수업일수는 210 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1월 1일, 2일, 3일

3·1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수절 (추석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개교기념일 (10월 15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성탄일 (12월 25일)

하반기휴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기휴가 12월 24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임시휴업 및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 3 장 등 록 과 입 학

제 8 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9 조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는 제외한다)과 치과대학은 해당 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제10조** 입학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한다. 단 미달할 때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선발고사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하되 과목과 시일은 모집기에 이를 공고한다.

**제11조** 편입학은 제 2 학년 또는 제 3 학년(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은 제 2 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 실력을 고사한 후 허가할 수 있다.

전항 제 2 학년 지원자는 편입대학 제 1 학년 수료자, 제 3 학년 지원자는 편입대학 제 2 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편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①퇴학한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원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③재입학은 1 회에 한한다.

**제13조**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하기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2. 학업성적표. 단, 부득이하여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형 탈모 상반신 사진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고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입학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하기 각호에 의하여 사정한다.

1. 필답고사성적

2. 구술고사성적

3. 신체검사상황

4. 출신학교 최종 2년간의 학업성적

**제15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 통 및 호적초본 2 통에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첨부 제출하여 지정기일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6조**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생은 등록기일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학장(교양과정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학장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제 4 장 수업년한, 재학년한, 교과, 학점 및 졸업

**제18조** 각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당해 예과 2년, 의학과, 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

각대학의 제 1학년 및 제 2학년 학생의 교양과정교육(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은 교양과정부에서 관장한다.

재학년한은 6년 (예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편입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년한은 수업잔여년한의 1배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각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하고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다. 단 필요한 대학에서는 교직과목을 둔다.

**제20조**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그 학점은 1주 1시간씩 1학기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체육과 군사훈련에 관한 것을 포함함)는 1주 2시간 이상씩의 1학기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주간을 1학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학점(졸업논문은 제외) 이상으로 하되 일반교양과목은 48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84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나눌 때에는 주전공은 60학점 이상, 부전공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R.O.T.C 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4학점 이상으로

하되 2 학점은 해당학년의 교련과목과 대치할 수 있다.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과 치과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과하며 일반교양 과목은 당해 예과에서 과한다.

의예과, 치의예과 및 교양과정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일반교양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철학개론,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체육, 교련(법령에 의한 면제자를 제외한다), 제 1외국어, 제 2외국어를 필수로 하는 외에 하기 각 계열에서 1 과목 이상(전공과목에 속할 것은 제외)을 선정하여 도합 3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범대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다음의 계열별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문과학계 : 철학, 윤리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인문지리학, 인류학,

사회과학계 : 헌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통계학, 가정학

자연과학계 :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인류학, 가정학

일반교양과목은 제 1 학년, 제 2 학년에 걸쳐서 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2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체육과 교련(R.O.T.C 를 포함한다) 과목은 1 학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각대학 및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별지와 같다. 다만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원)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다른대학(원) 또는 학과의 교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24조**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전에 각대학 및 교양과정부에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수업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학년별 번호로 표시한다. 단 기수는 제 1 학기분, 우수는 제 2 학기분을 표시한다.

제 1 학년 101 번 내지 199 번

제 2 학년 201 번 내지 299 번

제 3 학년 301 번 내지 399 번

제 4 학년 401 번 내지 499 번

제25조 ① 학생은 매학기 최고 22 학점, 최저 16 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이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3 학점까지 또한 전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3.0(B<sub>o</sub>) 이상인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24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16 학점 미만을 취득코자하는 경우에는 학과장(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학점에 의한 학년별은 다음과 같다.

1 학년 38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2 학년 39 학점이상 76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3 학년 77 학점이상 114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4 학년 115 학점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제27조 전·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재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전·편입 대학에서 요구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제28조 규정된 수업년한의 재학과 과목 및 학점을 이수 취득한 자로서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별지서식(1)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학 위 별 졸업대학 학부 또는 학과

공 학 사 공과대학

농 학 사 농과대학

문 학 사 문리과대학 문학부(정치학과 및 외교학과 제외)

사범대학 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정지학사 문리과대학 문학부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 학 사 문리과대학 이학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가정학사 가정대학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체육학사 사범대학 체육학과  
 미술학사 미술대학  
 법 학 사 법과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사 법과대학 행정학과  
 상 학 사 상과대학 무역학과  
 경제학사 상과대학 경제학과  
 경영학사 상과대학 경영학과  
 수의학사 농과대학 수의학과  
 약 학 사 약학대학  
 음악학사 음악대학  
 의 학 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사 의과대학 간호학과  
 치의학사 치과대학

## 제 5 장 시험과 성적

제29조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한다. 단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그 학기에 출석상황이 불량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30조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 <u>성    적</u>  | <u>평    점</u> |
|----------------|---------------|
| A <sup>+</sup> | 4.3           |
| A <sup>o</sup> | 4.0           |
| A <sub>-</sub> | 3.7           |
| .....          |               |
| B <sup>+</sup> | 3.3           |
| B <sup>o</sup> | 3.0           |
| B <sub>-</sub> | 2.7           |
| .....          |               |

|                |     |
|----------------|-----|
| C <sup>+</sup> | 2.3 |
| C <sup>o</sup> | 2.0 |
| C <sub>-</sub> | 1.7 |
| .....          |     |
| D <sup>+</sup> | 1.3 |
| D <sup>o</sup> | 1.0 |
| D <sub>-</sub> | 0.7 |
| .....          |     |
| F              | 0   |
| .....          |     |
| S              | 없음  |
| U              | 없음  |
| I              | 없음  |
| .....          |     |

②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합격여부만을 구분하여 S(급) 또는 U(낙)로 표기한다.

③성적사정이 미완된 교과목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한다.

**제31조** ①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 및 전공과목(부전공이 있을 경우에는 부전공을 포함)의 성적 평점 평균이 각각 2.0(C<sup>o</sup>) 이상이어야 한다.

②예과 및 교양과정부 수료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C<sup>o</sup>)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할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④일단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5조의 최저학점 범위내에서 개강후 2개월 이내에 학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32조**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 할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전에 담당교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자의 성적은 잠정적으로 I로 하며, 그 뒤 추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 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②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 제 6 장 휴학, 복학, 제적, 복적 및 퇴학

제33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은 통산하여 4학기, 계속적으로는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에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등록기간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단, 본항에 의한 제적은 그 정상에 따라 다음 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제34조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해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휴학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그 학기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35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본교 학생으로서 이중 학적을 가질 때에는 제적된다.

## 제 7 장 교내 전학과 전과

제37조 본교 각 대학간의 전학 및 동일대학내 전과는 제 2학년초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전항의 전학 또는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 교내전학 또는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전학년에 이수한 전교



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9조 전학 또는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학년초 등록기간 전에 그 원서와 다음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수(既修)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표.
2. 전출입 쌍방 학장의 승인서. 단, 전과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서

제40조 전입학 또는 전과한 학생은 전입대학 또는 전입학과의 소정 교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수학점은 전입대학장의 인정을 요한다.

## 제 8 장 과외활동

제41조 ①학생은 건전한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과외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육수행과 학내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42조 ①전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학생회의 집행부와 대의부의 조직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①학생회는 다음 각호의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1. 학술단체
2. 종교단체
3. 체육단체
4. 기타 순수한 예능, 봉사단체

②전항 각호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회칙 및 지도교수의 취임승락서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를 총장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총장 또는 학장은 학생회 및 산하단체의 활동이 그 목적에 어그러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한다.

제45조 학생은 정치단체 또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6조 학생은 학보, 학내신문 및 기타 학술지 등 정기 또는 부정기의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학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 본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49조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특히 미행이 있어 표창할 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 학생으로서 매 학년 성적의 평점 평균이 3.4 이상인 자에게는 다음 학년 초에 학장이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고한다. 다만 I의 성적이 포함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1조 ①졸업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

| 구 | 분                      | 평 점    |
|---|------------------------|--------|
| 최 | 우 등 급(Summa Cum Laude) | 3.9 이상 |
| 준 | 최우등급(Magna Cum Laude)  | 3.6 이상 |
| 우 | 등 급(Cum Laude)         | 3.4 이상 |

②재학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2조 ①총장 또는 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위반된 경우에는 제80조에 규정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처분으로 한다.

④ 제명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하되 총장 명의로써 한다.

1. 제54조에 의한 제명에 해당하는 자.
2.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53조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C<sub>o</sub>)에 미달되거나 3 과목 이상 또는 6 학점이상이 F 인자에게 과하되 다음 학기 개강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지도교수에게 통고하며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성적 I 를 받은자에 대한 학사경고는 성적의 확정 결과에 따라 학기 도중에도 과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학생에게는 지도교수 또는 학장이 수강, 학점수, 결석회수 및 과외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④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 되고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 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

제54조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명처분한다.

1. 재학기간 중 이미 2회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다시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
2. 한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1.3 이하인 자

## 제10장 납입금

제55조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학력과 인물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 조달이 곤란하여 납입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는 2 할에 해당하는 학생수의 한도 내에서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사범대학, 공과대학공업교육과, 농과대학농업교육과(농촌지도교육전공 제외, 이하같다) 및 의과대학간호학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9조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도로 이를 따로 징수한다.

제60조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장 장 학

제61조 본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대학교 장학금 급여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할 수 있다.

## 제12장 학비보조와 졸업후의 복무의무

제62조 사범대학, 공과대학공업교육과, 농과대학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간호학과의 학생에게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 교육법 제159조에 의한 학비보조금을 급여한다.

제63조 사범대학, 공과대학공업교육과, 농과대학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간호학과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학비보조금의 급여를 중지한다.

제64조 사범대학, 공과대학공업교육과, 농과대학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간호학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이미 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5조 사범대학, 공과대학공업교육과, 농과대학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간호학과의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학교교육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단,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여한 학비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 제13장 위탁생, 청강생 및 외국학생

제66조 정부 각부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라도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위탁생에게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소정의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위탁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7조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 부의 직을 사하였을 때에는 자연이 제적된다.

제68조 수강할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대학교 단과대학 또는 교양과정부의 어떤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을 희망할 때에는 학장은 재학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는 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청강생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청강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9조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외라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0조 위탁생 또는 외국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제14장 공개강좌 및 계절수업

제71조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72조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73조 공개강좌 및 계절수업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15장 직 제

제74조 본 대학교의 직제는 교육법시행령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한다.

제75조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둔다.

제76조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복무, 세비, 기타에 관한 사항의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16장 교 수 회

제77조 각대학 및 교양과정부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78조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직원으로써 조직하되 의장은 학장이 된다.

총장, 부총장은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9조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되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

## 제17장 학 장 회

제81조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

제82조 학장회는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각대학원장, 학장, 교양과정 부장 및 처장과 사무국장으로써 조직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제83조 학장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제84조 학장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부 또는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장학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8장 대학원 및 부속학교

제85조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신문대학원, 행정대학원, 사범대학의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국민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본 학칙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 911.56.6.12)
- ② 본 학칙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1956년 3월이후의 졸업(의예과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956년 졸업 175 학점(의예과 85 학점) 이상  
1958년 졸업 170 학점 이상  
1958년 졸업 165 학점 이상
- ④ 본 학칙은 195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문고 2596.56.97)
- ⑤ 본 학칙 시행시의 현재 농과대학 농학과 재학생중 잠사학 전공자는 잠사학과, 사범대학 사회과 재학생중 일반사회 전공자는 일반사회과, 지리학 전공자는 지리과, 역사학 전공자는 역사과의 각 해당학년에 편입한다.
- ⑥ 본학칙은 195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 2380.57.9.13)
- ⑦ 본학칙은 195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문고 1623.58.5.8)
- ⑧ 본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행정학사의 학위는 1960

- 년 3월 이후의 졸업생에게 수여한다(문고 555.59.3.3)
- ⑨ 본학칙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 729.60.2.23)
- ⑩ 본학칙은 196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문고 1243.60.4.16)
- ⑪ 본학칙은 196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 2005.60.6.17)
- ⑫ 본학칙은 196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 2302.61.6.15)
- ⑬ 본학칙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관 1835.61.12.13)
- ⑭ 본학칙은 196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관 1182.62.2.12)
- ⑮ 본학칙은 196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문관 2132.62.2.10)
- ⑯ 1961년 12월 9일 학교정비기준령 및 1962년 3월 1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대학의 학부 및 학과는 동령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문교관 3591.62.4.24)
- ⑰ 본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학관 3591.62.4.24)
- ⑱ 본학칙은 196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문관행 1041.3.63.1.4)
- ⑲ 본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관행 1041.3.63.5.18)
- ⑳ 본학칙은 196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1600.63.12.18)
- ㉑ 본학칙은 196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3982.63.12.27)
- ㉒ 본학칙은 196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232, 64.1.24)
- ㉓ 본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846.64.3.1.)
- ㉔ 본학칙은 196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2.3~2085. 64.11.30)
- ㉕ 1968년 2월까지의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생에 대하여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되 학칙 제21조 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학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문고대 1041.3~2085.64.11.30)
- ㉖ 본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1584.66.12.23)



- ⑳ 본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256. 67.2.3)
- ㉑ 본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1.3~2114.67.12.11)
- ㉒ 공과대학 조선항공공학과와 조선공학 전공 및 항공공학 전공은 구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의 졸업년도까지 구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문고대 1041.3~2114.67.12.11)
- ㉓ 이 학칙은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양과정부에서 판장한 교양과정교육은 교양과정부의 사정에 따라 당분간 이를 각 대학에서 행할수 있다(대관 1041.3~1412. 68.12.30)
- 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3조 제 1항의 학과별 학생입학 정원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관 1041.3~1412.68.12.30)
- ㉕ 이 학칙 시행당시의 사범대학 가정과 및 상과대학 상학과는 동학과 재학생이 졸업하는 학년도 까지 구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한다(대관 1041.3~1412. 68.12.30)
- ㉖ 이 학칙은 196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관 1041~361.69.3.25)
- ㉗ 이 학칙 시행당시의 사범대학 가정과 및 상과대학 상학과 재학생에 대한 졸업에 의한 학위는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수여한다.(대관 1041~361.69.3.25)
- ㉘ 이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관 1041~495.69.4.19)
- ㉙ 본 개정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69.12.27. 대관 1041.3~1557)
- ㉚ 공과대학의 광산공학과 재학생은 70년 3월 1일 자로 자원공학과 해당학년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69.12.27 대관 1041.3~1557)
- ㉛ 본 개정학칙은 197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㉜ 이 개정학칙은 197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㉝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㉞ 197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공과대학 생산기계공학과 재학생은 산업공학과 재학생으로 보며 생산기계 공학과 재학생은 기계공학과에 한하

여 전과할 수 있다.

④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군사훈련과목(R.O.T.C.)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④③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학칙의 해당학년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④④ 이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⑤ 이 학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⑥ 이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④⑦ 이 학칙 개정 이전의 A·B·C·D는 개정학칙에 의한 A<sup>o</sup>·B<sup>o</sup>·C<sup>o</sup>·D<sup>o</sup>으로 본다. E성적은 개정학칙에 의한 I로 보되 1971학년도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⑧ 제50조의 포상 및 제53조, 제54조에 의한 조치는 1972학년도부터의 성적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제51조에 의한 포상은 1972학년도 졸업자부터 실시한다.

④⑨ 이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⑩ 본 개정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1)

제 호

졸업증서

본 적

성 명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대학       학과(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를 인정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인

## 2. 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칭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칭한다)을 둔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정한다.

#### 1. 석 사 과 정 1,408

|        |     |        |     |
|--------|-----|--------|-----|
| 국어국문학과 | 30명 | 중어중문학과 | 6명  |
| 영어영문학과 | 24명 | 독어독문학과 | 18명 |
| 불어불문학과 | 18명 | 언어학과   | 6명  |
| 사학과    | 30명 | 사회학과   | 12명 |
| 사회사업학과 | 8명  | 정치학과   | 10명 |
| 외교학과   | 10명 | 철학과    | 20명 |
| 미학과    | 4명  | 종교학과   | 4명  |
| 심리학과   | 6명  | 고고인류학과 | 8명  |
| 지리학과   | 12명 | 해양학과   | 20명 |
| 가정학과   | 40명 | 교육학과   | 8명  |
| 체육학과   | 20명 | 행정학과   | 30명 |
| 법학과    | 44명 | 경제학과   | 26명 |
| 경영학과   | 20명 | 무역학과   | 22명 |
| 회화과    | 12명 | 응용미술학과 | 12명 |

|           |      |           |      |
|-----------|------|-----------|------|
| 조 소 과     | 8명   | 성 악 과     | 14명  |
| 기 악 과     | 26명  | 작 곡 과     | 8명   |
| 국 악 과     | 12명  | 수 학 과     | 30명  |
| 물 리 학 과   | 30명  | 화 학 과     | 30명  |
| 식 물 학 과   | 20명  | 동 물 학 과   | 18명  |
| 지 질 학 과   | 24명  | 천문기상학과    | 12명  |
| 자 원 공 학 과 | 20명  | 전 축 공 학 과 | 20명  |
| 전 기 공 학 과 | 32명  | 금 속 공 학 과 | 22명  |
| 기 계 공 학 과 | 26명  | 전 자 공 학 과 | 40명  |
| 토 목 공 학 과 | 16명  | 조선항공공학과   | 24명  |
| 화 학 공 학 과 | 28명  | 섬 유 공 학 과 | 20명  |
| 산 업 공 학 과 | 20명  | 재 료 공 학 과 | 10명  |
| 농 학 과     | 16명  | 핵 공 학 과   | 24명  |
| 농 생 물 학 과 | 10명  | 임 학 과     | 16명  |
| 농 화 학 과   | 14명  | 축 산 학 과   | 12명  |
| 농 공 학 과   | 14명  | 농 경 제 학 과 | 10명  |
| 수 의 학 과   | 20명  | 잠 사 학 과   | 10명  |
| 간 호 학 과   | 40명  | 의 학 과     | 122명 |
| 치 의 학 과   | 70명  | 약 학 과     | 40명  |
| 2. 박사 과정  | 534명 |           |      |
| 국어국문학과    | 15명  | 중어중문학과    | 3명   |
| 영어영문학과    | 12명  | 독어독문학과    | 9명   |
| 불어불문학과    | 9명   | 사 학 과     | 12명  |
| 사회학과      | 6명   | 정 치 학 과   | 6명   |
| 외교학과      | 6명   | 철 학 과     | 9명   |
| 종교학과      | 3명   | 심 리 학 과   | 9명   |
| 언어학과      | 3명   | 교 육 학 과   | 6명   |
| 법 학 과     | 18명  | 행 정 학 과   | 12명  |

|       |     |         |     |
|-------|-----|---------|-----|
| 경제학과  | 12명 | 경영학과    | 12명 |
| 수학과   | 12명 | 화학학과    | 15명 |
| 물리학과  | 15명 | 동물학과    | 9명  |
| 식물학과  | 9명  | 지질학과    | 9명  |
| 자원공학과 | 6명  | 건축공학과   | 9명  |
| 금속공학과 | 9명  | 전기공학과   | 12명 |
| 전자공학과 | 15명 | 기계공학과   | 12명 |
| 토목공학과 | 9명  | 화학공학과   | 9명  |
| 핵공학과  | 9명  | 조선항공공학과 | 12명 |
| 섬유공학과 | 9명  | 수의학과    | 9명  |
| 의학과   | 66명 | 치의학과    | 39명 |
| 약학과   | 21명 | 농생물학과   | 6명  |
| 농학과   | 9명  | 농경제학과   | 6명  |
| 농공학과  | 6명  | 농화학과    | 9명  |
| 축산학과  | 6명  | 임학과     | 9명  |
| 잠사학과  | 6명  |         |     |

## 제 2 장 입학 및 진학

제 4 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 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 또는 진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1. 대학졸업자(초급대학제외)로서 그 출신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사범대학졸업자(2년제 제외)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은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박사과정

1.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 6 조 입(진)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선발고사를 행한다.

전항의 선발고사는 다음에 의한다.

1. 전공과목 및 2종의 외국어에 대한 필답고사

2. 구술고사

3. 신체검사

전항 제1호의 전공과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전공과목과 관련된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 7 조 석사과정 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취학허가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8 조 박사과정 진학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학지원서

2. 지도교수의 추천서

3. 학위수여증명서

4. 석사과정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제 9 조 제적된 자로서 2 학기를 경과치 아니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한 때에는 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 3 장 수업년한, 재학년한, 수업일수, 교과, 학점 및 수료

제10조 수업년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재학년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수업일수는 매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별지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단, 석사과정에 있어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주로 한다.

제14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저 학과학점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4 학점,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36 학점으로 한다.
2. 학과학점 이외에 수업년한 중 연구학점으로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매학기 2 학점씩,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매학기 4 학점씩 부과한다.

제15조 학점(연구학점 포함)은 각 과정 매학기 12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16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 제 4 장 성 적

제17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점 |
|------|------------|----|
| A(우) | 90점내지 100점 | 3  |



|      |       |     |   |
|------|-------|-----|---|
| B(양) | 80점내지 | 89점 | 2 |
| C(가) | 70점내지 | 79점 | 1 |
| F(낙) | 69점이하 |     | 0 |

제18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 5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9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 학기,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4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치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6 장 전공의 변경

제21조 전공의 변경은 석사과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단 기수학점은 신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22조 전공변경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기수학점 및 그 성적일람표
3. 신구전공의 각지도교수의 승인서

## 제 7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학생

제23조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들 수 있으며 연구

생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전조의 연구생은 대학졸업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공과목 및 2종의 외국어 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5조**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6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 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의외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 30일 내로 한다.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8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 관한 사항

###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1조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부 칙

제32조 석사, 박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학칙은 196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전 박사과정(4년제)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1960년도 이전에 입학한자는 7회이상 등록을, 1961년도 및 1962년도에 입학한 자는 6회이상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과정 수료자로 인정한다.

제39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사법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학위를 가지고 1970학년도에 사법대학원에 입학하고 1년을 이수한 자는 본 대학원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은 1972학년도 입학시까지로 하되 군복무 의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대학원연구생 연구실적증명서

본 적

현주소

성 명

서기

년

월

일생

우자는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인

### 3. 경영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경영학 전반에 걸친 심오한 연구와 아울러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함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경영학과 석사학위 과정

정원 240명 (입학정원 120명)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제 1부(주간)와 제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 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은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4년제) 졸업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 졸업자.
3.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기타 문교부장관이 위와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3.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4. 이력서
5.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6. 건강진단서

제9조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시는 기수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교과 및 학점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36 학점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매 학기 12 학점을 초과 취득하지 못한다.

제15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4장 성 적

제16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우) | 90~100 | 3   |
| B(양) | 80~89  | 2   |
| C(가) | 70~79  | 1   |
| D(낙) | 69     | 0   |

제17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8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19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20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특수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발표한다.

제22조 본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제23조 연구생 과정은 1년으로 하되 수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서식 (1)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원 연구생 과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 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 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전형하여 정원 외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 한다.

제26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30 일 이내로 한다.

## 제 7 장 교 수 회

제27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성한다.

제28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 학사에 관한 사항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9조** 대학원위원회는 경영대학원 교수 및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 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부 칙

**제32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이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대학원연구생 연구실적증명서

본 적

현주소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별지서식 (2)

제 호

이 수 증

본 적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원 연구  
 생 과정을 이수하였기 이를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4. 교육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육계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이라 칭하며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전공 및 학생정원은 아래와 같다.

석사학위 과정

학생정원 200 명 (주·야간)

전 공

- |            |            |             |
|------------|------------|-------------|
| 1. 교육행정전공  | 2. 교육심리전공  | 3. 초등교육전공   |
| 4. 교육과정전공  | 5. 국어교육전공  | 6. 영어교육전공   |
| 7. 독어교육전공  | 8. 불어교육전공  | 9. 일반사회교육전공 |
| 10. 역사교육전공 | 11. 지리교육전공 | 12. 물리교육전공  |
| 13. 화학교육전공 | 14. 생물교육전공 | 15. 지학교육전공  |
| 16. 수학교육전공 | 17. 가정교육전공 | 18. 체육교육전공  |
| 19. 공업교육전공 | 20. 농업교육전공 | 21. 상업교육전공  |
| 22. 미술교육전공 | 23. 음악교육전공 |             |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1부 (주간)와 2부(야간)으로 나누어 하며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사범대학 포함)을 졸업한 자.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문교부장관이 대학졸업자와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현직에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 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9 조**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되었던 자가 제적된지 1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 실무수습 및 학점**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 본 대학원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에 의한다.

**제13조**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 학점(연구학점 8 학점 포함)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을 매학기 12 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5조** 소정학점을 취득한 자는 10 주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6조 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정한다.

## 제 4 장 성 적

제17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우) | 90~100 | 3   |
| B(양) | 80~89  | 2   |
| C(가) | 70~79  | 1   |
| D(낙) | 69이하   | 0   |

제18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 제적

제19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치 못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1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등록 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인학생

제21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연구생은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전

형에 합격한 자와 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현직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 전조의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 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조 및 제 8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할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정원의외로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학기초 30 일 이내로 한다.

## 제 7 장 교 수 회

제26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7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 학사에 관한 사항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8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교육대학원 교수, 부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 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 9 장 학위수여

**제32조**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실무실습을 마친 자로서 제출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따로히 정한다.

## 부 칙

**제33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학칙은 196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본 학칙은 6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6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40조** 별지서식 (1)을 폐지한다.

**제41조** 이 개정학칙은 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보건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보건학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보건사업에 종사할 인재의 양성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보건학 석사학위과정

정원 140 명

- |             |            |
|-------------|------------|
| 1. 보건행정학전공  | 2. 환경위생학전공 |
| 3. 역학(疫學)전공 | 4. 보건통계학전공 |
| 5. 모자보건학전공  | 6. 보건영양학전공 |
| 7. 보건교육학전공  | 8. 보건간호학전공 |

제 3 조의 2 본대학원의 수업은 제 1 부(주간), 제 2 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4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 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매학기 수업일수는 180 일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는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 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8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1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및 학점

제 9 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그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 학점(수료 논문 제외)으로 하되 필수과목 26 학점 이상, 선택과목 1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학점은 매학기 12 학점을 초과취득치 못한다.

### 제 4 장 성 적

제14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성 적    | 평 점 |
|------|--------|-----|
| A(우) | 90~100 | 3   |



|      |       |   |
|------|-------|---|
| B(양) | 80~89 | 2 |
| C(가) | 70~79 | 1 |
| D(낙) | 69이하  | 0 |

제15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 9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6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특수강좌 및 연구생

제18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본대학원은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연구생은 대학졸업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 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0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 과목에 대하여 별지 서식(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대학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의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7 장 교 수 회

제21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2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제23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써 개최한다.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4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보건대학원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교수중에서 본 대학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부 칙

제28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

한다.

제30조 본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학칙은 196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신문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 및 그 인접과학의 이론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석사학위 과정

신문학과 120명(주·야)

1부(주간) 50명

2부(야간) 70명 총 정원 120명

###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4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매 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은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문교부 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 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 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8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할 시에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학과 · 실무수습 및 학점

제 9 조 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 본 대학원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8학점으로 한다.

제13조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4조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 타대학(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제 4 장 성 적

제15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우) | 90—100 | 3   |
| B(양) | 80—89  | 2   |
| C(가) | 70—79  | 1   |
| D(낙) | 69이하   | 0   |

전항에 의하여 A 와 B의 평점을 취득하는 학생의 수는 당해과목 응시자 수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7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학생

**제19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연구생의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제 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과목만을 수강할 수 있다.

**제21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 서식(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조 및 제 8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전형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 입학허가는 매학기초 30 일 이내로 한다.

## 제 7 장 교 수 회

**제24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써 구성한다.

**제25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6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신문대학원 교수 및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 명 미만의 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7조**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



석의원 3 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30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본 대학원에 신문연구소를 부설한다.

제32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3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1)

| 대학원 연구생 연구실적 증명서 |              |   |   |            |
|------------------|--------------|---|---|------------|
| 본 적              |              |   |   |            |
| 현 주소             |              |   |   |            |
|                  | 성 명          |   |   |            |
|                  | 서기           | 년 | 월 | 일생         |
| 우 자는 본 대학원에서     | 서기           | 년 | 월 | 일부터 서기     |
| 년 월 일 까지         |              |   |   | 을 이수하였음을 증 |
| 명함.              |              |   |   |            |
|                  | 서기           | 년 | 월 | 일          |
|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장 |   |   | 인          |

## 7. 행정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행정학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고급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200명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제 1부(주간), 제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 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 장관의 진학허가를 얻은 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문교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9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할 시에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 3 장 수업연한 · 재학연한 · 교과 · 실무수습 및 학점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5조 소정학점을 취득한 자는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성 적

제16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우) | 90~100 | 3   |
| B(양) | 80~89  | 2   |
| C(가) | 70~79  | 1   |
| D(낙) | 69이하   | 0   |

제17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8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특수강좌 · 연구생 및 외국학생

**제20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본 대학원에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연구생은 대학졸업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 교수의 추천이 있고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2조** 전조 연구생에게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별지 서식(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 조 및 제 8 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할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은 전형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4조**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학기초 30 일 이내로 한다.

## 제 7 장 교 수 회

제25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구성한다.

제26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 사항.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7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행정대학원 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미만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부 칙

제31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3조 본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 학칙은 196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학칙은 196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학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학칙은 196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학칙은 196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 본 학칙은 196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6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41조 이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이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  |    |   |   |   |
|-----------------------------|--|----|---|---|---|
| 증 명 서                       |  |    |   |   |   |
| 본 적                         |  |    |   |   |   |
| 성 명                         |  |    |   |   |   |
|                             |  | 서기 | 년 | 월 | 일 |
| 우 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  |    |   | 년 | 월 |
| 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  |    |   |   |   |
|                             |  | 서기 | 년 | 월 | 일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    |   |   |   |

## 8. 환경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거하여 도시, 지역, 공간계획과 생활환경의 합리적 구성이론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 대학원에 설치할 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과정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80명

조경학과    40명

계 120명

제 4 조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제 1 부(주간), 제 2 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 2 장 입학 및 수업일수

제 5 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를 학년초 30 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매학년 수업일수는 180 일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자. 단,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은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문교부장관이 위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본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장의 추천서.
3.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승인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제 9 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 할 시에는 기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제 3 장 수업년한, 재학년한, 교과, 실무수습 및 학점

제10조 본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본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1)에 의하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과 교수가 심의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36 학점으로 한다.

제14조 학점은 매학기 12 학점을 초과 취득치 못한다.

제15조 소정학점을 취득한 자는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성 적

제16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 (우) | 90—100 | 3   |
| B (량) | 80— 89 | 2   |
| C (가) | 70— 79 | 1   |
| D (낙) | 69이하   | 0   |



제17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 제 5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8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특수강좌 및 외국학생

제20조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 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7 조 및 제 8 조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전형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학기 초 30 일 이내로 한다.

## 제 7 장 교 수 회

제23조 본 대학원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써 구성된다.

제24조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사항.

2.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수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학사에 관한사항.

##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25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환경대학원 교수중에서 임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2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의 설편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또는 대학원 위원회에 관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 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부 칙

**제29조**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1조**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학칙 시행일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의 재학생은 본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 9.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대학은 경제적 및 기타의 사정등으로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자에게 방송과 통신등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위치) 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 칭하며 서울대학교내에 둔다.

제 3 조 (과정) 본대학은 초급대학과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 4 조 (학과 및 학생정원) 본 대학에 설치할 학과와 학생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                |                 |
|----------------|-----------------|
| 가정학과 2,000명 이내 | 경영학과 3,000명 이내  |
| 농학과 2,000명 이내  | 초등교육과 2,000명 이내 |
| 행정학과 3,000명 이내 | 계 12,000명 이내    |

### 제 2 장 학년 학기 및 출석수업일수

제 5 조 (학년과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다음과 같이 매 학년 2 학기로 한다.

제 1 학기 : 3월 1일~8월 31일

제 2 학기 : 9월 1일~익년 2월 말일

제 6 조 (출석수업) ①본 대학은 학기 및 동기에 본 대학 및 협력학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출석수업을 실시한다.

②매 학년 출석수업기간은 4주로 하며 160시간 이내로 한다.

③학생은 반드시 본대학에서 지정하는 협력학교에서 출석수업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입학과 등록

제 7 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 8 조 (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제 9 조 (입학전형) 본 대학의 입학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기준은 별도로 학장이 정한다.

제10조 (입학지원 구비서류) ①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2.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최종 3년간의 성적증명서. 다만 부득이하여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신하여 교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
4. 주민등록 초본
5.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②이미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납입금을 불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③재학생은 매 학기초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입학)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제27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당한 자는 제외)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 4 장 수업년한 · 재학년한 · 교과 · 학점 및 졸업

제13조 (수업년한) 본 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되 재학년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교과) ①본 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②일반교양과목과 각 학과의 교과과정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 (학점)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방송교육, 통신교재교육 및 출석수업을 종합하여 1학기 1주 1시간에 해당하는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6조 (이수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00학점 이상으로 하되 일반교양과목은 24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매 학기의 취득학점은 25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학점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교과목) 각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학년별 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기수는 제1학기분, 우수는 제2학기분을 표시한다.

제 1 학년 101번 내지 199번

제 2 학년 201번 내지 299번

제18조 (학년별 학점) 학점에 의한 학년 학기별은 다음과 같다.

제 1 학년 1 학기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제 1 학년 2 학기 45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제 2 학년 1 학기 7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제19조 (졸업) 규정된 수업년한을 재학하여 소정의 과목 및 학점을 이수 취득한 자로서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 (2)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제 5 장 시험과 성적

제20조 (성적평가) ①학생의 학업성적은 과제제출 필답고사 및 출석수업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과제는 교과목별로 지정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필답고사는 원칙적으로 매학기의 출석수업 중에 실시한다.

④매 학기의 교과목별 출석수업에서 4분의 1 이상 결강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1조 (등급과 평점)**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다음의 등급과 평점으로 분류하여 사정한다.

| 등 급 | 실 점    | 평 점 |
|-----|--------|-----|
| A   | 90~100 | 4   |
| B   | 80~89  | 3   |
| C   | 70~79  | 2   |
| D   | 60~69  | 1   |
| F   | 59점이하  | 0   |

**제22조 (성적사정)** ①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과목의 성적 평균 및 전공과목의 성적 평균이 각각 2.0(C) 이상이 되고 과목낙제(F)가 없어야 한다.

②이미 이수한 교과목(C 이하인 과목에 한함)을 재수할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로 한다.

## 제 6 장 휴학, 복학, 제적, 복적

**제23조 (휴학)** ①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1학기 이상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은 통산하여 4학기, 계속적으로는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될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등록기간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등록기간 중에 휴학 허가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제24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 7 장 과외활동

제25조 (과외활동) 본대학의 학생은 출석수업기간 중에 한하여 학장 또는 협력학교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26조 (포상)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력이 특히 우수하여 전체 성적의 평균 평균이 3.5 이상인 자에게는 졸업시에 학장이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고하며 표창한다. 다만 F의 성적이 포함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 (징계) ①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 기간중에는 징계권의 일부를 각 협력학교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처분으로 한다.

③제명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하되 학장의 명의로 행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출석수업기간 중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제 9 장 납입금

제28조 (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업료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납입금은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업료 면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 (실험실습비 등) 실험과 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

제31조 (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10 장 장 학

제32조 (장학) 본 대학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본 대학 장학금 급여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장 교 수 회

제33조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둔다.

제34조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졸업인정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 및 방송교육에 관한 사항
3. 출석수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고사에 관한 사항
5. 특수강좌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장 운영위원회

제35조 (목적)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통신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서울대학교의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및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제3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계법규 개폐에 관한 사항
2. 대학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8조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0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41조 (수당과 여비)** 서울대학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장 전문위원회

**제42조 (전문위원회)** 본 대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재편찬 및 방송교육 등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장 기 타

**제43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학칙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제45조 (교재배부) 교재는 실비로 배부하되 국민교양을 위하여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배부할 수 있다.

### 부 칙

이 학칙은 197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0. 서울대학교 설치령

|    |     |     |     |      |          |
|----|-----|-----|-----|------|----------|
| 제정 | 70. | 4.  | 8.  | 대통령령 | 제4870호   |
| 개정 | 70. | 6.  | 23. | 〃    | 제5116호   |
|    | 〃   | 70. | 12. | 30.  | 〃 제5429호 |
|    | 〃   | 71. | 6.  | 10.  | 〃 제5666호 |
|    | 〃   | 72. | 7.  | 24.  | 〃 제6298호 |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교육법에 의한 국립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의 관할 아래 서울대학교를 둔다.

제 3 조 (운영의 원칙)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치 및 대학 등) ①서울대학교의 위치, 단과대학, 학부,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②학생의 일반교양과정의 교육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 5 조 (대학원) ①교육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더욱 깊이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전항의 대학원외에 특수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대학원을 둔다.

1. 경영대학원
2. 교육대학원
3. 보건대학원
4. 신문대학원
5. 행정대학원
6. 환경대학원

③대학원의 수업연한, 학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부속시설) 서울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법학연구소, 보건진료소,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기숙사, 학생지도연구소, 재외국민교육연구소.
2. 신문대학원의 신문연구소
3. 공과대학의 부속공장
4. 농과대학의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동물사육장, 부속가축병원, 부속수목원
5. 미술대학의 부속실습장
6. 상과대학의 한국경제연구소
7. 약학대학의 부속약초원, 부속실습약국
8.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9. 치과대학의 부속병원

제 7 조(부속학교) 사범대학에 다음의 부속학교를 둔다.

1. 부속국민학교
2. 부속중학교
3. 부속여자중학교
4. 부속고등학교

제 8 조 (사범대학원의 학생에 관한 것) 삭제

제 9 조 (간호학과의 학생) ①의과대학 간호학과 제 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전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 식비와, 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와 기숙사에서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③교육법시행령 제 148조 내지 제 150조 제 1항 및 제 2항과 제 152조의 규정은 제 2항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50조 제 1항 및 제 2항 중 “학교교육”은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 152조중 “교사자격증”은 “간호원 면허장” 또는 “조산원 면허장”으로 한다.

**제10조 (학장등)** ①단과대학, 대학원, 교양과정부, 학부, 부속시설 및 부속학교에 각각 장을 둔다.

②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 학부장과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 대학원장, 교양과정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학부장은 그 학부 내의 교무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⑥부속학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서울대학교 총장 밑에 부총장, 건설본부를 두되, 건설본부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총장 밑에 사무국, 교무처와 학생처를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각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처장을 둘수있되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건설본부에는 관리국, 건설국과 설계통제실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실장은 별정직공무원(2급 을류상당)으로 보한다.

**제12조 (기획위원회)** ①서울대학교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처장·국장과 각 대학원장·학장·교수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④서울대학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관리·법령·예규·비상계획·기타 다른 처·국·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경리과는 세입·세출·결산·연금·물품관리·외자관리·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사무국에 기본운영계획·심사분석·예산관리·자체감사·관리개선 및 통계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장밑에 예산담당관 1인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 (교무처)** 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적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대학·학부·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폐지·수업·시험·학점·성적·학생정원·학술 연구와 처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학적과는 입학·졸업·학위·휴학·복학·퇴학·전학·전과·등록·학적부와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장학과와 지도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장학과는 학생의 통계·보전후생·장학금·학생증·졸업생의 취직 알선과 처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지도과는 학생의 동원·집회·행사·상벌·훈련·병사·간행물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기획행정과와 관리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행정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발전, 시설확충특별회계의 예산 운영

• 물품구입 • 공사계약체결 •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본부내의 다른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관리과는 재산의 처분·취득·이용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건설국)** ①건설국에 건축과, 토목과와 설비과를 두되, 건축과장은 건축기정, 토목과장은 토목기정, 설비과장은 기계기정 또는 전기기정으로 보한다.

②건축과는 종합계획에 관련된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독 건축자재의 관리와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토목과는 종합계획에 관련된 토목공사의 설계 및 감독과 토목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설비과는 종합계획에 관련된 각종 부대 설비공사의 설계 및 감독과 설비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 2 (설계통제실)** 설계통제실은 종합 건설계획의 발전조정과 기본 설계 및 설계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대학의 조직)** ①단과대학·대학원과 교양과정부에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무과장과 학생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과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부속시설 및 부속학교의 과(부속시설과 부속학교의 경우에는 해당부서)를 각각 통합할 수 있으며,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과를 통합하는 경우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무과장과 학생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서무과는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관리·회계와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교무과는 입학·졸업·학적·강좌 또는 교과과정·학술연구·수업·학점·학위·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생과는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금·동원·집회·훈련·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사무분장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부속병원)** ①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사무과·관리과·간호과 및 진료각과와 약국을 두되, 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계기정으로 보하고, 간호과장과 진료각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며, 약국장은 약무기정으로 보하거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사무과는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법규·기본운영계획·심사분석·예산·결산·물품관리·외자관리·환자의 입퇴원·진료비조정·수납·환자의 급식관리·세입대사 및 통계 기타 병원내 다른과·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관리과는 국유재산 관리·시설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간호과는 환자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진료각과는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도서관)** ①부속도서관에 사무과·사서과·열람과와 조사과를 두되 사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조사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사무과는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관리·회계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사서과는 도서의 구입·선정·수증·교환·등록·집계·제본·분류·목록의 편찬 및 보관과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도서관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열람과는 도서의 관내열람·관외대출·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또는 처·국에서의 도서의 비치와 그 회수·연구 참고 자료의 제공·열람통계와 서고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조사과는 고서·서지사항 조사·특수문헌 조사 및 출판물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부속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분관을 둘 수 있다.

⑦분관에 분관장을 두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1조 (시행세칙)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강좌 또는 교과 기타 이 영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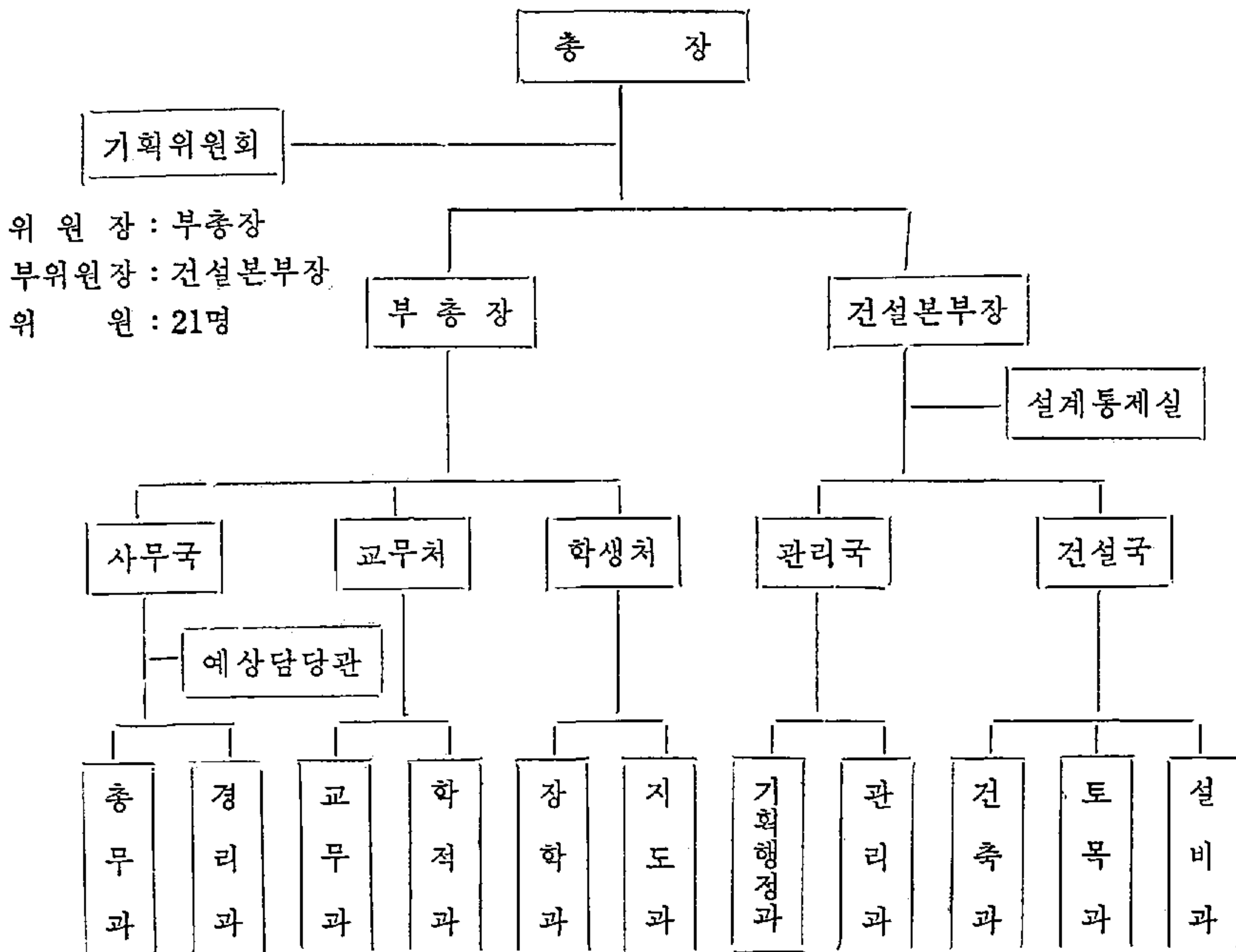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국립학교 설치령 중 서울대학교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 치   | 단과대학  | 학 부 | 학 과  |
|-------|-------|-----|--|
| 서울특별시 | 공과대학  |     |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항공공학과, 자원공학과, 금속공학과, 원자력공학과, 공업교육과,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
| 경 기 도 | 농과대학  |     |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농가정학과, 수의학과, 농업교육과, 원예학과, 식품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
| 서울특별시 | 문리과대학 | 문학부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고고인류학과, 사회사업학과, 국사학과,           |
|       |       | 이학부 | 수학과, 물리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화학과, 천문기상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미생물학과  |
| 서울특별시 | 미술대학  |     |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
| "     | 법과대학  |     | 법학과, 행정학과  |
| "     | 사범대학  |     |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  |

| 위     | 치  | 단과대학 | 학 | 부 | 학                    | 과 |
|-------|----|------|---|---|----------------------|---|
|       |    |      |   |   | 교육과, 체육교육과           |   |
| 서울특별시 |    | 상과대학 |   |   |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   |
|       | // | 약학대학 |   |   | 약학과, 제약학과            |   |
|       | // | 의과대학 |   |   | 의학과, 간호학과, 의예과       |   |
|       | // | 음악대학 |   |   |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
|       | // | 치과대학 |   |   | 치의학과, 치의예과           |   |
|       | // | 가정대학 |   |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   |

## IV. 학 위

여 백

# 1.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서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 2 장 석사학위

제 2 조 석사학위는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하되 그 종별은 전공학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고고인류학과, 사회학과, 사회사업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심리학과, 미학과, 교육학과

### 2. 정치학석사

정치학과, 외교학과

### 3. 법학석사

법학과, 행정학과

### 4. 상학석사

상학과, 무역학과

### 5.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 6.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 7. 이학석사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질학과, 천문기상학과

## 8.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자원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항공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핵공학과

## 9. 농학석사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잠사학과

## 10. 의학석사

의학과

## 11. 치의학석사

치의학과

## 12. 수의학석사

수의학과

## 13. 약학석사

약학과

## 14. 미술학석사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학과

## 15. 음악석사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16. 가정학석사

가정학과

## 17.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 18.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증으로써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 중 일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교수 중에서 지정하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행한다.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그 합격을 결정한다.

대학원장이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의 이수학과 또는 해당 전공과에 가까운 학과 교수 중에서 지정한다.

### 제 3 장 박사학위

#### 제 1 절 총 칙

**제 7 조** ①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종의 외국어 시험과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동 전공계의 본 대학교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전 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②박사학위는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본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학술연구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졸업자(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교육관계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7년 이상 초급대학졸업자(교육대학졸업자, 구제 2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년 이상 초급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자.

2. 대학(4년제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초급대학(교육대학, 전문학교 및 구제 2년제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교육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 시험과 예비시험 실시 당시에 현직에 있는 자.
3. 외국에서 제 1호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국내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합산한다.

**제 9 조**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의 종별은 다음의 11종으로 한다.

공학박사, 농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박사, 정치학박사, 의학박사, 약학박사, 수의학박사

**제10조** 박사학위논문은 그 심사요구서에 소정의 심사료와 이력서 10통을 첨부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용어에 관하여는 제 5조를 준용한다.

## 제 2 절 논문의 심사

**제12조**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부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제출 자격의 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10조의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려한다.

**제14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되 위원장(주심), 부위원장(부심) 각 1인을 둔다.

**제15조** 주심은 심사개시후 6개월 이내에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의 통과는 심사위원 5분지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대학원위원회는 박사학위논문(주논문)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논문 또는 부분,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절 구술고사와 예비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17조 외국어시험과 예비시험은 논문접수에 앞서 이를 시행한다. 외국어 시험과 예비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논문접수를 할 수 없다.

제18조 구술고사는 논문심사위원이 시행하되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구술고사는 담당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시험에 있어 외국어는 논문, 저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이며 예비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분야의 학식에 관한 종합평가이다. 전항의 시험은 2종의 외국어시험과 2과목 이상의 예비시험으로 하되 1종에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시행하며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험과목에 있어 외국어 중 1종은 영어로 한다.

예비시험은 기초 공통과목에서 1과목 이상, 전공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서 1과목 이상으로 한다.

시험은 년 2회 실시하되 과목별로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하고 일부 과목만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년간(2회의 시험기간) 그 합격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구술고사와 예비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결과는 논문심사 결과와 함께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21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써 박사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요지와 구술고사와 예비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행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하되 별지 서식(2) 또는 (3)의 학위기로써 행한다.

제23조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인쇄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또는 총장이 그 공표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 제 4 장 명예박사학위

제26조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지서식(4)에 의한 학위기로써 행한다.

#### 부 칙

제28조 본 규정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본 규정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196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196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개정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규정은 196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196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이 개정규정은 196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사법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사학위를 가지고 사법대학원을 수료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학

위기는 제33조에 불구하고 별지 서식(1-1)과 같다.

②전항의 학위수여를 위한 논문제출 기한은 1975년 11월 30일까지로 하  
되 군복무 의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0조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  
72년 3월 1일 이후 본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서 실시한 시험은 본 개정규정에 의거 실시한 시험으로 본다.

②제 7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8조는 1975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  
다.

별지서식 (1)

|  |   |   |   |    |   |
|--|---|---|---|----|---|
| 석  | 제 | 호 | 학 | 위  | 기 |
| 본적   |   |   |   |    |   |
| 성명   |   |   |   |    |   |
| 서기   |   | 년 | 월 | 일생 |   |
| 이 이는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br>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학 석<br>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   |   |    |   |
| 논문   |   |   |   |    |   |
| 서기   |   | 년 | 월 | 일  |   |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   |   |   |    |   |
| 서기   |   | 년 | 월 | 일  |   |
| 서울대학교 총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별지서식 (2)

|  |        |
|--|--------|
| 박 제 호  | 학 위 기  |
| 본적   |        |
| 성명   |        |
| 서기   | 년 월 일생 |
| 이 이는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
| 논문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        |
| (학위) ○ ○ ○ 직인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총장   |        |
| (학위) ○ ○ ○ 직인  |        |

별지서식 (3)

|  |        |
|--|--------|
| 박 제 호  | 학 위 기  |
| 본적   |        |
| 성명   |        |
| 서기   | 년 월 일생 |
| 이 이는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
| 논문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        |
| (학위) ○ ○ ○ 직인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총장   |        |
| (학위) ○ ○ ○ 직인  |        |

별지서식 (4)

|  |          |
|--|----------|
| 명박 제 호   | 학 위 기    |
| 본적<br>(국)  |          |
| 성명   |          |
| 서기   | 년 월 일    |
| <p>이 분은 ○○함으로써(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br/>(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p> <p>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br/>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p>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          |
| (학위)   | ○ ○ ○ 직인 |
| <p>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p>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총장   |          |
| (학위)   | ○ ○ ○ 직인 |

별지서식 (1-1)

|   |          |
|---|----------|
| 석 제 호   | 학 위 기    |
| 본적  |          |
| 성명  |          |
| 서기  | 년 월 일    |
| <p>이 이는 본교 사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br/>출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법학 석<br/>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          |
| 논문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          |
| (학위)  | ○ ○ ○ 직인 |
| <p>위의 인정에 의하여 법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p>   |          |
| 서기  | 년 월 일    |
| 서울대학교 총장  |          |
| (학위)  | ○ ○ ○ 직인 |

## 2.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 2 조 본 대학원 소정의 규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불, 독, 3개 국어중에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 제 7 조 본 규정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 별지서식 (1)

| 석   | 계 | 호 | 학  | 위 | 기  |
|---|---|---|----|---|----|
| 본적  |   |   |    |   |    |
|   |   |   | ○  | ○ | ○  |
|   |   |   | 서기 | 년 | 월  |
|   |   |   |    |   | 일생 |
| <p>이 이는 본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경영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경영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   |   |    |   |    |
| <p>논문</p>   |   |   |    |   |    |
|   |   |   | 서기 | 년 | 월  |
|   |   |   |    |   | 일  |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p>위의 인정에 의하여 경영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p>  |   |   |    |   |    |
|   |   |   | 서기 | 년 | 월  |
|   |   |   |    |   | 일  |
| 서울대학교 총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 2 조 본 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 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3인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2인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 부 칙

- 제 7 조 본 규정은 서기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   |   |   |   |   |
|--|---|---|---|---|---|
| 석  | 제 | 호 | 학 | 위 | 기 |
| 본적   |   |   |   |   |   |
| ○ ○ ○  |   |   |   |   |   |
| 서기      년      월      일생   |   |   |   |   |   |
| 이 이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   |   |   |   |
| 논문   |   |   |   |   |   |
| 서기      년      월      일  |   |   |   |   |   |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   |   |   |   |   |
| 서기      년      월      일  |   |   |   |   |   |
| 서울대학교 총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4. 보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 2 조 본 대학원 소정의 과목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3인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 부 칙

- 제 7 조 본 규정은 서기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8 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   |   |    |   |
|---|---|---|----|---|
| 석 제   | 호 | 학 | 위  | 기 |
|   |   |   | 본적 |   |
|   |   |   | ○  | ○ |
|   |   |   | 서기 | 년 |
|   |   |   |    | ○ |
|   |   |   |    | 월 |
|   |   |   |    | 일 |
| <p>이 이는 본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br/>출하여 보건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br/>○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년          월          일<br/>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br/>(학위) ○      ○      ○ 직인</p> <p>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년          월          일<br/>서울대학교 총장<br/>(학위) ○      ○      ○ 직인</p> |   |   |    |   |

## 5. 신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 2 조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 부 칙

제 7 조 본 규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석 제 호   | 학 위 기 |    |   |    |
|---|-------|----|---|----|
|   | 본적    | ○  | ○ | ○  |
|   |       | 서기 | 년 | 월  |
|   |       |    |   | 일생 |
| <p>이 이는 본교 신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신문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p>논문</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p>서기      년      월      일</p> <p>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장</p> <p>(학위) ○    ○    ○ 직인</p> </div> <p>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p>서기      년      월      일</p> <p>서울대학교 총장</p> <p>(학위) ○    ○    ○ 직인</p> </div> |       |    |   |    |

## 6.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학과는 행정학석사 학위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증으로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지 2 이  
상의 찬성을 거쳐 본 대학원위원회가 그 합격을 결정한다.

### 부 칙

제 7 조 본 규정은 195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이 개정규정은 197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 석                                  | 계 | 호 | 학 | 위 | 기 |
|------------------------------------|---|---|---|---|---|
| 본적                                 |   |   |   |   |   |
| ○ 서기      ○ 년      ○ 월      ○ 일생   |   |   |   |   |   |
| 이 이는 본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 |   |   |   |   |   |
| 출하여 행정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   |   |   |   |   |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   |   |   |   |
| 논문                                 |   |   |   |   |   |
| 서기      년      월      일            |   |   |   |   |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   |   |   |   |   |
| 서기      년      월      일            |   |   |   |   |   |
| 서울대학교 총장                           |   |   |   |   |   |
| (학위) ○      ○      ○ 직인            |   |   |   |   |   |

# V. 표과과정

(별책으로 편찬함)

여 백

## VI. 연 구

여 백

# 1. 학 술 연 구

대학의 사명은 연구에 있다.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전심 노력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반사정으로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도움과 충분한 시설의 제공등 그 어느 하나의 요건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곤경 속에서 단순한 연구 의욕만으로 이러한 난경을 극복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환경은 불우의 연속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환경밑에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를 조장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두고 연구에 관한 제반 계획,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국비 예산으로 제상된 연구비의 배정, 연구논문집의 발간 등을 담당하여 미력이나마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정부 및 사회의 뜻 있는 자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학술연구 조성비를 위시하여 민간재단, 기업체등의 연구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국고 예산으로 연구비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법정기구로서 또는 교내기구로서 체계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은 그 대부분이 사계의 권위자요, 적어도 전부가 각기 전공한 학문 분야에 대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학자들이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술 연구활동에 있어서 영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의 연구비, 외국재단에서의 연구 보조, 민간재단 또는 기업체의 연구비중 상당한 부분이 본교의 교수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어 국내 고등교육 기관중에서는 학술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위원회

본교의 학술연구와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 기관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과 본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써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는 서울 대학교의 학술연구 및 논문집등 도서출판의 종합계획,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연구계획, 연구과정의 검토와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 논문집, 학술보고서등의 편집과 발간, 출판도서의 선정과 번역도서 및 역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며 위원수는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이다. 위원은 아래와 같다.

### 연구위원회위원 명단

|      |                 |
|------|-----------------|
| 위원장  | 閔 丙 久 (부총장)     |
| 부위원장 | 金 哲 洙 (교무처장)    |
| 위원   | 姜 斗 植 (문리대교수)   |
| "    | 趙 淳 (상대교수)      |
| "    | 俞 景 老 (사대교수)    |
| "    | 徐 丙 高 (의대교수)    |
| "    | 金 聖 泰 (음대교수)    |
| "    | 李 殷 雄 (농대교수)    |
| "    | 李 載 聖 (공대교수)    |
| "    | 申 東 勳 (대학원교무과장) |
| "    | 金 哲 洙 (법대교수)    |

### 3. 연구비

본교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학술연구비는 대략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과학기술처 연구비와 서울대학교 학술재단연구비를 비롯하여 정부 각기관, 외국의 재단 또는 원조에 의한 연구비, 민간재단, 기업체 및 교수개인의 사비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문교부학술연구 조성비는 매년 그 액수가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1952년도 부터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를 비롯한 각종 학술 재단 및 기타에서 본교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지급되어 왔다.

연구비의 지급대상자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으로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본교 연구위원회에 제출하면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제목과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배정하여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경과를 보면 1963년 도에는 30 과제 24 명에게 220만원, 1964년도에는 17 과제 21 명에게 168 만원이 지급 되었으며, 1965년도에는 국고예산에 연구비가 제상되지 않아 본교 기성회 예산에 500 만원을 책정하여 인문사회과학계 33 과제 55 명, 자연과학계 41 과제 44 명의 연구자에게 지급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6 년도에는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1,700 만원을 120 명에 지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67 년도에는 문교부에서 490 만원, 과학기술처에서 약 600 만원, 기타에서 약 550 만원의 연구비를 76 명에게 지급하였고, 1968 년도에는 문교부, 과학기술처,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5,000 만원의 연구비를 110 명에게 지급하였다. 1969 년도에는 문교부에서 8,770 만원,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180 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670 만원, 임상연구비 2,551 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630 만원, 기타단체에서 3,760 만원의 연구비를 362 명에게 지급하였고, 1970 년도에는 문교부에서 7,688 만원, 과학기술처에서 2,084 만원,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655 만원, 임상연구비로 873 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725 만원, 기타단체에서 200 만원의 연구비를 265 명에게 지급하였다. 1971 년도에는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644 만원, 문교부에서 11,123 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030 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400 만원, 임상연구비로 900 만원의 연구비를 356 명에게 지급하였고, 1972 년도에는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612 만원, 문교부에서 14,602 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829 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245 만원, 임상연구비 30,550 만원의 연구비를 391 명에게 지급하여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 4. 학 회 활 동

본교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설립되어 있는 각종 학회에 참가하여 거의 그 핵심 회원이 되어, 연례 혹은 월례 연구발표를 비롯한 실험, 실지 답사등 진지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단체와도 긴밀한 제휴를 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제학술회의에 국가 대표로 혹은 학회의 대표로 참가하여 지대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이로서 항상 국제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과 겨누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닦음에 앞장서고 있다.

## 5. 해 외 연 수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외의 문화와 학술을 연마하게 하여 국내문화와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국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기타 국내의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교수의 유학, 연구, 시찰등 해외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Minesota 대학교와의 기술원조 협정에 의한 파견 연구를 위시하여 교환 교수로, 또는 국가경비, A.I.D. 자금등으로 해외에 파견 연구케 한 교수는 현재까지 총 1,700 명에 달한다.

1971 년도의 파견수를 보면 출국자 203 명에 귀국자 189 명이고, 1972 년 12

월 31일 현재 출국중에 있는 자는 총 90명에 달하고 있다.

## 6. 연 구 소

본교에서는 교수들의 체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종합적인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법정기구로 7개 연구소와 단과대학 부설기구로 16개 연구소 계 23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인문, 사회계가 12개 연구소, 자연과학계가 11개 연구소로 구별할 수 있다.

각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연구소에 따라서는 특별 연구원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자격은 각 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각 연구소의 예산은 법정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정부기관을 위시하여 외국 기관 및 재단 혹은 기업체등과의 연구사업 계약에 의해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소의 구실을 충실히 다 한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연구의욕을 가지고 연구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내기구를 법정기구로 하는 문제와 각 연구소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본교 각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현재까지의 실적과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연구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정 연구시설

#### 어학연구소

어학연구소는 어학 및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어학능력 측정 및 교육훈련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최신 설비인 어학실험실 4개를 보유하고 어학연구 및 훈련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본교 재학생의 언어교육, 외국 기관 종업원, 정부 기관의 해외파

견 공무원 기타 일반인의 어학훈련, 해외 파견자의 어학능력 측정 등을 활발히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사업으로는 “한·일어의 음운비교”, “표준 영어 능력 측정문제 작성” “한·영어의 비교연구” “한·영어의 통사구조에 있어 주요 범주 상호간의 기능적 결합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및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 어휘통제에 관한연구” “국어음운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등을 비롯하여 매년 수건의 연구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또한 2개의 연구지 “어학연구”와 “언어교육”을 각각 연 2회 발간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 있는데 전자는 이론 언어학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8권 2호, 후자는 응용언어학을 주로 다루는데 4권 2호를 발간하고 있다.

교육훈련 사업으로는 72년 12월 현재 본교 재학생의 영어 훈련 506명, 일어훈련 30명, 중등학교 영어교사 재교육 243명, 재일교포 유학생의 국어 훈련 233명, 정부 해외파견요원 및 기타 일반자의 영어훈련 11,619명,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훈련 113명, 기타 주한외국 기관원, 본교직원 및 연구생 훈련 등으로 많은 인원을 훈련하여 왔다.

진행중인 연구사업으로는 “변형 생성문법 재학설의 비교관계”, “전치사에 관한연구”, “영어교재 평가와 보충자료 및 측정문제 작성”, “국어통사구조 기술의 방법론 연구”, 그리고 “고대영어 모음연구”등이 있다.

##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입법, 사법, 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간의 업적으로는 우리나라 초유의 사업으로서 전국이래의 대법원 판례를 민사법, 형사법, 공법으로 나누어 이를 년도별로 정리하고 법조문에 의한 주석을 가하여 민사법 4집, 형사법 3집 공법 1집을 발간하였으며 학술연구지로서 “법학”을 년 2회로 발간하여 현재까지 13권 2호까지, 특별호 3호를 발간하였고 “한국의 법학교육”과 “한국의 법조인”을 국영문으로

발간 국내외에 보급하였으며 기타 외국과의 통역사업으로써 경제기획원 및 유세이드의 요청에 의한 공동연구인 “외자도입에 대한 법률적 제문제”와 국토통일원과의 국토통일에 따른 법률연구를 수행중이며 특히 1971년 8월 아세아재단과 제휴 5개년계획으로 법학교재 편찬사업을 수행중이며, 1972년 현재 1차년도 사업인 “물권법”과 “어음수표법”이 곧 발행 단계에 있다. 1973년도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법학” 14권 1호와 2호를 발간할 계획이며 법학 교재편찬 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다.

### 학생지도연구소

본 연구소는 학생 생활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도 및 학생지도 요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학생들의 개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3천여명, 학생에게 개인 상담지도를, 6천여명 학생들에게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신입생에 대하여는 해마다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면에 있어서도 “학생지도에 관련된 각종검사의 타당도 분석연구 및 검사기구의 발전연구”의 수편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은 “학생연구”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또한 인쇄물로는 “학생연구”를 년 2회로 발간 현재까지 9권 2호를 발행하였고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돕기 위하여 세계 각대학의 요람을 수집, 비치하여 열람시키고 있다. 그외에도 연차보고서를 국, 영문으로 간행하였고, 학생들의 학업향상과 대학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팜프렛 자료들을 수시로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 생약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약 분야의 기초 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것이며 가장 오래된 연구소이다.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생약의 유효성분에 대한 물리 화학적인 연구 및 작용 기전을 연구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천연물화학부 · 생물화학부 · 생물리학부 · 약효학부 · 조사부를 두고 있으

며 최신 정밀 기계와 17,448 평의 연구자료 공급포지 및 1,700 종의 학술표본을 활용하여 화학·생물학·의학·약학·농학 등 각 전문연구자가 유기적으로 협동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자의 지도육성도 하고 있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인삼의 유효성분으로서 배당체제신화합물의 분리 또는 확인 성분의 하나로서 알파, 피롤리돈의 발견”을 위시하여 10여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재외국민교육연구소

본연구소는 재외국민 모국유학생의 예비교육 및 재외국민교육문제의 연구와 자료수집등에 관한 사항의 수행을 임무로 1970년 6월 25일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치되어 72년도 12월 현재까지 대학부는 5회에 걸쳐 533명을 수료시켰으며 고등부는 2회에 걸쳐 18명을 수료시켰다. 그외에 교포교육제도 및 모국어 학습에 대한 재외국민교육논총 제 2집을 발행하였으며 계속 재외국민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히 수행될 것이다.

### 신문대학원 신문연구소

본 연구소는 신문, 방송, 출판 및 공보등 매스컴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종사하려는 자의 지도및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매스컴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재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한국출판에 대한 연구”의 35건에 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87명의 연구생을 수료시켰다. 현재는 동부아시아 각국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분석기를 사용하여 미디어의 내용과 효과에 관한 계량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문연구소학보” 제 8집을 발행할 예정이다.

###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는 경제학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 경제의 각분야에 걸친 제반문제를 학술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

여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한국경제연구부를 비롯한 6개 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경제관계 국내외 연구자료의 교환수집과, 연구 총서의 발행, 학술 논문집 발간, 해외 주요 논문 발췌집 발간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창설 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많은 연구실적을 남기고 있으며 경제논문집을 매년 4회 영문판 1회를 발간하고 있다.

## 2. 내부연구시설

### 공과대학 부설 응용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생산기술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산업개발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학 및 공업에 관한 연구와 각종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기술적인 제반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분리된 연구활동으로서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현대공학의 복잡한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전문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업생산면의 특수하고 긴요한문제와 경제 및 산업부흥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본교 종합캠퍼스 마스터 프랜작성, 한국산업은행 인천 지점 신축설계시추 및 지내력조사, 한강수계 저수지군의 최적 운용 계획, 소공동 및 무교동지구 개발계획 및 조사설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업연구 실적이 있고 인천항 남부 안벽 수조 공사, 각 광업소 적정 생산 규모 및 원가조사 연구, 서울시 도심권 교통 혼잡 해소 방안 계획 연구등 다수의 공업연구를 수행중이다.

### 농과대학 부설 농업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농·임업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농·임업 생산기술의 향상과 국가 농·임업시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자료제공 및 농·임업 교육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간의 주요 업적으로서 1968 년도에



“농업근대화를 위한 종합적연구” 외 2건, 1969 년도에 초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1)외 1건, 1970 년도에 계속 초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2) 외1건을 수행하였고 1971 년도에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내 연약지구 미시공지 보강 공법에 관한 조사연구 외 9건, 1972 년도에 평택 간천지 종합 계획에 관한 연구 1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업 근대화에 관계된 여러 문제점을 조사 연구할 계획이다.

### 문리과대학 부설 동양문화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향상과 세계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업적으로는 “규장각 도서 한국본 도서 해제 및 목록”을 비롯하여 20 여건의 연구업적과 연구소지 “동양문화 11 집”을 발간하였으며 그 외 연구 총서의 출판, 11 회에 걸친 학술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현재 계획 사업으로 한국학 대사전을 기획 편집중에 있다.

### 문리과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본 연구소는 국내의 학자간의 긴밀한 제휴하에 한국의 인구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며 장래 이분야의 연구에 기여 할 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1965 년에 설립 되었다.

설립이래 이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연구 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연구소 총서로써 현재 10 권까지 발간 하였으며 1971 년부터 따로 연구소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조사 연구의 자료 처리를 위해 I.B.M. 천공기, 점공기, 분류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실에 인구 및 발전 문제에 관련된 전문 도서와 정기 간행물 6 천여권 그외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비치하고 있다.

### 문리과대학 부설 해양생물연구소

본 연구소는 해양 생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 환경과 해양 생물에 관한 기초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 되었다. 설립 이래 “한국산 한천 원조에 관한 연구” “알친산 원조에 관한 연구” “한국 근해의 식물 플랑크톤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73년도 연구과제로 “한국 해역의 기초생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외국 해양 식물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문리과대학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본 연구소는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를 각분야에 걸쳐서 수행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이래 “한국의 사회 의식 구조의 변천”이라는 연구과제로서 각분야에 걸친 연구 성과를 얻어서 한국문화연구 총서로 제 9집까지 이미발간했으며 1973년도에는 제 16집까지 계속 발간 할 예정이다.

### 문리과대학 부설 국제문제연구소

본 연구소는 한국을 위요한 국제문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안보, 국방 및 외교 정책 수립에 공헌함으로써 항구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2년 6월에 설립 되었다. 그동안 4회에 걸친 연구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다수의 외국인 학자들과의 국제 문제에 관한 토론을 가진바 있다. 아직 초창기에서 큰업적은 없다 하겠으나 1973년 1월에 국제 문제 연구 논총 창간호를 발간중이며 국제 문제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 국방 및 외교 정책 수행에 긴급한 국제 문제를 적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본 연구소는 교육에 관한 제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새로운 교육 이론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독창적이며,

이론적인 연구를 행하고 대학 교육과 현직 교육의 유기적 관련에 관한 연구, 외부 기관 특히 문교부 또는 각급학교로 부터 위촉을 받은 교육문제의 연구 조사와 분석 및 진단, 국내의 교육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연구자료의 수집, 보관 정리등 사업을 행하는데, 현재까지 “교사 자질 예언을 위한 평가 연구”의 22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72 년도에는 주로 통일과 관련된 교육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 상파대학 부설 한국경영연구소

본 연구소는 경영문제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아울러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그동안 경영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제반 기초 자료의 수집, 정비, 및 발표와 국내외 연구 기관의 연구 협력과 위탁 연구를 행하고, 기업진단, 경영상담, 교육훈련, 한국 경영 실무 연구회의 운영과 10건의 경영 진단 대 정부 연구 사업을 행하였다. “경영논집”과 “경영실무”를 각각 6권 4호까지 발간 하였으며 7차에 걸친 학술 강연회 및 세미나의 실적을 남기고 있으며 73년도 사업계획은 “경영논집”과 “경영실무” 7권 1호부터 4호를 각각 출판할 예정에 있다.

### 의과대학 부설 결핵연구소

결핵의 치료와 예방의 발전, 한국 결핵의 학술적 실태 조사, 결핵 관리 사업의 발전을 연구 조사함으로써 결핵의 근절과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 및 역학적 예방 의학적 검토와 대책에 관한 연구 조사, 결핵 질환 및 유사 질환의 병리 및 세균학적 연구 조사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결핵 환자의 생화학적 검토 및 항결핵제의 약리학적 조사연구, 결핵 및 호흡기 질환의 생리학적 연구 조사와 기능적 진료에 관한 연구등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임상부, 병리세균부, 화학부, 생리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과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을 약간명씩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소장을 자문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실적으로는 결핵환자의 관리 외에 기관지염 치료법에 관한 연구 등

수건을 행하였다.

### 의과대학 부설 국민체력과학연구소

모든 연령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 과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실제에 응용하여 국민의 체력 증진과 체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소장 아래 기초 체력학부, 영양학부, 임상 의학부, 체력 관리부, 건강 관리부, 심리 적성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두고 있으며, 창설이래 연구업적은 48 건이나 되며, 1971 년도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의 8 편, 1972 년도에는 일부 직장 여성의 체지 방량 측정에 의한 영양실태 조사의 8 편의 연구를 완료 하였으며 일부는 계속 진행중에 있다.

### 의과대학 부설 암연구소

암 및 이와 관련된 질병들의 본태,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와 암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암의 조기 진단에 관한 분야의 연구를 행한다. 최근 연구 실적으로는 한국인의 백혈병에 관한 연구 외 6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의과대학 부설 풍토병연구소

한국 고유의 풍토병을 연구 조사하여 병원체 근절을 도모하여 풍토병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기생충 질환, 풍토성이 농후한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결핍성질환의 조사연구와 치료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제주도 사상충증의 역학적 연구 및 집단치료”를 위시하여 경남 지방에서 “이락촌 폐흡충”을 발견하는 외에 100 여편의 주요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제주도 서귀포에 연구소 분원을 설치하고 OTCA에서 약 4 만불 상당의 기재를 원조 받아 제주도 사상충증의 집단 치료를 3년째 계속 실시하고 있다.

1971 년도에는 열대지역 특유의 질병을 조사 연구하였고 열대 지역 파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관장해 왔던 열대 의학 연구소를 흡수 통합하여 기구 및 인원을 재정비 하는 한편 연구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의과대학 부설 인구의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 문제와 생식 현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급하여 인구 문제 해결 방안에 기여코자 1972 년도에 설립되었다. 아직 초창기여서 특기 할 만한 연구 업적은 없으나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연구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 보건대학원 부설 국민보건연구소

본 연구소는 국민보건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계몽을 통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현재는 강원도 춘성군 보건소를 선정하여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대한 연구, 즉 농촌 지역 인구 동태에 대한 조사, 장티브스 보균자에 대한 조사, 모자 보건 실태 조사, 가족 계획 실태 조사, 결핵 감염자 실태 및 관리에 대한 연구, 환경 위생 실태 조사등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사회부로 부터의 위촉을 받아 “가족 계획 사업의 행정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본 연구소는 행정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행정개혁에 관한 전반적 평가” 외 15건의 연구 사업을 비롯하여, 1970 년도에 “전북 및 경남의 지방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1971 년도에는 “행정의 TQC 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1972 년도에는 “한국 공무원 행태 조사 외 5건의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제반 문제 되는 사항을 조사 연구할 계획이다.

## VII. 장 학

여 백

# 1. 장학제도

교육법 제 158 조는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재능이 있는자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력이 우수하고 가세가 빈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교에서도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학금제도를 마련하여 가정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지식을 연찬할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 가. 장학금의 종류

### (가) 일반 장학금

일반사회 독지가 또는 각종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나) 서울대학교 장학금

본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일반 장학금의 성적 및 기타 장학단체의 특수성에서 오는 제한을 보완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1억원모금 실적에 따라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다) 국가 요원 양성을 위한 학비면제.

다음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비가 면제된다.

- 1)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 2) 공업교사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 3) 농업교사 양성을 위한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 4) 양호교사 또는 간호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간호학과

### (라) 학비 면제

- 1) 수업료 면제(학생정원 20%범위내)
- 2) 기성회비 면제(학생정원 20%범위내)

### (마) 기타 특정범위의 학생을 특수한 기숙사에 입사시켜 면학에 정진토록



하고 있으며 직업보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부직을 알선시켜 학자금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나. 장학금 급여 대상자

본교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급여한다.

-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 2) 애국지사의 자녀
- 3) 상이군경 학생
- 4) 4.19 상이학생
- 5) 학력이 우수한자로서 경제적 사유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한자.
- 6) 특히 서울대학교 장학금은 성적에 구애됨이 없이 가세 빈곤하여 등록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범위는 장학단체에 따라 "A"학점 "B"학점 또는 평균 80점 이상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B"학점이상이고, 가세 빈곤의 정도는 단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분남지도교수가 가정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라야 한다.

#### 다. 장학금 지급현황

본교에서는 1959년 10월 20일 교내에 재단법인 함춘장학회를 설립하여 그간 계속 기본 재산의 확충에 노력하여 왔고, 특히 지난 1968년 11월 1일부터는 함춘장학기금 1억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약 5,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재단법인 함춘장학회를 서울대학교 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독지가들이 설립한 110개 장학단체에서 매학기별로 1인당 5,000원 이상 최고 12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납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체에 따라서는 교통비 및 문구대까지 급여하는 경우도 있다.

(1972년도 제 2학기분)

| 종 류         | 단체수 | 지급 또는<br>면제인원 | 1인당 지급액       | 지급총액        |
|-------------|-----|---------------|---------------|-------------|
| 본부 취급 장학금   | 40  | 746           | 5,000—120,000 | 25,205,000  |
| 단과대학 취급 장학금 | 70  | 271           | 5,000—120,000 | 11,134,000  |
| 수업료면제       |     | 2,544         | 5,700—7,800   | 16,532,000  |
| 기성회비면제      |     | 2,996         | 16,000        | 47,891,000  |
| 계           | 110 | 6,557         |               | 100,762,000 |

※등록생수에 대한 비율은 46.1%임.

## 2. 학생 보건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예방치료, 상담등)를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학생의료보험기구 설치운영, 학생신체검사 실시, 학생 환경위생 시설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보건진료소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957년 4월 1일부터 개설한 보건 진료소에서는 약 20명의 의료 전문직을 두어 다음의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다

- (가) 건강상담
- (나) 보건통계
- (다) 집단검진
- (라) X-Ray 촬영
- (마) 기생충 검사와 구충
- (바) 치과보철과 치료
- (사) 결핵의 발견과 치료

(2)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학생의 이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                       |         |
|-----------------------|---------|
| 1968년 3월부터 1969년 2월까지 | 16,181명 |
| 1969년 3월부터 1970년 2월까지 | 13,895명 |
| 1970년 3월부터 1971년 2월까지 | 12,497명 |

1971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 11,818명

### 나. 학생 의료보험

(1) 학생 의료보험은 “서울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이라는 본교 내규에 근거,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자에게 적절한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1년 9월 1일 설립한 것이다.

이 기구는 이사 7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고, 집행기관으로는 치료비 심사위원회가 있어 의료전문가 중에서 선임한 위원 3명과 학생처장 및 장학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총장으로 되어 있다.

학생 의료보험의 운영재원으로는 학생이 등록시에 매인당 100원씩을 납입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치료비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           |
|--------------------------|-----------|
| 1급 공상(총장이 승인한 행사에서 부상한것) | 28,000원까지 |
| 2급 중병으로 입원 가료자           | 18,000원까지 |
| 3급 학업에 지장 있는 질병으로 입원 가료자 | 8,000원까지  |
| 4급 치과 보철 및 기타 질환가료자      | 5,000원까지  |

(2) 보험금 지급 실적은 다음과 같다.

|       |      |            |
|-------|------|------------|
| 1968년 | 235명 | 1,122,465원 |
| 1969년 | 242명 | 1,125,200원 |
| 1970년 | 326명 | 1,898,348원 |
| 1971년 | 342명 | 2,303,450원 |
| 1972년 | 387명 | 2,280,840원 |

### 다. 학생 신체검사

(1) 근거, 목적, 필요성

학생신체검사는 학교보건법(1967.3.30 법률 제1928호)과 학생 신체검사규정(1961.12.1 문교부령 제112호)에 의하여 매년 1회씩 학기초에 실시토록 되

어 있으며,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학생신체충실지수”의 평균치산출학생질병과 기생충보유율 등의 제통계를 산출토록하여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보건과 학생체질 개선등의 중요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신체장애와 질병의 조기발견 그에 수반된 예방및 치료권장 또는 전염병의 방비 등 학생 개개인의 보건은 물론 공중보건에도 공헌하고 있다.

## (2) 신체검사(집단검진포함)의 종류와 내용

학생신체검사는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로 구분되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체격검사

신장, 체중, 흉위, 좌고, 척추 등의 결함 유무를 측정한다.

### (나) 체질검사

흉곽, 눈, 귀, 코, 목, 피부, 치아, 기생충, 영양등에 대하여 결함 유무와 질병 또는 보건상황을 검사한다.

### (다) 체력검사

달리기, 멀리뛰기, 던지기, 턱저리, 팔굽혀매달리기, 왕복달리기 등의 능력측정 또는 유무를 검사한다.

### (라) 학생환경위생

학생이 이용하는 교내의 식당, 다방, 휴게실, 이발소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학생보건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춘추 2회로 구분하여 보건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검사 위생검사 및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그때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되 극히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염병질환의 예방과 학생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3. 학생 후생

본교의 12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의 학생(약 2만명)의 집단생활에 불

가피한 학생후생 시설은 국가경제의 부흥과 학교의 운영정상화에 따라 보다 증진 되어야 할 부문이며 특히 대규모의 학생회관의 건립과 학생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확장문제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인 바 앞으로 본교 10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현재 개선되어가고 있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생 후생 시설

학생 후생시설은 거의 전부가 국유전물을 이용한 사용허가식 개인 운영체제로 되어 있는 바 각대학에 산재한 식당, 다방, 휴게실 및 이발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식 당      | 10개소 |
| 다 방      | 5개소  |
| 휴게실겸 오락실 | 6개소  |
| 이 발 소    | 6개소  |

#### 나. 기숙사 현황

본부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구내에는 현대식 기숙사가 설치(남녀 별도 설치)되어 학생실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과대학 간호학과에는 국비부담으로 된 기숙사가 있고, 본부에서 직할하는 기숙사는 재일교포 학생을 위한 왕릉사와 종합 기숙사인 정영사가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공과대학기숙사       | 수용정원 | 594명  |
| (2) 농과대학 "        | "    | 500 " |
| (3) 의과대학 " (간호학과) | "    | 160 " |
| (4) 왕릉사           | "    | 60 "  |
| (5) 정영사           | "    | 120 " |

#### 다. 직업보도

재학생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및 직업보도를 위하여 1959년 6월 1일부로 설치된 직업보도 위원회는 각계 인사와 관계교수로 구성되어 그 강화에 필요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졸업예정자의 취업알선과 재학생으로서 부직을 필요로하는 학생들에게 가정교사, 외국어 개인지도, 도안, 번역, 원고정리, 타자, 필경등의 알선업무를 전담케하고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부직 알선

|         |      |         |      |         |
|---------|------|---------|------|---------|
| 1968학년도 | 등록생수 | 2,685명  | 취업자수 | 995명    |
| 1969 "  | "    | 2,137 " | "    | 1,310 " |
| 1970 "  | "    | 1,948 " | "    | 1,452 " |
| 1971 "  | "    | 1,745 " | "    | 1,123 " |
| 1972 "  | "    | 2,550 " | "    | 1,301 " |

(2) 졸업생 취업알선

졸업생 취업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공과계, 상경제, 농업계, 사범계, 의약계, 기타의 순서로 최근에는 거의완전 취업상태에 있으나 법대, 미대, 음대 등 아직도 취업에 미흡한 대학이 있어 각종 대 기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명사와 저명교수들의 취업자로서 취해야할 필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글을 수록한 취업지침을 발간하여 본교 출신자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졸업예정자의 명단을 발간하여 국내 각종 대기업체에 배부함으로써 채용을 권장하고 있는바 그 취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968학년도 | 졸업자수 | 2,038명  | 취업자수 | 1,818명  |
| 1969 "  | "    | 2,088 " | "    | 1,856 " |
| 1970 "  | "    | 2,251 " | "    | 1,761 " |
| 1971 "  | "    | 2,452 " | "    | 2,092 " |

## 4. 해외유학

선진국가의 학술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해외 유학은 매년 4회에 걸쳐서 문교부에서 "해외 유학생 전형고시"를 실시하고 있는바 본교에서는 그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응시상황은 다음과 같다.

|        |       |
|--------|-------|
| 1968년  | 669명  |
| 1969 " | 800 " |
| 1970 " | 700 " |
| 1971 " | 833 " |
| 1972 " | 697 " |

## **VIII. 학생지도 및 생활**



여 백

# 1. 학생 지도

## 가. 학생지도 원칙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민주적이고 건전한 자치 활동을 통하여 지도 자적인 인격과 자치능력을 함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나. 학생지도 지침

지도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의 지도지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다.

### (1) 학생 자치단체 활동의 권장

학생자치 활동은 학생총의에 의하여 조직된 학생회와 그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토록 한다.

### (2) 개별 상담 지도

학업, 개인신상, 교양 및 과외활동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하여 분담지도교수와 학생지도 연구소가 상담 지도한다.

### (3) 집단 지도

(가) 학생회 임원의 리더십트레이닝을 위한 캠프 실시.

(나) 학생회 산하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문분야 지도교수 참여

(1단체에 1지도교수)

### (4) 학부형, 동창과의 협력유대로 학생연계지도

(가) 학부형에게 학생지도 협조 서신발송

(나) 동창 및 학생과의 연석 간담회 개최

(다) 각 지방 학부형과의 간담회 개최

## 다. 학생지도 기구

### (1) 학생지도 위원회

(가) 각 대학마다 두어 학생지도 방안 등을 심의한다.

(나) 특별(상임)지도위원을 두어 학생의 특별상담지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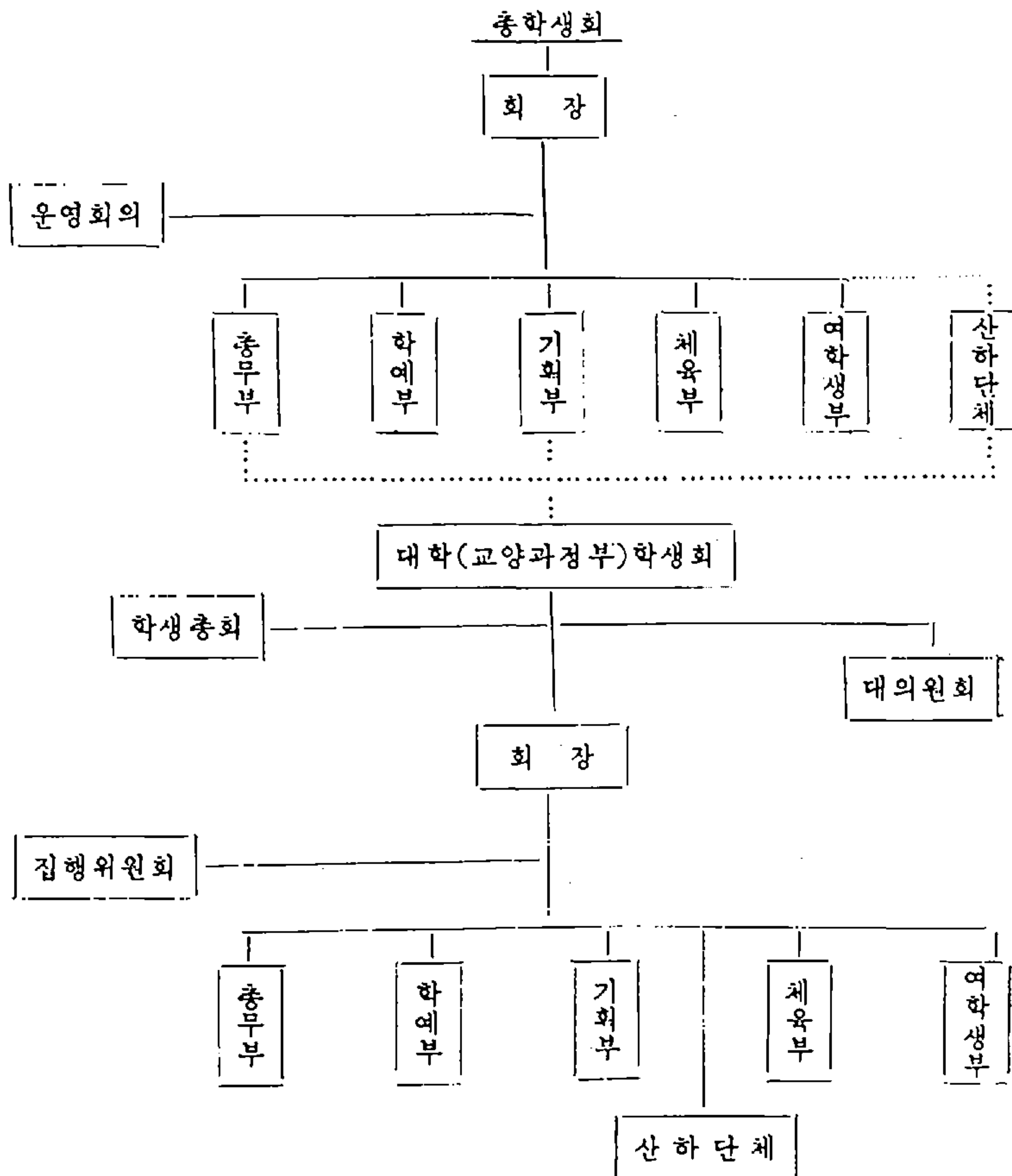
### (2) 학생분담지도 교수제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가 전체학생을 일정한 인원으로 분담하여 졸업시까지 지도한다.

## 2. 학생회

각 대학 및 교양과정부에는 학생회가 있으며 각 대학 학생 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학생회를 두고 있다.

### 가. 학생회 기구



#### 나. 학생단체

취향을 같이하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위한 단체를 학생회 산하에 두고 있으며 1972학년도 현재 학술단체 22, 봉사단체 8, 종교단체 18, 체육단체 18, 예능단체 24, 이상 9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 다. 과외활동

등록된 90개 학생 단체가 연 193회 연인원 26,779명이 각종 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무의촌진료(의대, 치대)와 농촌봉사활동은 새마을 운동에 호응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활동은 예년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는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4개 대학(문리대, 농대, 사대, 법대)의 활동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총학생회 산하단체의 기능이 마비된 때문이다.

### 3. 학생상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문제는 그들의 학업생활과 개인 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건전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 상담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이해의 부족이나 현실과의 갈등에서 기인되는 개인적인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한다.

2. 이해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받는 여러가지 내적 갈등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 결과로써 학생들은 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 하에서 학업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3. 학생들은 개인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학업생활이나 개인생활을 보다 풍족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정보에 접하게 된다. 이를테면 보다 능률적인 학습방법을 위한 정보나 개인적인 흥미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같은 것을 얻음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개인상담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심리 측정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장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개인상담에 의하여 그들의 교육적, 직업적 장래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거나 세우게 되는 것이다.

5. 개인상담은 신체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원인에서 오는 열등감, 정서적 불안, 비사회성등 심리적 적응성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상담 결과 문제되는 것을 추려보면, 정서적 안정성에 속하는 문제가 가장 많고 다음이 대인관계, 생애에 관한 문제, 경제문제, 교육태도 및 방법, 전과 및 진학, 이성관계, 가정문제, 신체적인문제, 기타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학생 상담은 각대학의 학생과와 지도교수 또는 학생지도연구소에서 수시 누구에게나 상담에 응하고 있다.

## 4. 학생 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미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편학의욕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 있다.

### 가. 우등생 포상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4 이상의 학생을 학년도말

에 선정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

2) 다음은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학업성적이 정원의 3% 이내의 학생에게 시상한 것이다.

| 학 년 도   | 68  | 69  | 70  | 71  | 비 고 |
|---------|-----|-----|-----|-----|-----|
| 포 상 인 원 | 229 | 255 | 277 | 299 |     |

#### 나. 학사포상

1) 졸업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졸업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

최우등급 (Summa Cum Laude) 평점 3.9이상

준최우등급 (Magna Cum Laude) 3.6 "

우등급 (Cum Laude) 3.4 "

2) 71학년도까지는 각대학에서 최우수자 1명에 대하여 포상 하였다.

## 5. 학생 병사

국방력은 실제 문제로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양단되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 22조는 대학 재학생으로 하여금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연기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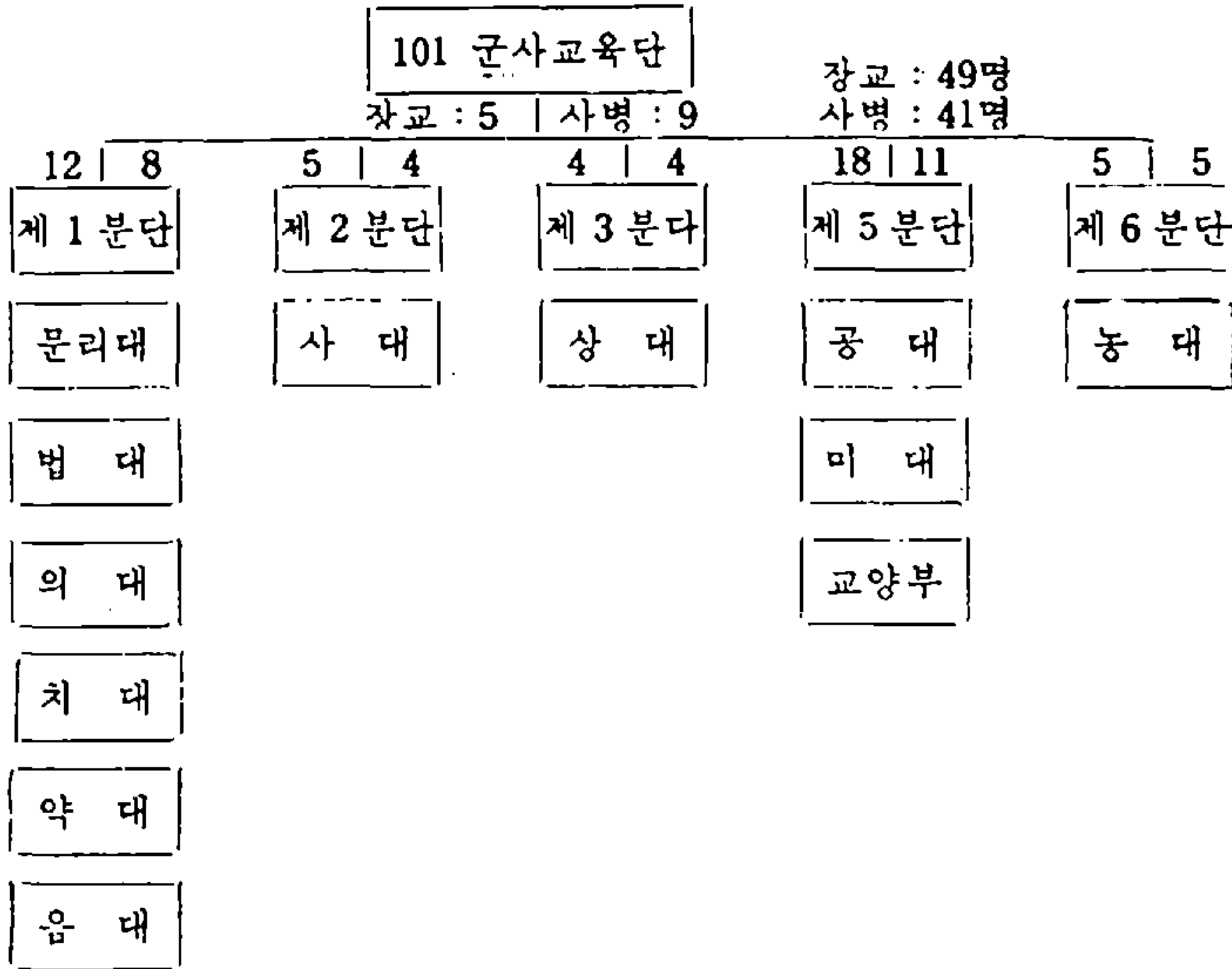
1972년도에는 징집대상자 8,788명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예비역 무관후보생 (R.O.T.C)을 지망하여 훈련을 받은 자 668명중에 292명은 금년에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또한 재학기간내에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입영후 현역복무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6. 군사교육

본교에는 육군 제101학생군사교육단이 주재하여 일반학생 군사교육과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군사교육단은 각 단과대학에 분산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5개분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본부가 통할하고 있다.

### 가. 편 성



### 나. 일반 군사교육 과정

일반군사교육은 1971년도부터 교육이 실시되어 군사교육 대상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군사지식을 부여하여 군사적인 적응성과 자질을 배양하고, 국토방위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심신의 단련과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간 60시간씩 3년간 180시간을 교육하며, 매 학기마다 학점을 배정하고 있다.

#### (1) 교육과정 및 시간

| 과 정   | 내 용                                      | 시 간   |
|-------|--|-------|
| 일 반 학 | 국방개론<br>군편제 및 전쟁원칙<br>군기본동작<br>독도법 및 통솔법 | 68    |
| 화 기 학 | 화기소개 및 개인화기<br>조각과 사격술                   | 42    |
| 전 술 학 | 분대급 소부대전술                                | 42    |
| 기 타   | 예비시간 및 평가                                | 28    |
| 계     |  | 180시간 |

(2) 교육대상

\* 대학의 1.2.3학년 재학자

(의·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 1학년)

\* 군사교육 비대상자

현역군인, 예비역, 여학생, 교포, 심신장애자, 연령초과자와 예비역 무관후보생.

\* 72년도 군사교육 대상자수

|         |         |
|---------|---------|
| 제 1 학 기 | 7,052 명 |
| 제 2 학 기 | 6,783 명 |

(3) 기간중 학점 취득현황

| 년 도 및 학 기    | 교 육 대 상 | 학 점 취 득 | 비 율   |
|--------------|---------|---------|-------|
| 71 년 도 1 학 기 | 6,977 명 | 6,499   | 93.2% |
| “ 2 학 기      | 6,626 명 | 6,128   | 92.5% |
| 72 년 도 1 학 기 | 7,052 명 | 6,908   | 98.0% |
| 72 년 도 2 학 기 | 6,754 명 | 6,654   | 98.3% |

다. 예비역 무관 후보생과정(R.O.T.C)

R.O.T.C는 1961년 6월 1일에 창설되었으며, 교육의 목표는 각병과의 초



급장교로서 공통적인 지휘 통솔 능력을 부여 하고 임전무퇴의 군인정신과 필승의 투지력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학교교육과 병영훈련으로 구분하여 2년간 실시하게 되며 학교교육에서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지식과 동작을 습득하기위한 학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300시간을 교육하고, 하기방학 기간중 예비사단에서 각종 화기의 사격 훈련과 중대이하의 소부대 전투훈련 그리고 군 내무생활과 체력단련 등의 훈련을 352시간 실시하게 됨으로써 총 65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서 학점을 배정하고 있다.

(1) 후보생수(72학년도)

1년차 : 312명

2년차 : 352명

(2) 년도별 장교배출

| 년 | 도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합     | 계 |
|---|---|-----|-----|-----|-----|-----|-----|-----|-----|-----|-----|-----|-------|---|
| 인 | 원 | 513 | 528 | 437 | 398 | 351 | 352 | 338 | 268 | 200 | 311 | 292 | 3,988 |   |

(3) R.O.T.C 입단자격

사상이 건전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육군장교 표준 신체규격에 합격한 만18세 이상 22세 미만인자로서 대학 3년 이상 재학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중 본인이 원하는자.

(4) 현역복무 및 특전

- \* 군사훈련과정 수료후 전형에 의거 소위로 임관되며 2년간 현역복무 후 예비역에 편입된다.
- \* 입단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후보생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 교육훈련기간중 교재와 피복을 지급한다.
- \* 병영훈련기간중 침식, 수송, 장비 일체를 군에서 부담하며 소정의 봉급을 지급한다.
- \* R.O.T.C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육군사관학

교 교관요원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이에 선발되면 대학졸업후 2년간 예비역 소위로 소집이보류되고 대학원졸업과 동시에 중위로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 복무토록 한다.

## 7. 체 육 활 동

학생의 건강관리 및 협동하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각종 체육부를 두어 활동을 하게 하고 있으며 각부 주최로 각 단과대학별 대항전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종합적인 행사로 각 단과대학 대항 총장기 쟁탈 구기 대회와 개교 기념 종합 체육 대회를 거교적인 행사로 개최하며 마라톤 대회를 겸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및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에도 본교 각부에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 8. 간 행 물

본교에서 발행하는 학생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되어, 주로 본교 학생에게 배부되는 교내 제반 뉴스, 문학계의 동향, 해외학계의 움직임, 학내여론의 창달등을 위한 학내신문, 학보 또는 학습연구지로서 그 편집에 학생이 관여하는 간행물로 현재 본교내의 학생 간행물 종류 및 발행부수는 아래와 같다.

| <u>발행소</u> | <u>종류</u> | <u>명칭</u> | <u>발간구분</u> | <u>1회발간부수</u> |
|------------|-----------|-----------|-------------|---------------|
| 대학신문사      | 신문        | 대학신문      | 주간          | 17,000        |
| 공과대학       | 학보        | 서울공대      | 반년간         | 2,600         |
| 농과대학       | "         | 상록        | 계간          | 2,500         |

|           |     |           |     |       |
|-----------|-----|-----------|-----|-------|
| 문 리 과 대 학 | 학술지 | 문 리 대 학 보 | 연 간 | 2,300 |
| "         | 교양지 | 형 성       | 계 간 | 2,300 |
| 미 술 대 학   | 학술지 | 미 대 학 보   | 연 간 | 800   |
| 법 과 대 학   | 학 보 | 피 데 스     | 계 간 | 2,000 |
| 사 범 대 학   | "   | 청 량 원     | 반년간 | 2,000 |
| 상 과 대 학   | 학술지 | 상 대 평 론   | "   | 800   |
| 약 학 대 학   | 학 보 | 약 원       | 연 간 | 1,000 |
| 음 악 대 학   | 학술지 | 음 대 학 보   | "   | 800   |
| 의 과 대 학   | 학 보 | 합 춘 원     | "   | 1,000 |
| 치 과 대 학   | "   | 치 원       | "   | 2,000 |
| 가 정 대 학   | "   | 아 람       | "   | 800   |
| 교 양 과 정 부 | "   | 향 부 연     | "   | 2,000 |
| 재외국민교육연구소 | 신 문 | 재외국민교육    | 계 간 | 1,000 |
| "         | 학술지 | 현 해 탄     | 연 간 | 500   |
| 총 여 학 생 회 | "   | 여 울       | "   | 2,500 |

## 9. 대 학 신 문

서기 1952년 2월 4일자로 피난지 부산에서 창간된 "대학신문"은 당초 한국의 전 대학을 총 망라한 범 대학신문으로 출발하였으나 각 대학교에서 제각기 독자적인 신문발행을 피하기에 이르러, 현재는 서울대학교의 공기요목탁으로 그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금년들어 창간 20주를 맞은 "대학신문"은 1주 1회 총부수 약2만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아세아 지역의 가장 권위 있는 대학신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국내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구독함은 물론 멀리 해외 각국에서도 한국에 관한 자료 또는 한국어 교재등으로 다루어 주문해 오고 있다.

금년 10월 16일 현재 859호의 지령을 쌓아올린 "대학신문"은 12개 단과대학과 교양과정부에서 뽑혀진 16명의 학생기자를 매체로 1만 2천명 서울 대학생의 생생한 호흡과 여론을 해부, 대변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계의 뉴스와

동향, 석학들의 견해, 주장, 연구업적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아카데미즘”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장을 사장, 편집국장(교수) 및 전임기자로 “데스크”를 지키게 하는 한편, 편집부, 서무부, 보급부, 광고부, 사업부를 각각두어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있고 권위 교수 5인으로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다.

“대학신문”은 단순한 대학의 기관지로서가 아니라 엄정한 중립지, 생생한 뉴스지, 그리고 지성의 여론지로 자랑스런 “대학의 기수”로 그 앞날을 다짐하고 있다.

여 백

# IX. 시 설

여 백

# 1. 위 치

본교는 서울특별시의 중심지로부터 동북쪽 낙산 밑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 주변과 서울특별시내에 6개처, 약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내에 1개처, 도합 7개처에 각기 분산위치하고 있는 이외에도 전라남도 광양군 소재 연습림을 위시하여 3개처에 연습림 또는 약초원이 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본부 중심지역에

본부,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대학원, 신문대학원,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어학연구소, 법학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본부와 인접) 의약계구역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생약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보건진료소, 학생기숙사 (정영사, 왕릉사), 한국방송통신대학, 대학신문사, 교수회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부에서 약 4km) 교육계구역에

사범대학, 가정대학,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능동 (본부에서 약 18km) 공업계구역에

공과대학, 미술대학, 교양과정부, 재외국민교육연구소,

##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본부에서 약 45km) 농업계구역에

농과대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본부에서 약 4km)에

상과대학, 경영대학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본부에서 약 1.5km)에

음악대학, 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이밖에 전라남도 광양군 및 구례군과 경기도 시흥군 및 화성군에 농과대학 연습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약학대학 약초원 및 경기도 부천군에 생약연구소의 시험장을 보유하고 하다.



## 2. 소유토지와 건물

본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 약 629,930 평, 임야 약 18,574 정보로서 이를 용도별로 구분한다면 교지 491,828 평과 534 정보, 체육장 49,000 평, 실습지 103,391 평, 약초원 22,860 평, 연습림 약 18,040 정보로 되어 있다.

특히 1970년 3월에 종합계획에 따른 새로운 종합캠퍼스의 위치로 관악산 기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에 약 1,170,000 평을 확보하여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울창한 16,361 여정보의 연습림이 전라남도 광양군 및 구례군 일대에 걸쳐 있어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건물 시설을 보면 총실수가 3,005 실, 연평이 90,955 평으로서, 이를 용도별로 살펴 본다면 사무실 수가 398 실에 연평이 5,601 여평, 강의실수가 396 실에 연평이 12,450 여평, 실험 실습실 수가 614 실에 연평이 14,895 여평, 연구실수가 1,088 실에 연평이 9,549 여평, 도서관의 실수가 87 실에 연평이 5,049 여평, 강당의 실수가 16 실에 연평이 2,067 여평, 병원(진료부분)이 실수 406 실에 병상수 480 개(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농과대학 보건진료실) 임상 의사 208 개(치과대학)에 연평 5,252 여평, 기타의 연평이 36,092 여평으로 되어 있다.

## 3. 실습장과 연습림

본교에는 약 98,069 평과 14 정보에 달하는 실습장과 18,217 여정보의 연습림을 보유하고 있다.

실습장은 이를 크게 나누어 부속농장과 부속동물사육장으로 구분되며 부속농장은 약 37,700 평으로 수도, 전작, 특용작물, 과수, 소채, 화훼포장으

로 나누어져 있고, 이외에 묘포상전이 있으며 온실, 온상기타 실험실습실을  
위시하여 제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물사육장은 약 28,000 평과 14 정보로 사료작물포장과 방목지,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우 및 한우 50 두, 돼지 20 두를 위시하여 기타 상당수  
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한편 가축병원에는 내과, 외과, 산과, X-선과 및 약국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의학과의 임상실습 및 연구시설 또는 가축의 진료에 이용되고 있다.

연습림은 4 개소에 분산되어 있고, 특히 광양연습림에는 교실, 실험실 및  
약 3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보유하여 국가의 산림자원 개발과 교  
수들의 학술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임학도들은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실습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 4. 연구 및 실험실습 기계기구

본교가 보유하고 있던 연구 및 실험실습 등을 위한 기계기구는 6.25 사변  
으로 인한 파괴와 분실 및 노후 등으로 거의 이용의 가치를 상실하여 폐기하  
였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1953년 본교가 현 위치에 복귀  
한 이후부터 비치한 것이다.

각 대학 및 기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로 만족할 수는 없  
으나 최소한의 종류와 수량을 보유하여 면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  
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 및 동 부속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선진  
제국의 대학에 비하여 그리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일은 본교에 비치하고 있는 기계기구의 상당부분이 I.C.A. 원  
조계획에 따른 Minesota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도입, Peabody 대학의 원조  
및 I.C.A. 원조 등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총액은 약 3,100,000 불에 달  
한다.

## 5. 도 서 관

본교 도서관은 부속도서관을 비롯하여 분관으로서 공학, 농학, 문리, 미

술, 법률, 교육, 상경, 약학, 음악, 의학, 치의학, 교양, 신문, 행정도서관 등 14개 분관을 설치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널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속도서관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소장도서는 915,319 권이며 이 가운데에는 부속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40,000여 권에 달하는 우리나라 이조 500년간의 귀중한 국가기록과 동양고전을 총집한 귀중한 문헌과 자료인 규장각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도서 수집상황을 보면 1971년도에는 17,649 권, 1972년도 9월까지 22,616 권을 수집하였으며, 1971년도와 1972년도에는 도서구입비 65,656,000 원으로 도서를 구입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I.C.A 원조계획에 의한 Minesota 대학과 Peabody 대학, 아세아재단들의 원조로 많은 도서가 구입되었다.

한편 학생의 도서관 이용 및 열람상황을 보면 1971년도는 입관자 522,696 명으로 열람책수는 153,503 책, 1972년도 9월까지 입관자 487,670 명으로 열람책 수는 147,010 책에 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교직원 및 기타 인사에게 열람, 대출등 도서관이용에 항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6. 박물관

본교 박물관은 국내외의 역사, 문화, 예술, 민속과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 보관 진열 전시하여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에 관람시키고 있으며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널리 사회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소장된 물품을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분 류         | 민 속 품 | 역사적유물및미술품 | 계      |
|-------------|-------|-----------|--------|
| 금 속 제 품     | 389점  | 970점      | 1,359점 |
| 옥 석 제 품     | 102   | 365       | 467    |
| 보 도 제 품     | 173   | 1,657     | 1,830  |
| 골 각 제 품     | 105   | 89        | 194    |
| 목 죽 초 제 품   | 942   | 127       | 1,069  |
| 모 피 혁 지 제 품 | 256   | 19        | 275    |
| 의 상 류       | 30    | —         | 30     |
| 서 화 류       | 43    | 503       | 546    |

|           |        |        |        |
|-----------|--------|--------|--------|
| 편 직 물 제 품 | 155    | 5      | 160    |
| 기 타       | 28     | —      | 28     |
| 합 계       | 2, 223 | 3, 735 | 5, 958 |

## 7. 부 속 병 원

본교에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부속병원을 두어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방사선과, 병리과, 임상검사과와 임상검사과 밑에 생화학검사실, 혈액검사실, 기생충검사실, 미생물검사실이 있고 중앙진료 시설 6실과 부속실 6실, 병상수는 446개가 있다.

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구강진단과, 치과방사선과, 구강외과, 치주병과,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가 있고, 중앙진료시설로 임상검사실, 수술실, 병록실을 두었고 병상수는 23개, 진료 의자수는 143대이다.

1971년도 환자진료와 세입실적을 보면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입원환자 연 인원이 135,390명에 외래환자 연인원 184,558명을 진료하였고, 81,097 만원을 세입 수납하였으며,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입원환자 1,925명, 외래환자 27,527명을 진료하여 세입수납액은 4,829 만원에 달하였다.

두 병원 다같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65년 12월 20일자 법률 제 1726호로 제정공포된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1966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제도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수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와 환자 진료에 있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여 백

## X. 서울대학교 종합건설

여 백

# 종합건설기본계획

## 1. 목 표

진리를 탐구하고 문화를 계승 창조할 영재를 길러 영광된 조국의 앞날을  
가늠하고 슬기를 모아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세계의 대학으로 지향한다.

## 2. 방 침

(1)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  
재 분산되어 있는 캠퍼스를 통합 계열화하여 의학캠퍼스 및 농학캠퍼스는  
현위치에 두고 종합캠퍼스는 새로히 관악산에 건설한다.

(2) 서울대학교 종합건설계획은 1977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3)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강화하여 점차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로 개선 발  
전시켜 전문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4) 종합건설계획의 재원은 의학계 및 농학계 캠퍼스를 제외한 국유재산  
을 매각충당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5) 교육차관으로 교육·연구용 기계기구와 도서를 연차적으로 확충 보강  
한다.

## 3. 경 위

(1) 1963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국가정책으  
로 확정

(2) 1968년 7월 19일 서울대학교 시설확충 특별회계법 제정 (유효기간  
1968~1977)

(3) 1968년 8월 17일 공대·동쪽 태릉 일대로 부지 내정

(4) 1970년 3월 16일 관악산 골프장을 중심으로 부지 확정 (1,071,801평)  
및 교육지구·공원지구 설정

(5) 1970년 4월 8일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기구 개편(건설본부, 기획위  
원회)



(6) 1970년 5월 5일 종합계획추진위원회 발족

(7) 1971년 4월 2일 기공

#### 4. 계획개요

##### 가. 이전대상기관

의과대학, 치과대학, 농과대학과 그 부속기관을 제외한 전기관

##### 나. 이전 대상인구

단위 : 명

| 계      | 학 생    | 교 수 | 직 원 | 부속학교  | 비 고 |
|--------|--------|-----|-----|-------|-----|
| 19,430 | 12,300 | 950 | 600 | 5,580 |     |

##### 다. 계획기간 : 1968~1977 (10년)

##### 라. 건설규모

단위 : 평

| 계      | 교육시설   | 지원시설   | 주거시설   | 비 고 |
|--------|--------|--------|--------|-----|
| 96,807 | 54,555 | 23,975 | 18,277 |     |

##### 마. 자금소요판단

단위 : 백만원

| 투 자 계 획   |        | 자 금 계 획      |        |
|-----------|--------|--------------|--------|
| 사 항 별     | 금 액    | 사 항 별        | 금 액    |
| 합 계       | 26,150 | 합 계          | 26,150 |
| 종 합 캠퍼스   | 18,709 | 재, 산 처 분 수 입 | 13,846 |
| 의학및농학캠퍼스  | 1,816  | 일반회계 전 입 금   | 6,622  |
| 기계기구 및 도서 | 5,625  | 교육차관 및 의원    | 5,682  |

#### 5. 단계별 건설계획

기본적인 교육시설은 1975년까지 완공하고 대강당, 박물관 등 치원시설은 1977년까지 완공한다..


##### 가. 준비단계 (1970~1971)

여 백

단계별 건설 계획도면

凡例

|        |     |            |
|--------|-----|------------|
| 建<br>築 |     | → 73年 施工   |
|        |     | → 72年 骨造完了 |
| 土<br>木 | 道路  |            |
|        | 共同溝 | 72年  73年   |
|        | 上水道 |            |
|        | 下水道 |            |



여 백

여 백

- (1) 부지 확보 (1,071,801평)
- (2) 아카데미 플랜 및 마스타 플랜 작성
- (3) 제1단계 시설물의 세부 시설 프로그램 작성
- (4) 외곽도로 우수처리 및 정지 등 기초적인 토목공사

나. 제1단계 (1972~1973)

(1) 대상기관

- 대학원, 행정·경영·신문·교육대학원
-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가정대학.
- 중앙도서관 (일부), 재외국민교육연구소의 5개기관 본부(일부), 학생회관(일부), 기숙사(일부) 및 교수아파트

(2) 이전대상인구

학생 8,600명, 교수 500명, 직원 420명, 합계 9,520명

(3) 건물면적

약 119,450m<sup>2</sup> (36,135평)

다. 제2단계 (1974~1975)

(1) 대상기관

공과대학, 약학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중앙도서관(완공), 본부(완공), 학생회관(완공), 부속학교 외 4개기관

(2) 이전대상인구

학생 3,700명, 교수 450명, 직원 180명

부속학교 5,580명

합계 9,910명

(3) 건물면적

약 146,775m<sup>2</sup> (44,398평)

라. 제3단계 (1976~1977)

지원시설

대강당, 박물관, 메인스타디움, 기숙사 등

약 53,800m<sup>2</sup> (16,274평)

## 6. 자금소요판단 (71년도 불변가격)

### 가.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연도별    |       | 72               | 73    | 74    | 75    | 76    | 77    |
|-----------------|--------|-------|------------------|-------|-------|-------|-------|-------|
|                 | 계      | 단투입   |                  |       |       |       |       |       |
| 총 계             | 26,150 | 2,702 | (2,087)<br>1,942 | 4,898 | 6,375 | 6,026 | 2,612 | 1,595 |
| 1. 종합캠퍼스        | 18,709 | 2,198 | (1,930)<br>1,785 | 4,747 | 3,907 | 3,561 | 1,257 | 1,254 |
| 건축공사            | 12,138 |       | (1,190)<br>827   | 3,393 | 2,973 | 2,841 | 1,067 | 1,036 |
| 토목공사            | 3,615  | 883   | (538)<br>716     | 608   | 639   | 381   | 171   | 218   |
| 설비공사            | 1,012  |       |                  | 518   | 197   | 297   |       |       |
| 용지기타            | 1,944  | 1,315 | (202)<br>242     | 228   | 98    | 42    | 19    |       |
| 2. 의학및농학<br>캠퍼스 | 1,816  | 504   | (157)<br>157     | 151   | 218   | 215   | 230   | 341   |
| 3. 기계기구및<br>도서  | 5,625  |       |                  |       | 2,250 | 2,250 | 1,125 |       |

( )는 72년도 예산액임.

### 나. 자금계획

| 사업별           | 연도별    |       | 72    | 73    | 74    | 75    | 76    | 77    |
|---------------|--------|-------|-------|-------|-------|-------|-------|-------|
|               | 계      | 기투입   |       |       |       |       |       |       |
| 총 계           | 26,150 | 2,702 | 1,942 | 4,899 | 6,375 | 6,026 | 2,612 | 1,595 |
| 재 산 처 분 수 입   | 13,846 | 1,674 | 1,313 | 3,858 | 2,625 | 2,514 | 899   | 963   |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 6,622  | 1,028 | 600   | 500   | 1,750 | 1,512 | 600   | 632   |
| 외 원 또 는 차 관   | 5,682  |       | 29    | 40    | 2,250 | 2,250 | 1,113 |       |
| 국 고 채         | 500    |       |       | 500   |       |       |       |       |
| 국 고 채 상 환     | △500   |       |       |       | △250  | △250  |       |       |

# 7. 사업추진현황 및 '73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제1단계계획  |        | 72년 말 진도                                      |       |                     | 73년도계획                   |       |
|------------|---|--------|---|-------|---------------------|--------------------------|-------|
|            | 사업량   | 금액     | 사업량   | 금액    | 진도(%)               | 사업량                      | 금액    |
| 합계         |   | 10,289 |   | 4,644 | 총계획대비 190%<br>45.2% |                          | 4,898 |
| 1. 종합 캠퍼스  |   | 9,402  |   | 3,988 | 42.5%               |                          | 4,747 |
| 가. 부지 확보   | 학교부지<br>1,071,801평  | 1,668  | 학교부지<br>1,071,801평                            | 1,668 | 100%                |                          |       |
| 나. 토목공사    |   | 1,695  |   | 1,087 | 64.1%               |                          | 608   |
| 정지 및 골재 생산 | 정지<br>260,000m <sup>2</sup><br>골재<br>37,600m <sup>3</sup> |        | 194,000m <sup>2</sup><br>37,600m <sup>3</sup> |       |                     | 6,600m <sup>2</sup>      |       |
| 관통 및 순환 도로 | 7km<br>상수도<br>4,100m                                      | 496    | 6m<br>상<br>1,500m                             | 424   | 85.5%               | 1km<br>상<br>2,600m       | 72    |
| 상·하수도      | 하수도<br>5,138m   | 315    | 하<br>2,338m                                   | 148   | 47.0%               | 하<br>2,800m              | 167   |
| 오수처리       |   | 42     |   | 23    | 54.8%               |                          | 19    |
| 공동구        | 2,223m  | 317    | 899m  | 147   | 46.4%               | 1,224m                   | 170   |
| 운동장        |   | 50     |   |       |                     |                          | 50    |
| 조경 기타      |   | 80     |   |       |                     |                          | 80    |
| 다. 건축공사    |   | 4,887  |   | 829   | 17.0%               |                          | 3,391 |
| 인문관        | 14,238m <sup>2</sup>                                      | 503    | 골조공사  | 80    | 15.9%               | 골조 및 건물<br>물 완성          | 423   |
| 사회관        | 14,082  | 498    | "   | 78    | 15.7%               | "                        | 420   |
| 교육관        | 14,050  | 496    | "   | 80    | 16.1%               | "                        | 416   |
| 물리지학관      | 20,817m <sup>2</sup>                                      | 847    | 골조 완성   | 132   | 15.6%               | 골조 및 건물<br>물 완성          | 715   |
| 화학관        | 10,129"   | 398    | "   | 89    | 22.4%               | "                        | 309   |
| 생물관        | 6,684"  | 265    | "   | 55    | 20.8%               | "                        | 210   |
| 도서관        | 28,343"   | 542    | 기초공사  | 100   | 18.5%               | 골체 완성<br>및 1·2층<br>마감 완성 | 442   |
| 본부         | 9,900"  | 328    | 기초 및 지하실                                      | 70    | 21.3%               | 골체 완성<br>및 3층<br>마감 완    | 258   |



|               |                  |     |        |     |       |              |     |
|---------------|------------------|-----|--------|-----|-------|--------------|-----|
| 학 생 회 관       | 11,000"          | 220 | 골조골체공사 | 63  | 28.6% |              | 41  |
| 파 위 플 랜 트     | 3,154"           | 123 | "      | 82  | 66.7% | 1층이하<br>총완성  |     |
| 기숙사·교수아<br>파트 | 17,125"          | 667 |        |     |       | 건물완성         | 157 |
| 라. 설 비 공 사    |                  | 518 |        |     |       |              | 518 |
| 옥 외 전 기 시 설   | 발·변전, 교환<br>및 기타 | 270 |        |     |       |              | 270 |
| 옥 외 기 계 시 설   | 난방배관기타           | 248 |        |     |       |              | 248 |
| 마. 설 계 및 기 타  |                  | 634 |        | 404 | 63.7% |              | 230 |
| 2. 의 학 캠퍼 스   | 실험실외각종           | 484 |        | 362 | 74.8% | 실험실일<br>실부완성 | 122 |
| 3. 농 학 캠퍼 스   | 도서관외각종           | 403 |        | 294 | 73.0% | 관기<br>초공사    | 29  |

## 8. 아카데미 플랜

### 가. 교육기구의 종합화

#### 1) 이원적인 기구조직

기본과학부——인문, 사회, 자연과학

전문대학——공대, 법대, 의대, 농대 등

#### 2) 교수의 통합

모든 교수는 기본과학별 조직과 전문영역별 조직에 따라 통합

#### 3) 대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

대학원교육은 대학교육의 연장된 형태로 하며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 지향

#### 4) 학과조직의 세분화 지양

대학원~전문화, 특수화

대 학~광역의 분류

#### 5) 유사과학의 통합

예 : (물리대 물리학과  
공 대 응용물리학과)

### 나. 교육 운영의 종합화

#### 1) 학생 규모

대학원——1,700명——→3,000명

대 학—현수준(12,000명)

2) 학생 선발

학과별 → 학문계열별 (인문, 사회, 자연 등)

3) 학과 정원

엄격한 정원제 → 학과 정원에 융통성

4) 교과 과정

○ 종합적 운영으로 강좌의 중복 회피

○ 졸업학점은 160학점 → 140학점

다. 교 수

1) 직위 구분

조교수—2년간 계약제

부교수—전임교수

정교수— "

2) 교수 1인 주당 평균 수업시간—현수준

3) 연구제도 및 연구기금의 확대

라. 학생지도 및 후생 복지

1) 기숙사 시설의 확충

700명 → 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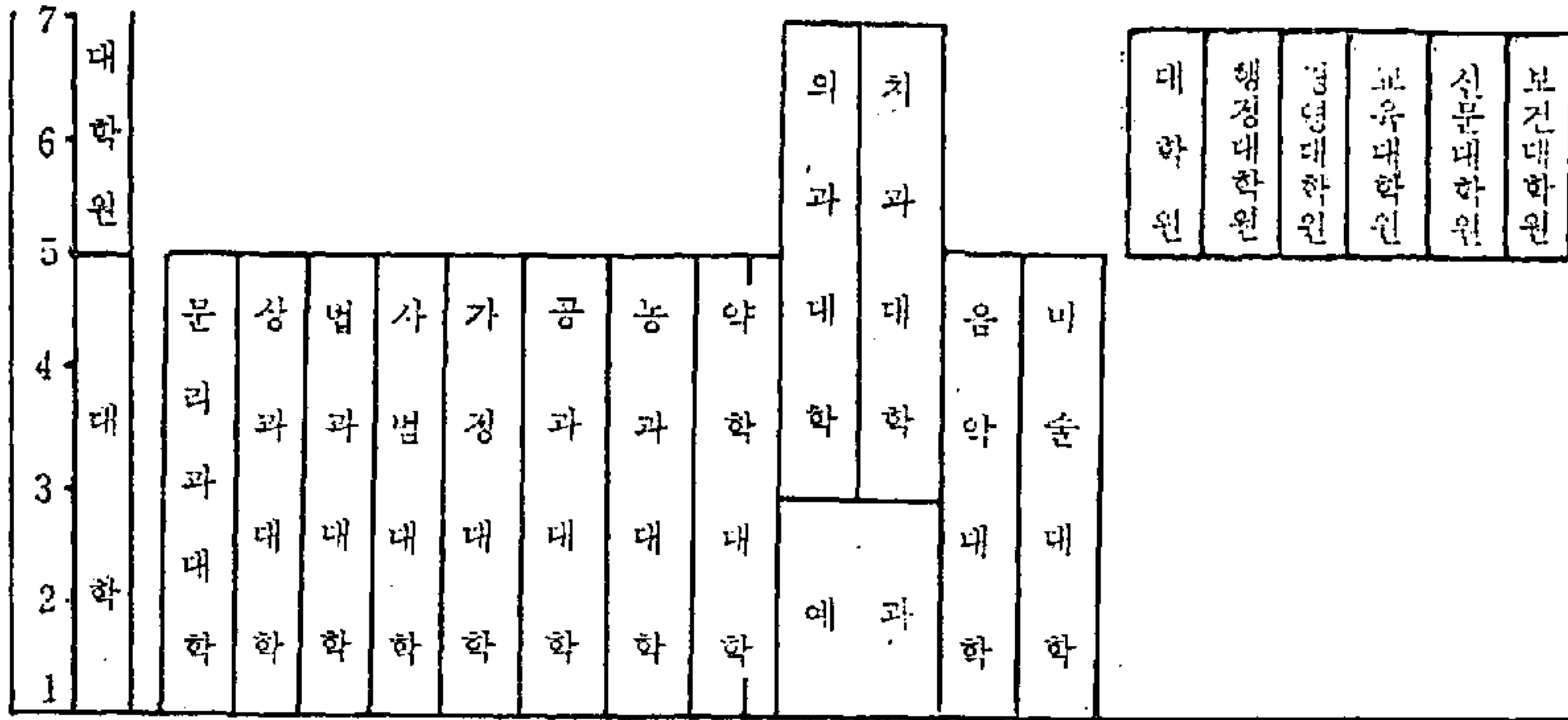
2) 후생시설 및 장학, 포상제도의 확충

마. 지원 시설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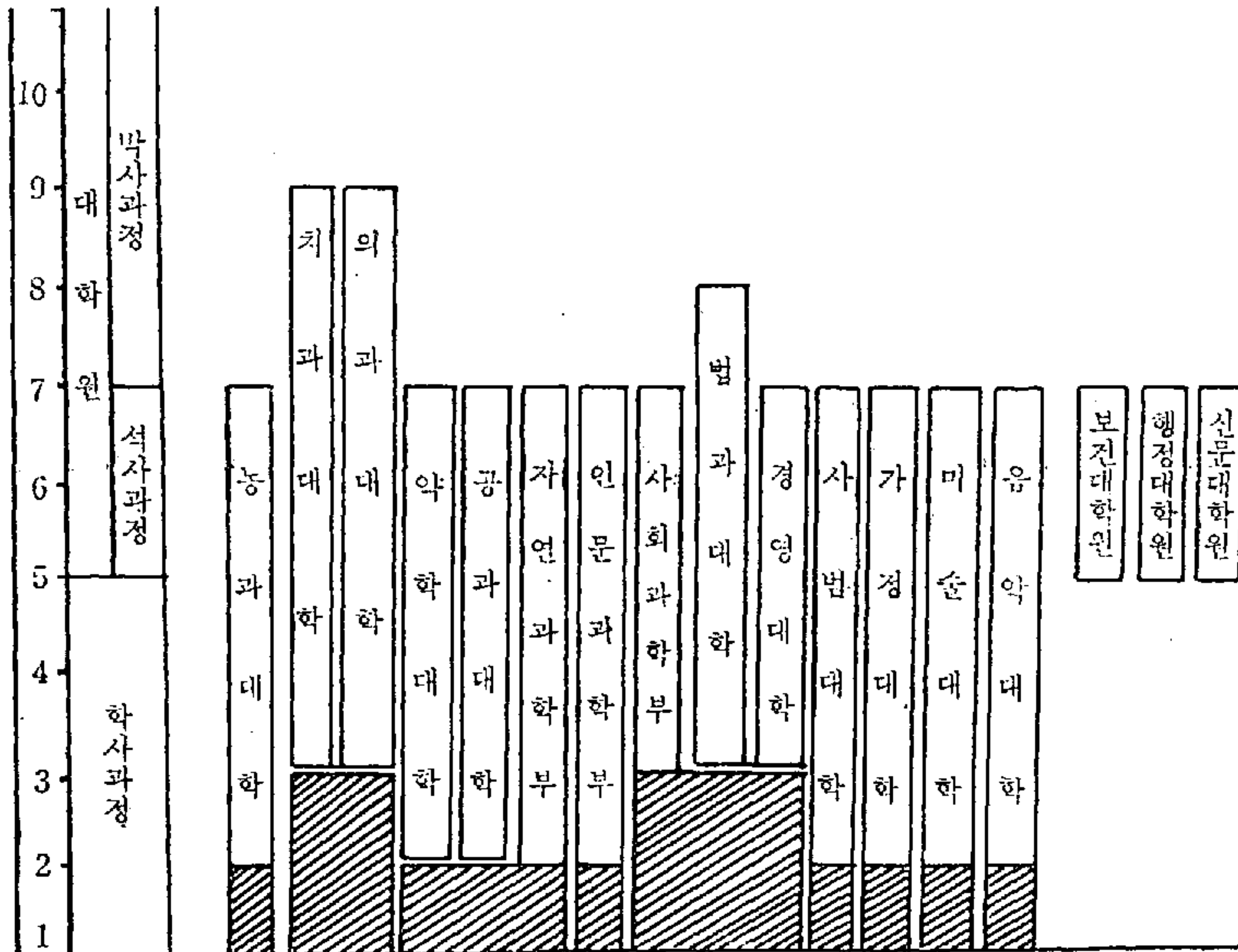
중앙도서관, 규장각도서관, 대강당, 교수회관, 학생회관, 박물관, 체육관, 음악당, 교수주택 등

# 교육기구조표

## 현재



## 계획



여 백

# XI. 부 표

여 백



여 백



여 백

## 2. 서울대학교 개요

### 1. 기 구

| 구분 | 본부 | 대학원 | 대학 | 교양<br>과정부 | 부속<br>학교 | 직할<br>기관 | 부속<br>연구소 | 외곽<br>시설 | 부속<br>병원 | 방송<br>통신<br>대학 |
|----|----|-----|----|-----------|----------|----------|-----------|----------|----------|----------------|
| 합계 | 1  | 6   | 12 | 1         | 4        | 8        | 29        | 5        | 2        | 1              |

### 2. 직 원

| 구분 | 정 원   |       |     |    |       |     |     | 기 타 직 |          |          |          |     |
|----|-------|-------|-----|----|-------|-----|-----|-------|----------|----------|----------|-----|
|    | 소계    | 총장    | 부총장 | 교원 | 일반직   | 별정직 | 고용원 | 소계    | 명예<br>교수 | 임시<br>조교 | 시간<br>강사 |     |
| 합계 | 3,351 | 2,416 | 1   | 1  | 1,286 | 659 | 1   | 468   | 935      | 16       | 70       | 849 |

### 3. 학 생

| 구분   | 학 생 정 원 |                |                |                |                |
|------|---------|----------------|----------------|----------------|----------------|
|      | 계       | 73학년도<br>(1학년) | 72학년도<br>(2학년) | 71학년도<br>(3학년) | 70학년도<br>(4학년) |
| 합계   | 20,841  | 6,442          | 6,033          | 4,836          | 3,530          |
| 대학   | 12,850  | 3,400          | 3,370          | 3,090          | 2,990          |
| 대학원  | 2,501   | 1,392          | 1,013          | 96             | —              |
| 부속학교 | 5,490   | 1,650          | 1,650          | 1,650          | 540<br>(4~6학년) |

| 구분  | 72학년도 제2학기 등록상황 |       |       |       |       | 졸업생(72년<br>후기누계) |       |       |
|-----|-----------------|-------|-------|-------|-------|------------------|-------|-------|
|     | 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학사               | 석사    | 박사    |
| 합계  | 14,223          | 4,449 | 4,143 | 2,916 | 2,715 | 47,988           | 5,304 | 1,403 |
| 대학  | 12,452          | 3,518 | 3,362 | 2,857 | 2,715 | 47,988           | —     | —     |
| 대학원 | 1,771           | 931   | 781   | 59    | —     | —                | 5,304 | 1,403 |

#### 4. 기본 재산

| 건물시설     | 토지시설                    |                        |                     |                     |                     |                         |
|----------|-------------------------|------------------------|---------------------|---------------------|---------------------|-------------------------|
|          | 계                       | 교지                     | 체육장                 | 시험및<br>실습장          | 약초원                 | 연습림                     |
| 97,757 평 | 55,821,986 <sup>평</sup> | 1,535,593 <sup>평</sup> | 45,000 <sup>평</sup> | 98,069 <sup>평</sup> | 22,860 <sup>평</sup> | 54,120,464 <sup>평</sup> |

#### 5. 재 정

| 년도별<br>회계별 |   | 72 회 계 년 도 (예산) |  |               |  |
|------------|---|-----------------|--|---------------|--|
|            |   | 세 입             |  | 세 출           |  |
| 합          | 계 | 4,299,255,000   |  | 6,016,204,000 |  |
| 일반회계       | 계 | 375,466,000     |  | 2,050,427,000 |  |
| 부속병원특별회계   | 계 | 1,836,789,000   |  | 1,878,777,000 |  |
| 시설확충특별회계   | 계 | 2,087,000,000   |  | 2,087,000,000 |  |

| 년도별<br>회계별 |   | 71 회 계 년 도    |               |               |               |
|------------|---|---------------|---------------|---------------|---------------|
|            |   | 세 입           |               | 세 출           |               |
|            |   | 예 산           | 결 산           | 예 산           | 결 산           |
| 합          | 계 | 3,319,270,150 | 3,531,389,352 | 4,922,951,000 | 4,768,243,452 |
| 일반회계       | 계 | 244,030,150   | 229,177,571   | 1,696,650,000 | 1,693,836,194 |
| 부속병원특별회계   | 계 | 1,586,840,000 | 1,871,802,671 | 1,737,901,000 | 1,676,175,632 |
| 시설확충특별회계   | 계 | 1,488,400,000 | 1,430,409,110 | 1,488,400,000 | 1,398,231,626 |

여 백

### 3. 기 관 현 황

72 년도 2 학기

| 기<br>관<br>별 | 구<br>분      |             | 설<br>립<br>연<br>월<br>일 | 학<br>과<br>수 | 학<br>생 |                              | 직<br>원<br>(정원) |        |             |             |               | 예<br>산        |               |
|-------------|-------------|-------------|-----------------------|-------------|--------|------------------------------|----------------|--------|-------------|-------------|---------------|---------------|---------------|
|             | 학<br>과<br>명 | 학<br>원<br>명 |                       |             | 정<br>원 | 현<br>원<br>72.<br>기<br>등<br>록 | 계              | 교<br>원 | 일<br>반<br>직 | 별<br>정<br>직 | 고<br>용<br>원   | 세<br>입        | 세<br>출        |
|             |             |             |                       |             |        |                              |                |        |             |             |               |               |               |
| 합           | 계           |             |                       |             | 20,256 | 19,672                       | 2,416          | 1,288  | 659         | 1           | 468           | 4,299,255,000 | 5,974,216,000 |
|             |             |             |                       |             |        |                              |                |        |             |             |               | 375,466,000   | 2,050,427,000 |
| 본           | 부           | 46. 8. 22   | —                     | —           | —      | —                            | 160            | 14     | 108         | 1           | 37            | 153,717,240   | 233,628,000   |
| 대           | 학           | 46. 8. 22   | 111                   | 1,116       | 994    | 10                           | 1              | 6      | —           | 3           | 6,596,800     | 13,733,000    |               |
| 경           | 영           | 65. 11. 24  | 1                     | 240         | 190    | 11                           | 6              | 4      | —           | 1           | 1,227,200     | 8,522,000     |               |
| 교           | 육           | 63. 4. 12   | 1                     | 200         | 163    | 17                           | 10             | 4      | —           | 3           | 1,038,400     | 13,749,000    |               |
| 보           | 건           | 59. 1. 13   | 1                     | 140         | 100    | 28                           | 19             | 4      | —           | 5           | 755,200       | 24,077,000    |               |
| 신           | 문           | 67. 12. 14  | 1                     | 120         | 92     | 19                           | 10             | 6      | —           | 3           | 566,400       | 16,514,000    |               |
| 행           | 정           | 59. 1. 13   | 2                     | 270         | 232    | 34                           | 20             | 7      | —           | 7           | 1,416,000     | 35,688,000    |               |
| 공           | 과           | 46. 8. 22   | 18                    | 3,200       | 3,149  | 237                          | 142            | 33     | —           | 62          | —             | 221,814,000   |               |
| 능           | 과           | 46. 8. 22   | 14                    | 1,340       | 1,269  | 207                          | 123            | 28     | —           | 56          | 6,988,600     | 190,075,000   |               |
| 문           | 리           | 46. 8. 22   | 31                    | 2,420       | 2,484  | 216                          | 164            | 20     | —           | 32          | —             | 197,771,000   |               |
| 미           | 술           | 53. 4. 20   | 3                     | 280         | 271    | 41                           | 27             | 8      | —           | 6           | —             | 36,936,000    |               |
| 법           | 과           | 46. 8. 22   | 2                     | 640         | 660    | 52                           | 30             | 10     | —           | 12          | —             | 41,326,000    |               |
| 사           | 법           | 46. 8. 22   | 8                     | 1,620       | 1,504  | 129                          | 98             | 14     | —           | 17          | —             | 127,583,000   |               |
|             | 사           | 46. 8. 22   | 21(학급)                | 1,260       | 1,275  | 61                           | 51             | 4      | —           | 6           | 13,619,760    | 41,870,000    |               |
|             | 사           | 46. 8. 22   | 21( " )               | 1,470       | 1,442  | 52                           | 44             | 3      | —           | 5           | 12,799,200    | 33,294,000    |               |
|             | 사           | 68. 10. 17  | 24( " )               | 1,680       | 1,661  | 53                           | 46             | 3      | —           | 4           | 14,604,800    | 33,016,000    |               |
|             | 사           | 46. 8. 22   | 18(학급)                | 1,080       | 1,071  | 32                           | 25             | 2      | —           | 5           | —             | 20,270,000    |               |
| 상           | 과           | 46. 8. 22   | 4                     | 780         | 818    | 69                           | 45             | 13     | —           | 11          | —             | 57,114,000    |               |
| 약           | 학           | 50. 9. 30   | 2                     | 320         | 318    | 49                           | 34             | 7      | —           | 8           | —             | 58,821,000    |               |
| 음           | 약           | 53. 4. 20   | 4                     | 480         | 479    | 58                           | 44             | 7      | —           | 7           | —             | 58,689,000    |               |
| 의           | 과           | 46. 8. 22   | 2                     | 840         | 829    | 187                          | 148            | 13     | —           | 28          | —             | 191,149,000   |               |
| 치           | 과           | 46. 8. 22   | 1                     | 400         | 324    | 91                           | 57             | 23     | —           | 11          | —             | 73,374,000    |               |
| 가           | 정           | 68. 12. 24  | 3                     | 360         | 347    | 20                           | 13             | 5      | —           | 2           | —             | 18,609,000    |               |
| 교           | 양           | 67. 12. 24  | (58)                  | —           | —      | 104                          | 81             | 15     | —           | 8           | —             | 84,156,000    |               |
| 한           | 국           | 72. 3. 9    | 5                     | 12,000      | 11,172 | 19                           | —              | 17     | —           | 2           | 147,600,000   | 75,901,000    |               |
| 부           | 속           | 46. 8. 22   | —                     | —           | —      | 65                           | 2              | 35     | —           | 28          | —             | 44,803,000    |               |
| 부           | 속           | 46. 8. 22   | —                     | —           | —      | 3                            | —              | 1      | —           | 2           | —             | 2,802,000     |               |
| 법           | 학           | 67. 1. 1    | —                     | —           | —      | 9                            | 6              | 1      | —           | 2           | —             | 6,592,000     |               |
| 생           | 약           | 46. 8. 22   | —                     | —           | —      | 20                           | 11             | 4      | —           | 5           | —             | 23,711,000    |               |
| 신           | 문           | 62. 12. 31  | —                     | —           | —      | —                            | —              | —      | —           | —           | —             | 4,948,000     |               |
| 어           | 학           | 63. 1. 1    | —                     | —           | —      | 14                           | 9              | 3      | —           | 2           | —             | 17,170,000    |               |
| 학           | 생           | 62. 2. 17   | —                     | —           | —      | 15                           | 9              | 2      | —           | 4           | —             | 11,213,000    |               |
| 한           | 국           | 61. 4. 1    | —                     | —           | —      | —                            | —              | —      | —           | —           | —             | 4,717,000     |               |
| 의           | 대           | —           | —                     | —           | —      | 325                          | —              | 242    | —           | 83          | 1,744,967,000 | 1,744,967,000 |               |
| 치           | 대           | —           | —                     | —           | —      | —                            | —              | —      | —           | —           | 91,822,000    | 91,822,000    |               |
| 보           | 건           | —           | —                     | —           | —      | 5                            | —              | 5      | —           | —           | —             | —             |               |
| 재           | 외           | —           | —                     | —           | —      | 8                            | 5              | 2      | —           | 1           | —             | —             |               |
| 시           | 특           | —           | —                     | —           | —      | —                            | —              | —      | —           | —           | 2,087,000,000 | 2,087,000,000 |               |

여 백

여 백

## 4. 학생정원표(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 1. 대학 학생 정원표

| 학 년<br>모집학년도<br>대학별 | 합 계              | 1 학년           | 2 학년           | 3 학년           | 4 학년           |
|---------------------|------------------|----------------|----------------|----------------|----------------|
|                     |                  | 1973           | 1972           | 1971           | 1970           |
| 합계 { 모집정원<br>학생정원   | 12,330<br>12,850 | 3,140<br>3,400 | 3,110<br>3,370 | 3,090<br>3,090 | 2,990<br>2,990 |
| 공과대학                | 3,180            | 780            | 800            | 800            | 800            |
| 농과대학                | 1,410            | 390            | 360            | 340            | 320            |
| 문리과대학               | 2,420            | 755            | 745            | 485            | 475            |
| 미술대학                | 280              | 70             | 70             | 70             | 70             |
| 법과대학                | 640              | 160            | 160            | 160            | 160            |
| 사범대학                | 1,630            | 410            | 410            | 410            | 400            |
| 상과대학                | 780              | 195            | 195            | 195            | 195            |
| 약학대학                | 320              | 80             | 80             | 80             | 80             |
| 음악대학                | 490              | 130            | 120            | 120            | 120            |
| 의과대학                | 900              | 240            | 240            | 240            | 180            |
| 치과대학                | 400              | 100            | 100            | 100            | 100            |
| 가정대학                | 360              | 90             | 90             | 90             | 90             |



## 2. 대학원 학생 정원표

| 학 년<br>모집학년도 |      | 합 계   | 1 학년  | 2 학년  | 3 학년 |
|--------------|------|-------|-------|-------|------|
|              |      |       | 1973  | 1972  | 1971 |
| 대학원별         |      |       |       |       |      |
| 합 계          |      | 2,501 | 1,392 | 1,013 | 96   |
| 대<br>학<br>원  | 소 계  | 1,506 | 882   | 528   | 96   |
|              | 석사과정 | 1,129 | 704   | 425   | —    |
|              | 박사과정 | 377   | 178   | 103   | 96   |
| 경영대학원        |      | 240   | 120   | 120   | —    |
| 교육대학원        |      | 200   | 100   | 100   | —    |
| 보건대학원        |      | 140   | 70    | 70    | —    |
| 신문대학원        |      | 120   | 60    | 60    | —    |
| 행정대학원        |      | 235   | 100   | 135   | —    |
| 환경대학원        |      | 60    | 60    | —     | —    |

## 3. 부속학교 학생정원표

| 학 년<br>모집학년도     |       | 합 계   | 1 학년  | 2 학년  | 3 학년  | 4 학년 | 5 학년 | 6 학년 |
|------------------|-------|-------|-------|-------|-------|------|------|------|
|                  |       |       | 1973  | 1972  | 1971  | 1970 | 1969 | 1968 |
| 학교별              |       |       |       |       |       |      |      |      |
| 합 계              |       | 5,490 | 1,650 | 1,650 | 1,650 | 180  | 180  | 180  |
| 사<br>대<br>부<br>속 | 고등학교  | 1,260 | 420   | 420   | 420   | —    | —    | —    |
|                  | 중학교   | 1,470 | 490   | 490   | 490   | —    | —    | —    |
|                  | 여자중학교 | 1,680 | 560   | 560   | 560   | —    | —    | —    |
|                  | 국민학교  | 1,080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5. 입학 상황표

### 1. 대학 입학 상황표

(73 학년도)

| 구분<br>대학별 | 모집정원  | 지원자    | 합격자   | 비율  | 비고 |
|-----------|-------|--------|-------|-----|----|
| 계         | 3,140 | 10,974 | 3,135 | 3.5 |    |
| 공과대학      | 760   | 1,789  | 777   | 2.3 |    |
| 농과대학      | 390   | 1,385  | 388   | 3.6 |    |
| 문리과대학     | 755   | 2,366  | 755   | 3.1 |    |
| 미술대학      | 70    | 685    | 70    | 9.8 |    |
| 법과대학      | 160   | 607    | 160   | 3.8 |    |
| 사범대학      | 410   | 2,660  | 410   | 6.5 |    |
| 상과대학      | 195   | 564    | 195   | 2.9 |    |
| 약학대학      | 80    | 143    | 80    | 1.8 |    |
| 음악대학      | 130   | 399    | 130   | 3.1 |    |
| 의과대학      | 80    | 198    | 80    | 2.5 |    |
| 가정대학      | 90    | 178    | 90    | 2.0 |    |

### 2. 대학원 입학 상황표

(73 학년도)

| 구분<br>대학원별         | 모집정원       | 지원자        | 합격자        | 비율         | 비고 |
|--------------------|------------|------------|------------|------------|----|
| 계                  | 1,392      | 2,163      | 1,232      | 1.5        |    |
| 대학원 { (석사)<br>(박사) | 704<br>178 | 804<br>161 | 615<br>109 | 1.1<br>0.9 |    |
| 경영대학원              | 120        | 254        | 120        | 2.1        |    |
| 교육대학원              | 100        | 325        | 100        | 3.1        |    |
| 보건대학원              | 70         | 97         | 70         | 1.4        |    |
| 신문대학원              | 60         | 88         | 60         | 1.4        |    |
| 행정대학원              | 100        | 291        | 100        | 2.9        |    |
| 환경대학원              | 60         | 143        | 미정         |            |    |

## 6. 재학생통계표(대학, 대학원)

(72학년도 2학기)

| 구 분<br>대 학 별 | 합 계<br>(가+나) | (가) 정 규 |       |       |       |       | (나) 위탁<br>및 청강<br>연구 생 |
|--------------|--------------|---------|-------|-------|-------|-------|------------------------|
|              |              | 소계      | 1 학년  | 2 학년  | 3 학년  | 4 학년  |                        |
| 총 계          | 13,752       | 13,547  | 4,239 | 3,807 | 2,784 | 2,717 | 205                    |
| 합계(대 학)      | 12,107       | 12,033  | 3,459 | 3,122 | 2,735 | 2,717 | 74                     |
| 공 과 대 학      | 2,999        | 2,966   | 850   | 795   | 708   | 613   | 33                     |
| 농 과 대 학      | 1,232        | 1,232   | 332   | 280   | 296   | 324   | —                      |
| 문 리 과 대 학    | 2,457        | 2,429   | 793   | 726   | 439   | 471   | 28                     |
| 미 술 대 학      | 273          | 273     | 67    | 71    | 65    | 70    | —                      |
| 법 과 대 학      | 681          | 677     | 164   | 153   | 170   | 190   | 4                      |
| 사 범 대 학      | 1,399        | 1,399   | 437   | 326   | 314   | 322   | —                      |
| 상 과 대 학      | 869          | 860     | 202   | 203   | 198   | 257   | 9                      |
| 약 학 대 학      | 318          | 318     | 88    | 78    | 72    | 80    | —                      |
| 음 악 대 학      | 503          | 503     | 124   | 123   | 121   | 135   | —                      |
| 의 과 대 학      | 784          | 784     | 230   | 190   | 186   | 178   | —                      |
| 치 과 대 학      | 329          | 329     | 81    | 92    | 79    | 77    | —                      |
| 가 정 대 학      | 263          | 263     | 91    | 85    | 87    | —     | —                      |
| 합 계(대학원)     | 1,645        | 1,514   | 780   | 685   | 49    | —     | 131                    |
| 대 학 원        | 853          | 766     | 396   | 321   | 49    | —     | 87                     |
| 경 영 대 학 원    | 204          | 170     | 82    | 88    | —     | —     | 34                     |
| 교 육 대 학 원    | 167          | 167     | 85    | 82    | —     | —     | —                      |
| 보 건 대 학 원    | 108          | 107     | 58    | 49    | —     | —     | 1                      |
| 신 문 대 학 원    | 93           | 84      | 50    | 34    | —     | —     | 9                      |
| 행 정 대 학 원    | 220          | 220     | 109   | 111   | —     | —     | —                      |

여 백



여 백

여 백

## 2. 석사학위 수여자 통계

| 구분     | 연도 |    | 19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계   |
|--------|----|----|------|----|----|----|----|----|----|----|----|----|----|----|----|----|----|----|----|----|----|----|----|----|----|----|-----|
|        | 계  | 90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계  |     |
| 문학석사   | 20 | 9  | 7    | 4  | 4  | 3  | 1  | 10 | 16 | 16 | 16 | 6  | 19 | 13 | 33 | 24 | 29 | 49 | 68 | 45 | 54 | 39 | 39 | 43 | 54 | 50 | 651 |
| 정치학"   |    |    |      |    | 2  |    |    | 1  | 7  | 7  | 7  | 6  | 7  | 9  | 11 | 3  | 6  | 7  | 14 | 5  | 8  | 4  | 4  | 3  | 6  | 7  | 117 |
| 법학"    | 6  | 1  |      | 2  | 3  |    | 5  | 8  | 14 | 11 | 11 | 12 | 18 | 11 | 11 | 14 | 6  | 7  | 15 | 29 | 25 | 14 | 28 | 17 | 29 | 11 | 286 |
| 상학"    |    |    |      |    |    |    |    | 2  | 2  | 1  | 4  | 1  | 4  | 1  | 4  | 2  | 2  | 4  | 7  | 1  | 8  | 1  | 2  | 1  | —  | —  | 36  |
| 경제학"   | 4  | 4  |      | 1  | 5  | 4  | 1  | 5  | 12 | 3  | 13 | 12 | 7  | 7  | 13 | 12 | 3  | 6  | 7  | 12 | 7  | 3  | 1  | 2  | 9  | 7  | 136 |
| 미술학"   |    |    |      |    | 3  |    |    | 2  | 2  |    |    | 2  | 2  |    | 2  | 3  | 3  | 1  | 2  | 3  | 3  | 1  | 2  | 4  | 8  | 11 | 47  |
| 음악"    |    |    |      |    |    |    |    | 2  | 2  | 2  | 1  | 2  | 1  | 1  | 1  | 1  | 2  | 1  | 8  | 4  | 5  | 8  | 6  | 2  | 4  | 17 | 67  |
| 이학"    | 4  | 4  |      | 1  | 7  |    | 10 | 6  | 12 | 18 | 13 | 13 | 13 | 17 | 17 | 26 | 25 | 18 | 19 | 15 | 23 | 24 | 13 | 18 | 20 | 27 | 333 |
| 공학"    | 3  | 6  | 1    | 3  | 4  | 6  | 5  | 6  | 21 | 10 | 10 | 12 | 12 | 19 | 10 | 15 | 14 | 24 | 20 | 26 | 27 | 17 | 11 | 20 | 29 | 38 | 347 |
| 가정학"   |    |    |      |    |    |    |    |    |    |    |    |    |    |    |    |    |    |    | 4  | 1  | 2  |    | 1  | 3  | 5  | 2  | 18  |
| 농학"    |    |    |      |    |    |    |    | 10 | 6  | 8  |    | 6  | 9  | 12 | 12 | 14 | 12 | 10 | 18 | 17 | 25 | 17 | 17 | 12 | 22 | 14 | 229 |
| 수의학"   |    |    |      |    | 1  |    | 1  | 1  | 3  | 1  | 2  | 1  | 2  | 2  | 2  | 1  | 3  | 3  | 4  | 4  | 2  | 4  | 3  | 3  | 1  | —  | 40  |
| 의학"    | 57 | 26 | 3    | 2  | 7  | 1  | 6  | 17 | 12 | 32 | 12 | 35 | 35 | 35 | 53 | 61 | 52 | 31 | 31 | 51 | 42 | 48 | 52 | 58 | 24 | 30 | 766 |
| 치의학"   |    |    |      |    |    |    |    | 2  | 3  | 4  | 3  | 3  | 4  | 9  | 3  | 3  | 13 | 19 | 12 | 10 | 19 | 23 | 26 | 24 | 12 | 22 | 208 |
| 약학"    |    |    |      |    |    | 2  | 2  | 6  | 4  | 4  | 4  | 2  | 8  | 8  | 3  | 3  | 3  | 7  | 9  | 6  | 10 | 9  | 6  | 5  | 15 | 6  | 117 |
| 교육"    |    |    |      |    |    |    |    |    |    |    |    |    |    |    |    |    |    |    | 20 | 34 | 22 | 36 | 36 | 59 | 71 | 65 | 343 |
| 보건학"   |    |    |      |    |    |    |    |    |    |    |    |    | 11 | 31 | 30 | 4  | 14 | 49 | 38 | 45 | 78 | 35 | 50 | 48 | 56 | 44 | 455 |
| 행정학"   |    |    |      |    |    |    |    |    |    |    |    |    |    | 87 | 73 | 73 | 78 | 88 | 66 | 78 | 74 | 74 | 13 | 80 | 60 | 60 | 890 |
| 체육학"   |    |    |      |    |    |    |    |    |    |    |    |    |    |    |    |    |    |    | 2  | 1  | 1  | 3  | 66 | 2  | 4  | 2  | 14  |
| 경영학"   |    |    |      |    |    |    |    |    |    |    |    |    |    |    |    |    |    |    |    | 66 | 78 | 29 | 25 | 28 | 39 | 47 | 168 |
| 간호학"   |    |    |      |    |    |    |    |    |    |    |    |    |    |    |    |    |    |    |    |    |    | 2  |    |    |    | 1  | 4   |
| 도시및계획학 |    |    |      |    |    |    |    |    |    |    |    |    |    |    |    |    |    |    |    |    |    |    |    | 10 | 13 | 9  | 32  |



### 3. 박사학위 수여자 통계

| 연별<br>학과별 | 1952 |    |    |    |    |    |    |    |    |     |      |      | 계    |      |      |      |      |      |      |      |                |
|-----------|------|----|----|----|----|----|----|----|----|-----|------|------|------|------|------|------|------|------|------|------|----------------|
|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 계         | 6    | 6  | 14 | 5  | 3  | 6  | 16 | 23 | 45 | 62  | 89   | 93   | 111  | 120  | 155  | 141  | 130  | 118  | 118  | 142  | 1,403<br>(265) |
| 공학박사      | 1    |    |    |    |    |    |    |    |    |     | 1    | 1    |      | 2    | 4    | 6    | 11   | 9    | 8    | 16   | 59<br>(2)      |
| 농학 "      |      |    | 1  |    |    |    |    | 1  |    | 2   | 3    | 4    | 2    | 4    | 6    | 9    | 5    | 5    | 5    | 8    | 55<br>(2)      |
| 문학 "      | 2    |    | 2  | 2  |    | 1  |    |    |    | 3   | 1    |      | 3    | 3    | 3    | 9    | 1    | 1    | 3    | 2    | 32             |
| 철학 "      |      |    |    |    |    |    |    | 2  |    |     |      |      | 2    | 2    | 2    | 1    | —    | 1    | —    | 2    | 10<br>(1)      |
| 이학 "      | 3    |    |    | 1  |    |    |    | 2  |    | 1   | 2    | 1    | 8    | 5    | 7    | 4    | 10   | 10   | 2    | 4    | 61<br>(5)      |
| 법학 "      |      |    |    |    |    |    |    |    | 1  | 1   | 1    |      | (1)  |      | (1)  | 4    | 3    | 4    | 1    | 3    | 21<br>(1)      |
| 경제학 "     |      |    |    |    |    |    |    | 1  |    | 1   |      | 1    |      |      |      | 4    | 4    | 1    | 2    | 3    | 17<br>(1)      |
| 의학 "      | 1    |    | 11 | 2  | 3  | 6  | 15 | 18 | 43 | 53  | 77   | 84   | 96   | 107  | 128  | 98   | 83   | 83   | 92   | 99   | 1,101<br>(249) |
| 약학 "      |      |    |    |    |    |    |    |    |    | (5) | (13) | (22) | (15) | (26) | (28) | (19) | (28) | (25) | (33) | (33) | 39<br>(4)      |
| 수의학 "     |      |    |    |    |    |    |    |    |    | 1   | 3    | 2    | 3    | 2    | 1    | 5    | 11   | 4    | 4    | 4    | 8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1    | 1    | 2    | —    | 2    | 1    |                |

( )는 박사과정 수료자

4. 명예 박사학위 수여자 통계

| 연분<br>학기별 | 19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계  |
|-----------|------|----|----|----|----|----|----|----|----|----|----|----|----|----|----|----|----|----|----|----|----|----|----|----|----|
|           | 계    | 2  | 1  | 2  |    | 1  | 1  |    | 2  | 5  | 3  | 2  | 3  | 2  | 10 | 1  | 1  | 6  | 4  | 4  | 6  | 3  | 6  | 3  | 2  |
| 공학박사      |      |    |    |    |    |    |    |    |    |    |    |    |    | 1  |    |    |    | 1  |    |    |    |    |    |    | 3  |
| 문학        |      |    |    |    |    |    |    |    | 1  |    |    |    |    |    |    |    |    |    |    |    |    | 1  |    |    | 6  |
| 의학        |      |    |    |    |    |    |    |    |    |    |    |    |    |    |    | 1  |    |    |    | 2  |    |    |    |    | 6  |
| 농학        |      |    |    |    |    |    |    |    |    |    |    |    |    | 1  |    |    |    |    |    |    | 1  |    | 1  |    | 4  |
| 의학        |      |    |    |    |    |    |    |    |    |    |    |    |    |    |    |    |    |    | 1  |    |    |    |    |    | 1  |
| 천문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학        |      |    |    |    |    |    |    |    |    |    |    |    |    | 8  | 1  |    |    |    |    | 4  |    |    |    | 1  | 55 |
| 경제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학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 8. 장학금 급여상황표

(72년도 2학기)

| 구 | 분 | 등록생수   | 대 비<br>(수혜자) | 합     |             | 장 학 금 |            | 학 비   |            | 감     |            | 변     |            |   |
|---|---|--------|--------------|-------|-------------|-------|------------|-------|------------|-------|------------|-------|------------|---|
|   |   |        |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수     | 업          | 료     | 기          |       | 성          | 회 |
|   |   |        |              |       |             |       |            |       |            |       |            |       |            |   |
| 합 | 계 | 14,222 | 46.1         | 6,557 | 100,762,000 | 1,017 | 36,338,600 | 5,510 | 61,423,400 | 2,514 | 16,532,200 | 2,996 | 47,891,200 |   |
| 공 | 대 | 2,289  | 48.8         | 1,117 | 17,161,150  | 190   | 6,925,450  | 927   | 10,235,700 | 445   | 2,536,500  | 482   | 7,699,200  |   |
| 동 | 대 | 1,269  | 45.0         | 571   | 8,122,500   | 92    | 2,617,600  | 479   | 5,504,900  | 209   | 1,191,300  | 270   | 4,313,600  |   |
| 문 | 대 | 1,980  | 45.0         | 891   | 13,764,400  | 136   | 5,228,100  | 755   | 8,536,300  | 371   | 2,411,500  | 384   | 6,134,800  |   |
| 미 | 대 | 271    | 47.2         | 128   | 1,761,500   | 13    | 482,000    | 115   | 1,279,500  | 59    | 383,500    | 56    | 896,000    |   |
| 법 | 대 | 660    | 55.3         | 365   | 6,429,000   | 107   | 3,545,500  | 258   | 2,883,500  | 131   | 851,500    | 127   | 2,032,000  |   |
| 사 | 대 | 1,117  | 27.7         | 309   | 5,315,600   | 69    | 1,478,800  | 240   | 3,836,800  | —     | —          | 240   | 3,386,800  |   |
| 상 | 대 | 818    | 44.9         | 367   | 5,275,800   | 48    | 1,739,300  | 319   | 3,536,500  | 165   | 1,072,500  | 154   | 2,464,000  |   |
| 약 | 대 | 318    | 51.3         | 160   | 5,257,800   | 29    | 958,300    | 121   | 1,299,500  | 67    | 435,500    | 54    | 864,000    |   |
| 음 | 대 | 479    | 47.8         | 229   | 3,052,300   | 28    | 833,800    | 201   | 2,218,500  | 105   | 682,500    | 96    | 1,536,000  |   |
| 의 | 대 | 829    | 40.2         | 333   | 5,278,950   | 61    | 1,952,950  | 272   | 3,326,000  | 108   | 702,000    | 162   | 2,624,000  |   |
| 치 | 대 | 324    | 61.4         | 199   | 2,806,700   | 34    | 958,400    | 165   | 1,848,300  | 83    | 539,500    | 82    | 1,308,800  |   |
| 가 | 대 | 347    | 55.6         | 193   | 2,339,000   | 13    | 480,000    | 180   | 1,854,000  | 108   | 702,000    | 72    | 1,152,000  |   |
| 교 | 대 | 1,751  | 46.5         | 639   | 8,267,600   | 56    | 1,456,000  | 583   | 6,811,600  | 252   | 1,515,600  | 331   | 5,296,000  |   |
| 원 | 원 | 993    | 62.7         | 623   | 13,106,800  | 95    | 6,664,700  | 528   | 6,442,100  | 241   | 1,850,100  | 287   | 4,592,000  |   |
| 원 | 원 | 190    | 48.4         | 92    | 1,232,800   | 8     | 184,000    | 81    | 1,018,800  | 36    | 280,800    | 48    | 768,000    |   |
| 원 | 원 | 163    | 57.1         | 93    | 1,199,200   | 3     | 30,000     | 90    | 1,169,200  | 45    | 449,200    | 45    | 720,000    |   |
| 원 | 원 | 100    | 58.0         | 58    | 670,000     | 2     | 20,000     | 56    | 650,000    | 30    | 234,000    | 26    | 416,000    |   |
| 원 | 원 | 92     | 71.7         | 66    | 940,700     | 10    | 307,100    | 56    | 633,600    | 32    | 249,600    | 24    | 384,000    |   |
| 원 | 원 | 232    | 50.9         | 118   | 1,720,200   | 7     | 411,600    | 111   | 1,308,600  | 57    | 444,660    | 54    | 864,000    |   |
| 부 | 부 | —      | —            | 2     | 20,000      | 2     | 20,000     | —     | —          | —     | —          | —     | —          |   |
| 부 | 부 | —      | —            | 2     | 20,000      | 2     | 20,000     | —     | —          | —     | —          | —     | —          |   |
| 부 | 부 | —      | —            | 2     | 20,000      | 2     | 20,000     | —     | —          | —     | —          | —     | —          |   |

## 9. 학생병사관계 통계표

72 학년도

| 구 분   | 등 록<br>생 수 | 징 집 해 당 자 |       |       |       |       |     |     |    |    |    |    |    |
|-------|------------|-----------|-------|-------|-------|-------|-----|-----|----|----|----|----|----|
|       |            | 계         | 20세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합 계   | 12,830     | 8,788     | 2,844 | 2,293 | 1,849 | 1,138 | 368 | 179 | 63 | 28 | 19 | 3  | 4  |
| 공과대학  | 2,381      | 1,950     | 628   | 490   | 442   | 203   | 88  | 51  | 26 | 12 | 9  | —  | 1  |
| 농과대학  | 1,317      | 999       | 295   | 295   | 204   | 157   | 38  | 8   | 2  | —  | —  | —  | —  |
| 문리과대학 | 2,011      | 1,414     | 393   | 589   | 361   | 71    | —   | —   | —  | —  | —  | —  | —  |
| 미술대학  | 277        | 53        | 18    | 15    | 16    | 4     | 2   | —   | 2  | —  | —  | —  | —  |
| 법과대학  | 676        | 481       | 167   | 116   | 102   | 65    | 21  | 7   | 1  | 2  | —  | —  | —  |
| 사범대학  | 1,142      | 729       | 150   | 184   | 201   | 166   | 23  | 3   | 1  | 1  | —  | —  | —  |
| 상과대학  | 838        | 561       | 207   | 151   | 124   | 58    | 7   | 9   | 4  | 1  | —  | —  | —  |
| 약학대학  | 327        | 167       | 76    | 32    | 37    | 14    | 4   | 2   | 1  | 1  | —  | —  | —  |
| 음악대학  | 503        | 89        | 15    | 18    | 14    | 37    | 3   | 2   | —  | —  | —  | —  | —  |
| 의과대학  | 850        | 489       | 54    | 70    | 102   | 133   | 67  | 39  | 12 | 3  | 5  | 3  | 1  |
| 치과대학  | 330        | 300       | 27    | 35    | 50    | 65    | 52  | 50  | 11 | 5  | 3  | —  | 2  |
| 가정대학  | 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양과정부 | 1,837      | 1,566     | 814   | 298   | 196   | 165   | 6   | 8   | 5  | 3  | 2  | —  | —  |

| 구 분   | 비 해 당 자 |          |          |          |          |       |            | 군별제대상황 |     |    |    | 입 대<br>자 수 |         |
|-------|---------|----------|----------|----------|----------|-------|------------|--------|-----|----|----|------------|---------|
|       | 계       | 연령<br>미달 | 연령<br>초과 | 제대<br>군인 | 현역<br>군인 | 여자    | 교포및<br>외국인 | 계      | 육군  | 해군 | 공군 |            | 해병<br>대 |
| 합 계   | 4,042   | 1,423    | 27       | 642      | 58       | 1,823 | 69         | 642    | 526 | 31 | 52 | 33         | 240     |
| 공과대학  | 431     | 301      | 1        | 103      | 17       | 2     | 7          | 103    | 87  | 4  | 11 | 1          | 45      |
| 농과대학  | 318     | 69       | —        | 160      | —        | 88    | 1          | 160    | 101 | 17 | 22 | 20         | 86      |
| 문리과대학 | 597     | 259      | —        | 149      | 29       | 144   | 16         | 149    | 134 | —  | 8  | 7          | 31      |
| 미술대학  | 224     | 9        | 2        | 13       | —        | 199   | 1          | 13     | 13  | —  | —  | —          | 5       |
| 법과대학  | 186     | 171      | —        | 4        | 6        | 5     | —          | 4      | 1   | 1  | 2  | —          | 7       |
| 사범대학  | 413     | 183      | —        | 35       | —        | 195   | —          | 35     | 29  | 4  | 1  | 1          | 8       |
| 상과대학  | 277     | 174      | —        | 80       | 6        | —     | 17         | 80     | 72  | 4  | 3  | 1          | 52      |
| 약학대학  | 160     | 68       | —        | 32       | —        | 60    | —          | 32     | 32  | —  | —  | —          | —       |
| 음악대학  | 414     | 33       | —        | 42       | —        | 338   | 1          | 42     | 34  | 1  | 4  | 3          | —       |
| 의과대학  | 361     | —        | —        | 7        | —        | 342   | 12         | 7      | 7   | —  | —  | —          | —       |
| 치과대학  | 30      | 2        | —        | 13       | —        | 15    | —          | 13     | 12  | —  | 1  | —          | —       |
| 가정대학  | 350     | —        | —        | —        | —        | 350   | —          | —      | —   | —  | —  | —          | —       |
| 교양과정부 | 281     | 154      | 24       | 4        | —        | 85    | 14         | 4      | 4   | —  | —  | —          | 6       |

## 10. 현역군인재

| 구분<br>대학별 | 합<br>계 | 육<br>군 |    |    |    |    | 해<br>군 |    |    |    |    |
|-----------|--------|--------|----|----|----|----|--------|----|----|----|----|
|           |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 합 계       | 138    | 82     |    | 9  | 70 | 3  | 16     |    | 6  | 10 |    |
| 소 계       | 58     | 36     |    |    | 36 |    | 9      |    | 1  | 8  |    |
| 공과대학      | 17     | 10     |    |    | 10 |    | 4      |    |    | 4  |    |
| 농과대학      | —      |        |    | —  |    |    |        |    |    |    |    |
| 문리과대학     | 29     | 20     |    |    | 20 |    | 2      |    |    | 2  |    |
| 미술대학      | —      |        |    |    | —  |    | —      |    |    | —  |    |
| 법과대학      | 6      | 2      |    |    | 2  |    | 1      |    |    | 1  |    |
| 사범대학      | —      |        |    |    | —  |    | —      |    |    | —  |    |
| 상과대학      | 6      | 4      |    |    | 4  |    | 2      |    | 1  | 1  |    |
| 약학대학      | —      |        |    |    | —  |    |        |    |    | —  |    |
| 음악대학      | —      |        |    |    | —  |    |        |    |    | —  |    |
| 의과대학      | —      |        |    |    | —  |    |        |    |    | —  |    |
| 치과대학      | —      |        |    |    | —  |    |        |    |    | —  |    |
| 소 계       | 80     | 46     |    | 9  | 34 | 3  | 7      |    | 5  | 2  |    |
| 대학원       | 10     | 7      |    |    | 6  | 1  | 2      |    |    | 2  |    |
| 경영대학원     | 25     | 16     |    | 2  | 14 |    | 1      |    | 1  |    |    |
| 교육대학원     | 17     | 9      |    |    | 7  | 2  |        |    |    |    |    |
| 보건대학원     | 8      | 4      |    |    | 4  |    |        |    |    |    |    |
| 신문대학원     | 6      | 4      |    | 3  | 1  |    |        |    |    |    |    |
| 행정대학원     | 14     | 6      |    | 4  | 2  |    | 4      |    | 4  |    |    |

# 학생 통계 표

(72 년도)

| 공  |    |    |    |    | 군 |    |    |    |    | 해 |    |    |    |    | 병 |    |    |    |    | 대 |    |    |    |    | 비 |   | 고 |  |
|----|----|----|----|----|---|----|----|----|----|---|----|----|----|----|---|----|----|----|----|---|----|----|----|----|---|---|---|--|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계 | 장성 | 영관 | 위관 | 기타 | 비 | 고 |   |  |
| 34 |    | 2  | 32 |    | 6 |    | 5  | 1  |    |   |    |    |    |    |   |    |    |    |    |   |    |    |    |    |   |   |   |  |
| 13 |    | 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1  | 20 |    | 6 |    | 5  | 1  |    |   |    |    |    |    |   |    |    |    |    |   |    |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7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7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1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1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11. R.O.T.C. 현황

## 1. 재 적 자 현황

(72 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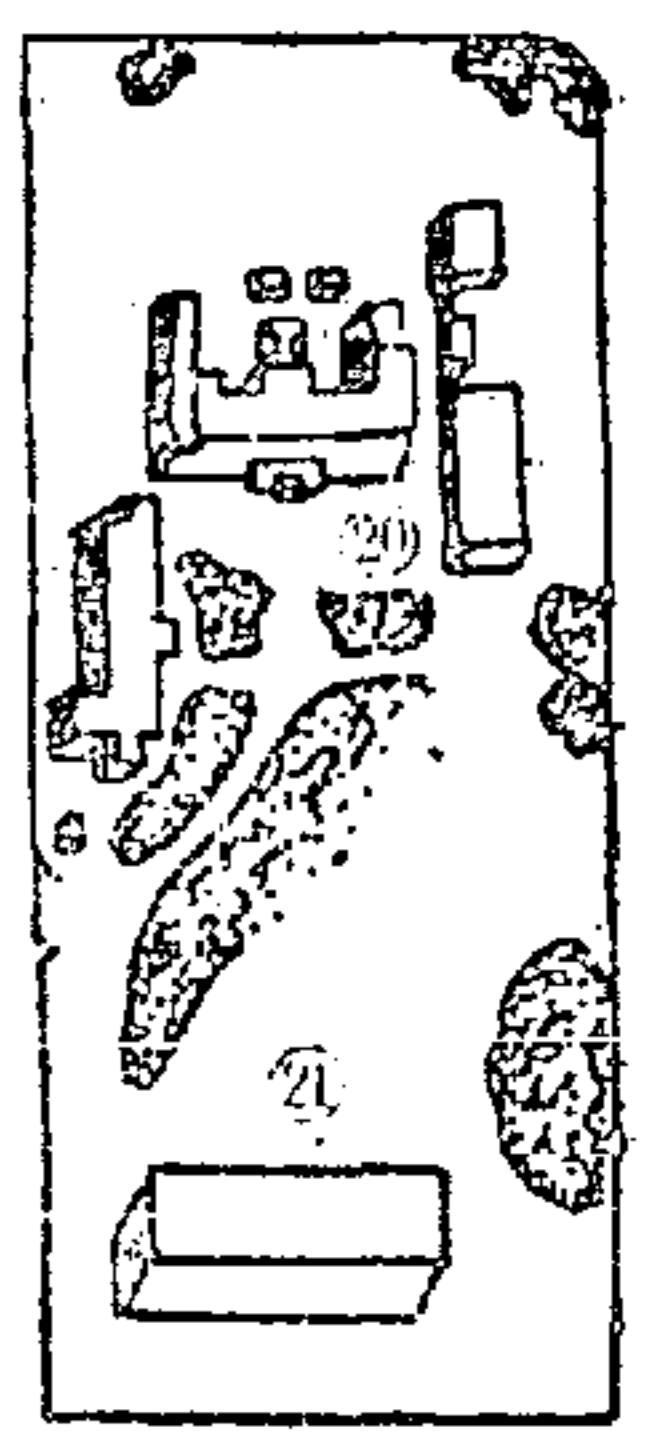

| 구분    | 합격자 |     | 제적자 |    | 재적자 |     |
|-------|-----|-----|-----|----|-----|-----|
|       | 3년  | 4년  | 3년  | 4년 | 3년  | 4년  |
| 합계    | 317 | 351 | —   | —  | 317 | 351 |
| 공과대학  | 150 | 159 | —   | —  | 150 | 159 |
| 농과대학  | 59  | 70  | —   | —  | 59  | 70  |
| 문리과대학 | 28  | 39  | —   | —  | 28  | 39  |
| 미술대학  | 3   | 5   | —   | —  | 3   | 5   |
| 법과대학  | —   | —   | —   | —  | —   | —   |
| 사범대학  | 44  | 43  | —   | —  | 44  | 43  |
| 상과대학  | 15  | 13  | —   | —  | 15  | 13  |
| 약학대학  | 15  | 14  | —   | —  | 15  | 14  |
| 음악대학  | 3   | 8   | —   | —  | 3   | 8   |

## 2. 임 관 현황

| 구분               | 제 1 기 생 ~ 제 10 기 생 |      |       |       |
|------------------|--------------------|------|-------|-------|
|                  | 모집정원               | 재적인원 | 임관자   | 하사관인원 |
| 합계               | 4,308              | 540  | 3,702 | 66    |
| 제 1 기 생 (61학년도)  | 600                | 82   | 513   | 5     |
| 제 2 기 생 (62학년도)  | 600                | 66   | 528   | 6     |
| 제 3 기 생 (63학년도)  | 500                | 42   | 437   | 21    |
| 제 4 기 생 (64학년도)  | 500                | 82   | 401   | 17    |
| 제 5 기 생 (65학년도)  | 422                | 60   | 351   | 11    |
| 제 6 기 생 (66학년도)  | 468                | 110  | 352   | 6     |
| 제 7 기 생 (67학년도)  | 374                | 33   | 341   | —     |
| 제 8 기 생 (68학년도)  | 315                | 47   | 268   | —     |
| 제 9 기 생 (69학년도)  | 216                | 16   | 200   | —     |
| 제 10 기 생 (70학년도) | 313                | 2    | 311   | —     |

# 서울대학교배치도

- ① 대학교 본부
- ② 대학원
- ③ 문리과 대학
- ④ 부속 도서관
- ⑤ 부속 박물관
- ⑥ 어학 연구소
- ⑦ 법과 대학
- ⑧ 행정 대학원
- ⑨ 신문 대학원, 신문연구소
- ⑩ 법학 연구소
- ⑪ 보건 대학원
- ⑫ 의과 대학
- ⑬ 한국방송 통신 대학
- ⑭ 약학 대학
- ⑮ 교수 회관
- ⑯ 생약 연구소
- ⑰ 학생지도연구소, 보건의료소, 대학신문사
- ⑱ 의과대학 부속병원
- ⑲ 치과대학, 치과대학부속병원
- ⑳ 상과대학, 경영대학원
- ㉑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㉒ 사범 대학
- ㉓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 ㉔ 교육 대학원
- ㉕ 가정 대학
- ㉖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 ㉗ 사범대학 부속여자 중학교
- ㉘ 음악 대학
- ㉙ 공과 대학
- ㉚ 미술 대학, 교양과정부
- ㉛ 재외국민 교육연구소
- ㉜ 농과 대학





---

1973년 2월 1일 인쇄 (비매품)  
1973년 3월 1일 발행

## 서울대학교요람

발행 서울대학교  
편집 서울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쇄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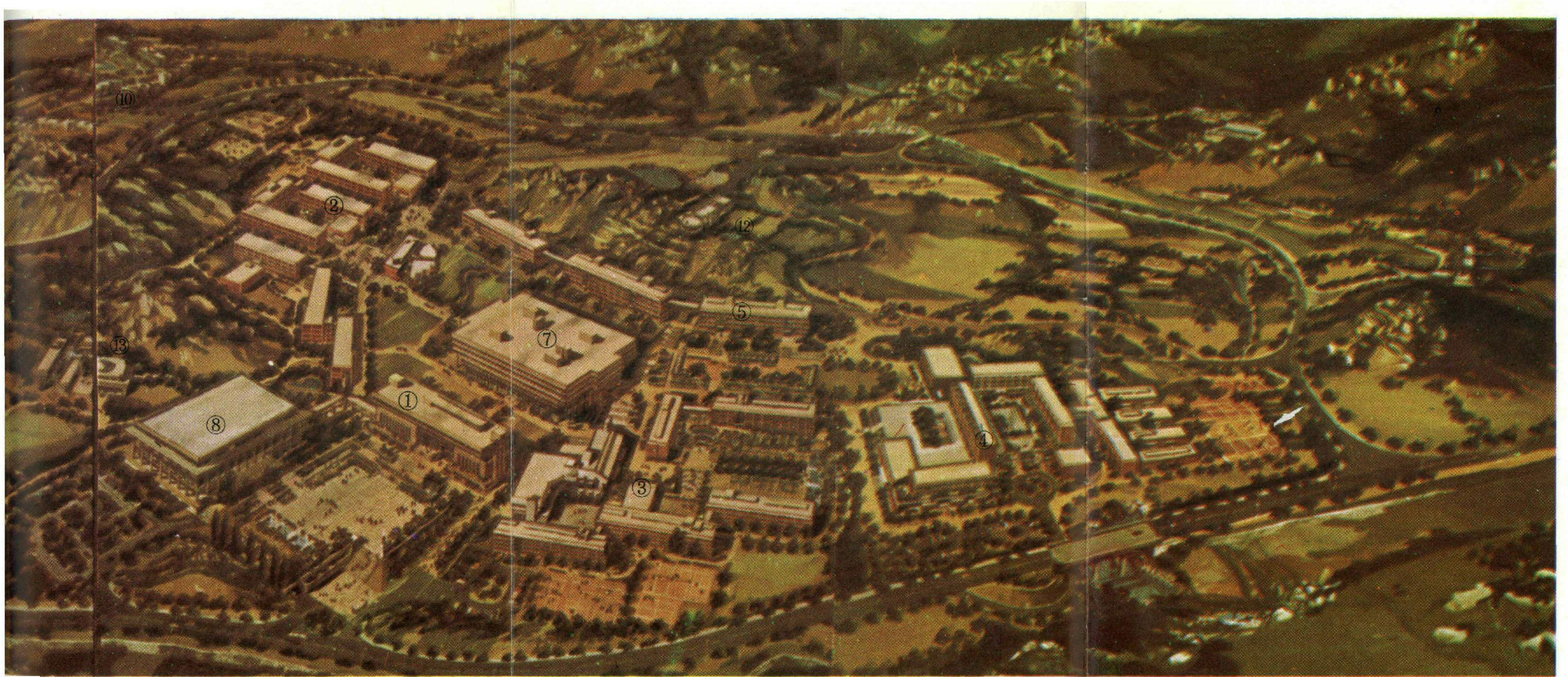
自己民族의 生存原理나 本源的인 問題解決을 他에 依存하려던 戰後的인 狀況은 가고 스스로의 힘으로 活力있는 福祉國家를 建設함으로써 祖國統一의 念願을 成就하는 것이 우리가 當面한 가장 긴요한 課題라고 確信합니다.

그와같이 낡은 時代的狀況에 通用되던 精神姿勢와 學問風土를 清算하고 우리 스스로의 生存原理를 우리의 生動하는 文化속에서 定立하여 民族史의 召命에 부응하는 創造的인 精神姿勢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다름아닌 維新理念의 母體인것입니다.

1973. 2. 26.

—서울대학교 제27회 졸업식 총장 식사에서—

본교 관악산 종합캠퍼스의 조감도



- ① 본부 ② 인문사회계대학 ③ 이학계대학 ④ 공학계대학 ⑤ 약학계대학 ⑥ 예능계대학  
⑦ 중앙도서관 ⑧ 대강당 ⑨ 종합운동장 ⑩ 부속학교 ⑪ 학생기숙사 ⑫ 교수회관 ⑬ 박물관